– 상수도분야 –

예산편성 및 집행관리 요령

2020. 3.

환경부

목 차

Ⅰ. 예산편성 및 집행관리 개요 ····· 1

Ⅱ. 2020년도 예산 ····· 5

Ⅲ. 2021년 예산(안) 편성 ····· 9

1. 기본방향 ····· 11
2. 국고지원 대상사업 및 예산(안) 편성체계 ····· 12
3. 예산 신청기한 및 제출서류 등 ····· 13
4. 신청대상 세부사업별 조건 및 범위 ····· 14
5. 예산지원 및 감액 기준 ····· 19
6. 사업비 산정기준 ····· 20
7. 유역환경청 검토 기준 ····· 23

Ⅳ. 예산의 집행 및 결산관리 ····· 27

1. 기본방향 ····· 29
2. 보조금 예산의 집행 및 정산관리 ····· 29
3. 실집행율 점검관리 ····· 35
4. 예산편성·관리를 위한 시스템 도입·운영에 따른 유의사항 ···· 36

Ⅴ. 총 사업비 관리계획 ····· 39

1. 목 적 ····· 41
2. 대상사업 ····· 41
3. 기본방향 ····· 41
4. 총사업비 관리절차 ····· 43
5. 신청기한 및 제출서류 ····· 45
6. 작성방법 ····· 45
7. 조정원칙 ····· 45

Ⅵ. 관련자료 ····· 51

서식 1 : 2021년도 환특 예산안 신청서 ····· 53
서식 2 : 2021년도 균특 예산안 신청서 ····· 61
서식 3 : 2021년도 예산안 유역환경청 검토의견서 ····· 76
서식 4 :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 77
서식 4-1 : 사업추진계획서 ····· 78
서식 5 : 사업수행 상황보고서(분기 보고) ····· 80
서식 5-1 : 사업추진 실적보고서 ····· 82
서식 6 : 단위사업별 집행내역 보고서(월 보고) ····· 83
서식 7 : 총 사업비 변경요구 신청서(특·광역시, 시·군 작성) ····· 84
서식 8 : 총 사업비 조정요구 신청서(시·도 작성) ····· 93

※ 부 록 ····· 97

Ⅰ. 예산편성 및 집행관리 개요

Ⅰ. 예산편성 및 집행관리 개요

1. 목 적

○ 환경개선특별회계(이하 환특) 및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이하 균특)에서 보조(융자포함)하는 상수도사업 예산에 대하여,

- 예산편성 및 집행관리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업무체계를 확립하고, 일관된 원칙과 절차를 정하여 시행함으로서 사업효율을 증진하기 위함

2. 근거 및 범위

○ 예산의 편성, 집행 및 결산과 관련된 일반적인 사항은「국가재정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국가균형발전특별법」및 「환경개선특별회계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융자금 지원조건 등 결정(환경부 고시)」에 따르되, 환경부 물이용기획과 소관 상수도 관련 보조(융자) 사업에 한함

- 유역환경청의 국고보조금 업무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환경부 소관 보조금 사업 위임사무(환경부고시 제2018-21호, ‘18.1.31.)」에 따라 환경부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한 선심제 성격임

3. 협조사항

○ 본 요령의 수립목적이 상수도 분야 국고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기관에서는 예산(안) 편성단계에서부터 집행, 결산까지의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Ⅱ. 2020년도 예산

Ⅱ. 2020년도 예산

◈ 2020년도 상수도 국고지원 예산은 총 14개 세부사업으로 2019년도 6,207억원 대비 3,803억원이 증가한 1조9억원

1 (총괄) 2020년도 상수도 분야 주요 사업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회 계 명	'19예산 (A)	'20예산 (B)	증 감 (B-A)	사업 내용
[합계]	**620,619**	**1,000,906**	**380,287**	**14개 사업**
환경개선특별회계	20,749	418,838	398,089	스마트지방상수도 지원 등 8개 사업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599,870	582,068	△17,802	상수도시설확충및관리 등 6개사업

2 회계별 사업별 현황

① 환경개선특별회계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19예산 (A)	'20예산 (B)	증 감 (B-A)	사업 내용
[합계]	**20,749**	**418,838**	**398,089**	**8개 세부사업**
스마트 지방상수도 지원	-	381,592	381,592	· 스마트 관망관리 기본계획 수립, 스마트 관망 관리 인프라 구축 · 유역수도지원센터 운영, 생애주기관리시스템 구축
노후상수관로 정밀조사 지원	10,000	6,554	△ 3,446	· 지자체의 지방상수도 관로에 대한 정밀 실태 조사 실시
상수도연구관리	3,418	6,486	3,780	· 수도사업 운영 및 관리실태 평가, 상수도 통계 조사, 물 수요 관리 · 상수도분야 연구용역
상수도정보화 시스템구축	730	730	-	· 상수도정보화시스템 운영관리
상수원보호구역주민지원사업	2,001	2,001	-	· 4대강 수계법에 따른 주민지원사업 대상지역을 제외한 상수원보호구역 지역의 소득 및 복지 증대사업 지원 사업
상·하수도 혁신 기술개발사업 (R&D)	3,100	21,475	18,375	· 상·하수도 미량 및 신종오염물질 최적 관리 기술개발사업
상수도시설 안전관리	500	-	△ 500	
유역단위 용수공급체계 구축	1,000	-	△ 1,000	

②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단위:백만원)

사 업 명	'19예산 (A)	'20예산 (B)	증 감 (B-A)	사업 내용
[합계]	599,870	582,068	△17,802	6개 세부사업
상수도시설확충및관리(자율)	553,001	96,281	△456,720	· 신규 20개소, 계속 23개소
강변여과수개발사업	32	2,500	2,468	· 계속 1개소
고도정수처리시설설치	55,035	52,852	△2,183	· 신규 6개소, 계속 10개소
도서지역식수원개발	154,520	31,885	△122,635	· 신규 4개소, 계속 10개소
지방상수도비상공급망구축	1,350	9,044	7,694	· 신규 10개소, 계속 2개소
농어촌생활용수개발	299,331	-	△299,331	· 지방이양
소규모수도시설개량	40,933	-	△40,933	· 지방이양
식수전용저수지 확충	1,800	-	△1,800	· 지방이양
상수도시설확충및관리(제주)	13,394	6,282	△7,112	· 계속 3개소
고도정수처리시설설치	3,371	3,278	△93	· 계속 1개소
도서지역식수원개발	550	-	△550	
친환경대체취수원 개발	4,840	3,004	△1,836	· 계속 2개소
상수원보호구역주민지원	51	-	△51	· 지방이양
농어촌생활용수개발	2,100	-	△2,100	· 지방이양
소규모수도시설개량	-	-	-	· 지방이양
식수전용저수지 확충	2,482	-	△2482	· 지방이양
노후상수도정비 (제주)	9,000	9,942	942	· 신규 2개소, 계속 1개소
노후상수도정비 (지역지원)	-	458,013	458,013	· 신규 45개소, 계속 84개소, 공모사업
고도정수처리시설설치(지역지원)	12,925	11,550	△1,375	· 신규 9개소, 계속 1개소
녹조대응	7,600			· 계속 1개소
미량유해물질대응	5,325			· 신규 9개소
상수도시설확충및관리(세종)	11,550	0	△11,550	· 지방이양
농어촌생활용수개발	11,060	-	△11,060	· 지방이양
소규모수도시설개량	490	-	△490	· 지방이양

Ⅲ. 2021년도 예산(안) 편성

Ⅲ. 2021년도 예산(안) 편성

1. 기본방향

○ 「수도법」 제4조에 따른 “수도정비기본계획”과 연계한 시설투자로 계획적인 시설계획 수립·지원

○ 수돗물 공급과정에 정보통신기술(ICT)를 활용한 감시체계 구축을 위한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 사업비 지원

○ 인천 붉은 수돗물 사고('19.5월)를 계기로 전국 수도관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지자체의 지방상수도 관로에 대한 정밀 실태조사 실시 지원

○ 합리적이고 보편적인 물 복지 실현을 위해 급수취약지역(도서지역 등)의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을 위한 예산편성

○ 지방이양 사업은 국고보조사업 신청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양에서 제외된 상수도분야 국고보조사업에 대해 예산 편성

- 이양 사업은 제외하여 예산 요구하되, 이양 사업에서 수행하던 기능을 신규사업 또는 다른 계속사업에 반영 금지

※ (이양사업) 농어촌생활용수개발, 소규모수도시설개량, 식수전용저수지확충, 상수원보호구역주민지원(제주)

○ 상수도 사업의 투자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예산 집행률을 고려하여 사업비 조정

- (계속사업) 사업진도 및 예산집행 실적을 엄격히 적용하고, 지자체 실집행률 80% 이상 제고를 목표로 편성 추진

- (신규사업) 지자체별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된 사업 중 국고지원 대상사업을 대상으로 예산 지원하되, 예비타당성조사(면제 포함) 등의 사전행정절차 완료 필요

2. 국고지원 대상사업 및 예산(안) 편성체계

< 지원대상 사업 및 국고보조(융자)율 >

사 업 명	형태	보조율(%)	비 고
<환경개선특별회계>			
○ 스마트 지방상수도 지원사업			
- 특·광역시 지역	보조	50	
- 시·군 지역		70	
○ 노후상수관로 정밀조사 지원			
- 특광역시·도 지역	융자	50	
- 시·군 지역		0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지역지원)			
- 녹조대응	보조	30	
	(융자)	(50)	
- 미량유해물질대응	보조	50	
○ 상수도시설 확충 및 관리(자율·제주·세종)	보조	70	
- 강변여과수개발			
-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 도서지역식수원개발			
-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			
- 친환경대체취수원 개발			
○ 노후상수도정비			
- 상수관망 정비	보조	50+20	
- 정수장 정비	보조	50	

※ 국고보조율은 기획재정부와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3. 예산 신청기한 및 제출서류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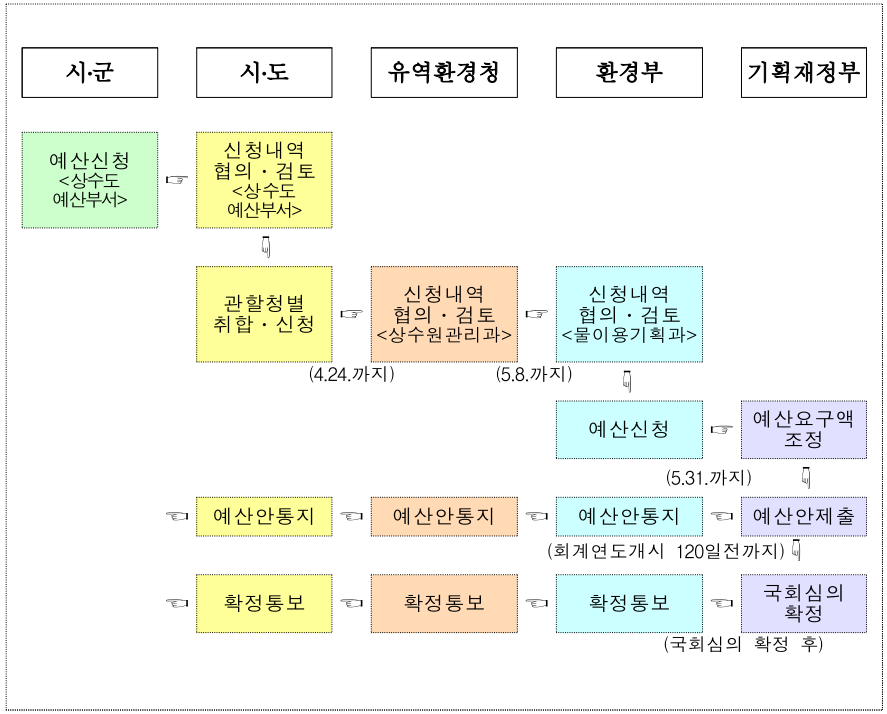
가. 신청기한(환특, 균특(지역지원, 지역자율, 제주, 세종))

시·군 → 시·도 (4.24.) → 유역환경청 → 환경부 (5.8.)

※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은 별도 지침에 따라 유역 및 지방환경청에 제출

※ 예산 신청기한은 기재부의 균특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변경 가능

< 예산 편성 체계 >



※ 정부(부처)로부터 정부안 및 확정예산이 통보되면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 및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한 보조사업 등록 추진

나. 신청서류

○ 기관별 제출서식

- 시·군 : '서식 1' 또는 '서식 2'를 작성하여 관할 시·도에 제출
- 특·광역시, 시·도 : 시·군·구에서 제출한 신청서류를 최종 검토·조정하여 '서식 1' 또는 '서식 2'를 보완·작성, 관할 유역환경청에 제출
- 유역환경청 : 시·도에서 제출한 신청서류를 검토하여 '서식 3'을 환경부에 제출

※ 서식별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되, 한글 및 엑셀로 구분 제출

4. 신청대상 세부사업별 조건 및 범위

가. 공통사항

1) 예산신청 제외대상

○ 신규사업

-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시설계획

※ 예산신청 시점에 수도정비기본계획(본안) 승인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신청 가능

- 지방재정투융자심사, 예비타당성조사(면제 포함) 등 사전 이행절차를 완료하지 않은 사업
- 상수도 분야 다른 국고 보조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사업

※ (사례) 노후상수도 정비사업을 보조받아 진행중인 사업대상지에 고도정수처리 시설 도입 신규신청(☞ 반드시 필요한 경우 기존사업의 사업비 변경을 우선 고려)

○ 계속사업

- 공사 착공된 계속사업 중 '19년도 예산 집행률이 10% 미만인 사업

2) 예산(안) 편성시 고려사항

○ 국고보조금액 산정은 총사업비에서 원인자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에 국고보조율을 적용하여 산출

○ 국회·감사원·언론 등에서 예산낭비 사례 또는 선심성 사업으로 지적된 사업은 신청 제한

○ 시설용량은 설치 인가된 시설용량으로 산정하되, 인가가 미완료된 사업은 실시설계 또는 수도정비기본계획 승인 시설용량으로 산정

<주의> 수도정비기본계획 승인 및 인가고시가 된 모든 사업이 국고보조 대상은 아님

나. 세부사업별 예산(안) 편성기준

환경개선특별회계

1) 스마트 지방상수도 지원

○ **(추진경위)** 인천 붉은 수돗물 사고('19.5월)에 따른 "수돗물 안전관리 종합대책"의 주요 사항으로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하여 수돗물 공급 과정에 감시체계를 구축하여 사고발생을 예방하고, 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인프라 구축

○ **(지원대상)** 전국 161개 수도사업자(지자체)

- 보조율 : 특광역시·도 50%, 시·군 70%

※ 현재 진행 중인 "스마트 관망관리 기본계획" 수립용역 결과에 따라 사업비 최종 확정

2) 노후상수관로 정밀조사 지원

○ **(추진경위)** 인천 붉은 수돗물 사고를 계기로 국민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어 전국 수도관의 실태조사를 위한 정밀조사 예산이 '19년 추경으로 반영 확정('19.8.2.)

○ **(지원대상)** 지자체의 지방상수도 관로에 대한 정밀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지원

- 특광역시·도 50%지원, 시·군 70%지원

※ 단년도 사업으로 추진(사업기간 1년)

※ '상수관로 정밀조사 매뉴얼('19.10., 환경부)'에 따라 조사 실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1) 노후상수도(상수관망, 정수장) 정비사업 : 별도 지침에 따라 신청

※ '지방상수도 현대회사업 업무처리지침('20.1., 환경부)' 참고

2) 상수도시설 확충 및 관리

< 강변여과수 개발사업 >

○ **(지원대상)** 취수시설과 정수장까지의 도수관로 설치에 필요한 제반 사업비 지원

※ 정수장 신설, 확충, 개량 등의 사업비 및 부지매입비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계속사업)** 기존 추진 중인 사업은 사업의 진척도 및 완료시기 등을 고려하여 "5. 예산지원 기준"에 따라 예산 편성

○ **(신규사업)** 수도정비기본계획 반영, 강변여과수 개발 타당성을 조사하여 사업 추진 가능성을 판단한 후 예산 신청

<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 >

○ **(지원대상)** 원수수질 및 시설의 노후화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고도정수처리시설(막여과 포함) 도입이 필요한 시설에 대해 지원

- 수질 여건이 미흡하거나 시설의 노후화 및 운영결과 자료 등을 토대로 개량이 필요한 지역의 정수장

- 특히, 내염소성 병원성 미생물(Giarddia, Cryptospodium 등), 내분비계 장애물질 등의 제어를 위해 시설도입이 필요한 정수장

※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 및 평가지침(환경부, 2013.1.15) 및 막여과 정수시설의 설치기준(환경부 고시 제2012-119호, '12.7.9.)을 준수하여야 함

- 수원의 수질 및 향후 수질변화 등을 예측·분석하고, 고도처리 대상 오염물질의 종류, 처리량, 처리효율 등을 고려하여 불필요한 시설을 설치 하지 않도록 예산 편성을 하여야 함

○ **(계속사업)** 기존 추진 중인 사업은 사업의 진척도 및 완료시기 등을 고려하여 "5. 예산지원 기준"에 따라 예산 편성

○ **(신규사업)** 수도정비기본계획 반영,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 및 평가지침" 등에 따라 타당성조사와 공법선정이 완료 된 사업에 한하여 신청

< 도서지역 식수원개발 사업 >

○ **(지원대상)** 지방상수도 공급, 수질문제 및 수량 확보를 위한 수원확보(관정개발 등), 염지하수·해수를 이용한 용수공급을 위한 해수담수화 시설, 소규모수도시설 설치·개량 등 도서지역 내 생활용수 공급을 위한 수도시설(수원 → 취수 → 정수 → 급·배수시설) 설치비용 및 토지보상비

※ 도서 :「도서개발촉진법」에 따른 교량으로 연결되지 않은 섬과 교량으로 연결된 지 10년 이내인 섬(제주도 본섬 제외)

- 해수담수화 시설의 경우 대체 취수원개발과의 사업타당성을 검토 후 신청

* 지하수 개발, 빗물이용시설, 육상에서 송수관 연결 등과 비교·검토

○ **(계속사업)** 기존 추진 중인 사업은 사업의 진척도 및 완료시기 등을 고려하여 "5. 예산지원 기준"에 따라 예산 편성

○ **(신규사업)** 수도정비기본계획 반영, 생활SOC사업 수요조사('19.2) 시 제출된 사업 우선 반영

< 지방상수도비상공급망 구축사업 >

○ **(지원대상)** 수도시설 사고, 이상가뭄, 수질사고 등에 대처 할 수 있도록 인접 수도시설과 연결(지자체 內, 지자체 間, 광역-지방상수도 間)하는 수도시설간 비상연계관로를 설치하는 경우 지원

○ **(계속사업)** 기존 추진 중인 사업은 사업의 진척도 및 완료시기 등을 고려하여 "5. 예산지원 기준"에 따라 예산 편성

○ **(신규사업)** 수도정비기본계획 반영된 사업을 대상으로 하되, '상수도 공급망 연계체계 구축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 보고서(환경부, '15.12.)'에 반영된 사업 우선 신청

< 친환경대체취수원 개발사업 >

○ **(지원대상)** 하천표류수 또는 수량·수질에 문제가 있는 기존 취수원을 대체(보조)하기 위한 친환경대체취수원 개발사업 신청

- 지원내용: 지하수 개발, 지하댐, 인공함양, 인공습지 등 대체취수원 개발 및 취수원 이전 비용(취수원개발, 취수시설, 도수관로에 한함) 지원

○ **(계속사업)** 기존 추진 중인 사업은 사업의 진척도 및 완료시기 등을 고려하여 "5. 예산지원 기준"에 따라 예산 편성

○ **(신규사업)**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된 시설에 한해 지원

3)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시범사업(지역지원계정, 환경부 편성)

○ **(사업목적)** 수계 내 독성물질 발생 및 냄새민원 등의 문제가 있는 정수장을 고도화하여 깨끗한 수돗물 생산·공급

○ **(사업개요)** 녹조 수계 정수장 중 고도정수처리시설 미설치 지방정수장(5개소)과 낙동강 본류를 직접 취수하는 중·하류 지역 지방정수장에 대해 한시 사업 추진

○ **(계속사업)** 기존 추진 중인 사업은 사업의 진척도 및 완료시기 등을 고려하여 "5. 예산지원 기준"에 따라 예산 편성

5. 예산지원 및 감액기준

가. 계속 및 신규사업 예산지원 기준

구 분	지 원 기 준
계속 사업	**○ 완공 예정 연도별 지원기준** - 2021년 완공예정사업 : 완공소요 보조(융자)금 전액지원 - 2022년 완공예정사업 : 잔여 보조(융자)금의 50% - 2023년 완공예정지역 : 잔여 보조(융자)금의 30% - 2024년 완공예정지역 : 잔여 보조(융자)금의 20% - 2025년 완공예정지역 : 잔여 보조(융자)금의 15% - 2026년 완공예정지역 : 잔여 보조(융자)금의 10% **○ 예산 집행률에 따라 감액기준 적용**
신규 사업	**○ 신규 사업은 1차년도 설계비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신청 당시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 이행 등이 완료된 사업은 예외적으로 시설공사비 일부 지원 - 선투자한 설계비와 완공예정 연도별 지원기준을 적용하여 잔여 보조(융자)금 지원 **○ 단년도 사업으로 추진되는 소규모사업은 사업비 전액 반영** ※ 노후상수관로 정밀조사 지원 사업(사업기간 1년)

* (부처 편성) 준공시점 및 재정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개별 사업별 전년도 집행실적에 따라 조정

* (시·도 자율편성) 상기 지원기준과 개별 사업별 '19년도 집행률에 따른 감액기준을 적용하여 편성하되, 기준을 초과하여 편성 시 유역환경청으로 사유 제출(사유 미인정 시 기획재정부에 감액의견 제시)

나. 감액기준

○ 집행률 적용

- 계속사업으로서 사업별 '19년말 기준 지자체 실집행률(국고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에 따라 '21년 예산을 감액하여 이월률 최소화

'19년말 예산 집행률	감액률	비 고
- 90% 이상	-	- 완공예정 연도별 지원기준에 따라 '19년말 집행실적을 적용하여 감액
- 70% 이상 ~ 90% 미만	10%	
- 50% 이상 ~ 70% 미만	25%	
- 30% 이상 ~ 50% 미만	40%	
- 10% 이상 ~ 30% 미만	60%	
- 10% 미만	예산 미반영	

6. 사업비 산정기준

< 공통기준 >

○ 사업비 산정은 기획재정부「예산(안) 편성 및 작성 세부지침」의 토지매입비, 설계비, 시설비 및 감리비·시설부대비 부분을 참조하여 산정하되 다음 기준을 준수

○ 계속사업은 기 협의된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완공연도별 예산지원 기준과 감액기준을 반영하여 산정하고, 연내 전액 집행되도록 차수계약 준공일정을 마련하여 관행적인 이월이 방지되도록 사업비 산정

※ 집행률을 고려한 예산 감액기준 적용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적정 규모의 예산신청 필요('21년 완공예정 사업에도 동일 적용)

○ 신규사업은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된 사업물량 및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예산 신청

- 다만,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된 사업비가 "수도시설 표준운영비 및 공사비 산정(환경부, 2015.12.)" 기준과 불일치 시에는 낮은 금액으로 신청

※ 실시설계가 완료된 경우에는 해당 총사업비 반영

○ 2021년도 완공예정사업으로서 잔여사업비 전액을 신청하는 경우는 기착공 또는 실시설계가 완료된 사업에 한하며, 예산신청서에 총사업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 토지매입비 >

○ 용지보상비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과「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요건 및 절차를 거쳐 산정

- 토지매입가격은 감정평가 결과를 반영하되, 감정평가 결과가 없는 경우는 공시지가 또는 유사사례 집행실적 등을 참조하여 편성

○ 지하부분 보상이 필요한 경우 "수도사업을 위한 지하부분 토지사용 보상기준(환경부고시 제2018-206호)"에 따라 산정

< 설계비 >

○ 설계 등의 산출기준이 되는 시설규모에 대해서는 향후 시설 수요예측, 유사시설 규모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시설유휴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산정

○ 기본 및 실시설계비는 각각 "공사비"에 대한 요율 적용

- 예산액을 책정함에 있어 공사비 대신 "총사업비"에 대하여 기준요율을 적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

- 공사비가 요율표의 중간에 있을 때에는 직선보간법에 의해 산출

< 시설비 >

○ 토목공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타당성조사, 기본조사설계, 실시설계, 토지보상 등 사업추진을 위한 단계적 절차가 완료된 사업에 한하여 시설비 반영

○ 계속사업의 경우 완공예정 연도별 지원기준에 따라 사업비 반영

- 시설비를 반영할 경우 감리비도 동시에 계상

○ 예산집행 실적이 저조한 사업은 집행률 감액기준을 적용하여 완공예정 연도별 지원기준의 소요액에서 감액하여 반영

○ 사업계획 변경, 물가상승 등으로 인해 총사업비 변경요인이 있는 경우 예산 신청 이전에 총사업비 변경 승인을 받아 예산 신청

○ 2021년도 완공예정 계속사업으로서 잔여사업비 전액을 신청하는 경우는 예산신청서에 총사업비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계약 및 설계 결과 등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 완공예정 사업으로서 잔여사업비를 전액 반영한 사업은 총사업비 변경 불가

< 감리비·시설부대비 >

○ 공사감리비 및 시설부대비는 각각 “공사비”에 대한 요율을 적용하고, “총사업비”에 대한 요율을 적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

- 공사비가 요율표의 중간에 있을 때에는 직선보간법에 의해 산출

○ 공사감리비는 사업성격, 공정별 필요성 등에 따라 책임감리와 공사감리로 구분하여 반영하되, 기획재정부의 기준단가 적용

○ 시설부대비는 공사비에 대해 시설부대비 총액을 산출한 후 그 범위 내에서 사업추진상황을 고려하여 연차별로 적정수준 계상

7. 유역환경청 검토 기준

수도정비기본계획 반영 여부, 사업비 적정성 등에 대해 한국환경공단에 기술적 사항 검토 요청 (「수도법 시행령」 제66조)

※ 광역상수도와의 비상공급망 구축여부, 스마트지방상수도 지원사업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기 위해 한국수자원공사에 기술검토 병행 가능

1) 사업계획의 적정성

○ 국고 지원 대상사업 여부 검토

- ‘20년부터 지방이양 결정된 사업의 중복 신청 여부
- 현재 지원되지 않는 신규 내역사업이 있는 경우 사업성격,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의견 제시

※ 시·도 자율편성사업은 예산 조정 없이 의견만 제시

○ 해당 지자체의 수도정비기본계획 반영 등 사업의 타당성 검토

- 신규사업의 경우 수도정비기본계획 반영 여부 또는 변경 절차 진행 여부 확인

○ 총사업비, 총국고의 적정성 검토

- 수도정비기본계획 상의 총사업비, 시설용량에 따른 표준사업비 또는 실시설계 결과에 근거하였는지 등 검토
- 유지관리시설 등 국고 비지원대상이 포함되지 않았는지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적정한 금액으로 계상되었는지 파악
- 원인자부담금이 적정하게 산정 되었는지 파악

※ 신규사업의 경우 예산반영을 목적으로 터무니없게 총사업비를 적게 산정 후 총사업비를 변경하는 사례방지(예산 신청 시 총사업비의 적정성 검토)

2) 사업추진의 원활성 검토

○ 내부요인에 의한 문제점 해결 여부 검토

- 관련 사전 행정절차 미이행으로 인해 예산 반영 시 자금 사장의 우려가 없는지 파악

- 절대공기 및 재원사정을 감안하여 사업기간이 적정한지 파악

○ 외부요인에 의한 문제점 해결 여부 검토

- 입지선정, 용지보상 등의 민원으로 인해 사업 추진 자체가 지연 될 우려가 없는지 파악

- 국회, 감사원, 언론 지적 등 외부 지적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에 대한 문제점 해결 방안이 수립되었는지 파악

○ 기 타

- 해당 지자체 상수도 사업의 전년 집행률 및 관련 상수도 사업의 집행 정도 파악

- '21년 예산편성의 중요한 기준이 되는 '19년도말 기준 집행률 현황이 신뢰할 수 있도록 산정되었는지 파악

3) 투자효율성 검토

○ 인근 수도시설과의 통합을 통한 예산 절감

- 행정구역은 다르지만 인근 지역에 상수도 시설이 있는 경우 경제성, 운영관리의 효율성 및 용이성 등을 검토하여 통합하는 방안 적극 고려

4) 예산규모의 적정성 검토

○ 상수도 재원에 적합한 예산 조정

- 수도정비기본계획 등 사업계획에 의한 사업 외에는 신규사업의 반영을 최대한 억제

- 계속사업의 경우, 엄격한 총사업비 관리와 사업진도 및 집행상황을 고려한 예산지원으로 한정된 재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조정

※ 당해연도에 전액 집행이 가능한 규모 내에서 편성함으로써 집행과정에서의 내역 변경을 최소화

- "5. 예산지원 및 감액기준"에 따라 신청되었는지 파악하고, 기준을 초과하여 신청된 경우 시·도에서 제출한 초과 편성사유를 검토하여 적정성 판단

5) 검토결과 제출(유역환경청 → 환경부)

○ 각 유역환경청에서는 검토기준에 따른 검토결과를 환경부로 5.8.까지 제출(서식 3)

* 검토결과 제출 시 시·도 신청금액 조정 없이 검토의견만 제시

Ⅳ. 예산의 집행 및 결산관리

Ⅳ. 예산의 집행 및 결산관리

1. 기본방향

○ 보조금 예산의 집행 및 결산관리는「국가재정법」,「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국가균형발전 특별법」및 환경부 세부 규정을 준수

○ 재정조기 집행방침에 따라 재정집행관리가 요구되므로 상반기(1분기 중점) 집행률 60.0%이상, 연말 지자체 실집행률 95%이상 제고를 목표로 집행률 제고대책 수립·추진 등 노력 강화

- 환경부, 유역환경청, 시·도, 기초자치단체 간 월별·분기별 및 수시 집행 상황 보고체계 구축

- 유역환경청과 시·도 합동 집행점검반 구성·운영

○ 재정의 효율 증대를 위한 세부단위사업별 예산집행 관리 강화

- 상반기 이후에도 집행이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추진실태 분석 결과에 따라 교부시기 조정

○ 국회의 결산심의에 대비한 결산분석시스템 도입 및 보고체계 구축

- 회계연도 종료와 함께 사업추진실적보고서 취합·분석 및 자료정리

○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방안('18.1) 등에 따라 보조금이 해당 사업 분야 외에 집행되지 않도록(목적외 사용) 집행관리 철저

2. 보조금 예산의 집행 및 정산관리

가. 보조금 교부신청(시·군·구 → 시·도 → 유역환경청 또는 환경부)

○ 시·군은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에 사업추진계획서를 첨부하여 관할 시·도를 거쳐 관할 유역(지방)환경청 또는 환경부에 제출(서식 4)

나. 보조금 교부결정 및 통지(환경부 또는 유역환경청 ↔ 시·도 ↔ 시·군)

○ 환경부(유역환경청)는 시·도에서 제출된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를 다음 착안사항에 중점 검토

- 법령 및 예산의 사업목적과의 적합여부, 보조사업 종류 및 내용의 적정여부, 보조사업 구분의 적정여부, 금액산정의 착오 유무, 매칭금액 부담능력 유무 등

○ 환경부(유역환경청)는 세부사업별 보조금 교부조건을 포함한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를 작성하여 관련기관에 통보

- 통보기관 : 시·도,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 '09년부터 교부결정 통지문서와 함께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통하여 지자체 지방재정관리시스템으로 교부결정 통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다. 교부결정의 취소 및 변경(환경부 또는 유역환경청 → 관련기관)

○ 환경부(유역환경청)는 교부결정 이후 사정 변경으로 보조금의 교부결정내용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 취소 가능

- 환경부(유역환경청)는 변경 또는 취소의 사유 등을 검토하여 기획재정부에 제출하고 협의한 후 관련기관에 통보

○ 보조금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

- 보조금 결정을 한 후에 발생한 천재지변, 기타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

- 보조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토지 또는 주요시설 등을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사용하거나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중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비는 제외한다)를 그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관련기관 처분 위반 시

- 거짓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1조, 제30조

라. 보조사업 수행상황 보고(시·군 → 시·도 → 환경부 또는 유역환경청)

○ 사업추진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 정산이 완료된 사업(사업완료 또는 폐지로 인하여 종료된 사업)을 제외한 모든 세부사업

- 작성시기 : 매 분기말 기준

- 제출기한(시·도 → 환경부 또는 유역환경청) :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 제출서류 : 사업수행 상황보고서(서식 5)

※ 사업개요, 사업추진 현황, 분기말 예산집행상황, 계획대비 사업추진 부진사유 및 조치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 세부사업별 수행상황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시·군·구가 관련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결정내용 또는 성실히 사업을 수행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될 경우 시정을 위해 보조사업 수행명령(보조금법 제26조) 조치요구

- 수행명령 조치 요구시에는 시정에 필요한 구체적인 조치사항과 사유를 명시하여 제출

마. 보조사업 실적보고(시·군 → 시·도 → 유역환경청 또는 환경부)

○ 보고대상 및 기한

- 보고대상 사업 : 환특/균특 대상사업

- 시·군은 보조사업 완료, 보조사업 폐지승인, 회계연도 종료 시에는 완료, 승인, 종료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도를 거쳐 사업추진 실적보고서를 제출하되, 회계연도 종료의 경우는 익년 1월 20일까지 제출

- 시·군은 집행확인에 필요한 자료 등을 첨부하여 제출

  · 사업비 집행실적 및 집행금액 세부내역, 사업비 집행 증빙서류(지출원인행위부 및 지출결의서 사본), 준공검사서, 기타 정산에 필요한 자료

  · 당해연도 사업과 이월사업을 분리하여 별도의 사업으로 결산

- 사업추진 실적보고에 관한 사항은 별도 문서로 통보(서식 5-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 보조금액의 확정(보조금의 정산)

- 사업추진 실적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관계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 관련기관 처분의 적합여부 등을 확인하여 보조금의 금액을 확정한 후 시·도를 거쳐 시·군에 통보

- 교부된 보조금이 확정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기한을 정하여 초과금액을 반환명령 조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제31조

- 균특회계 사업의 경우「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44조 제1항에 따라 보조금법 적용에서 제외. 다만, 제44조 1항의 단서 및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관련 사업은「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44조 등 관련 규정에 따름

바. 검사 및 확인

○ 환경부(유역환경청)는 보조금 예산의 적정운영을 위해 필요시 시·도(시·군)에게 보고하게 하거나 현장에 출입하여 보조(융자)사업 및 보조금을 검사·확인

○ 검사·확인시기

- 보조금 예산 신청 시 또는 교부결정 시

- 보조사업의 수행명령·취소명령·반환명령 시

- 보조사업의 추진 실적보고 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

사. 보조금의 이월 등

○ 균특회계에서 교부된 보조금은 사업의 성격 및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집행할 수 있으나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음**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43조(예산의 이월) ① 회계는 세출예산 중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국가재정법」 제4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의 소관 부처별 또는 지방자치단체별 세출예산의 총액 범위에서 다음 연도에 이월(移越)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그 회계연도부터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른 보조금의 경우 **사업이 종료된 후 남은 집행잔액은 포괄보조금으로 편성된 사업에 사용하고**, 과목별 금액 및 이유를 기재한 **명세서를 다음년도 1.15일까지 환경부 또는 유역환경청으로** 제출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44조(보조금에 대한 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① 제34조제2항·제35조제2항 및 제35조의2제2항의 사업에 대한 보조금에 대하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1조·제26조 및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 제31조, 제31조의2, 제32조 및 제33조의3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사용한 때, 허위의 신청

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또는 제43조에 따라 다음 연도로 이월한 세출예산을 다음 다음 회계연도까지 지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1조, 제31조의2, 제32조 및 제33조의3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0조에 따른 포괄보조금으로 편성된 사업이 끝난 후 남은 집행잔액을 포괄보조금으로 편성된 사업에 사용하고, 과목별 금액 및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명세서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0조에 따른 포괄보조금 외의 보조금으로 편성된 사업이 끝난 후 남은 집행잔액을 해당 보조사업의 목적과 유사한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과목별 금액 및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명세서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35조제2항에 따른 경제발전계정의 세출예산, 제35조의2제2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계정의 세출예산 및 제35조의3제2항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계정의 세출예산 상호간의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이 끝난 후 집행잔액을 사용할 수 없다.

아. 보조사업의 내용변경 등

○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변경내역에 대해 **유역환경청 승인**을 받아야 함. 다만 총사업비 변경 없이 사업기간만 변경될 경우 도에서 승인 처리 후 환경부(유역청)로 보고하여야 함

○ 유역환경청에서는 내용변경 및 경비의 배분 변경 등의 사항을 승인 시 환경부로 그 내용을 함께 통보하여야 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보조사업의 내용 변경 등)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실집행률 점검관리

가. 보조사업 점검평가단 구성·운영

○ 환경부(유역환경청)는 시·도와 합동으로 재정집행을 점검·독려하기 위한 보조사업 점검평가단을 구성·운영

- 점검반은 유역환경청 상수원관리과장을 반장으로 하고, 시·도별 업무 담당사무관 등을 반원으로 구성하여 연 2회 이상 재정집행 점검 및 점검회의 실시

- 점검반장은 사업추진 애로사항 또는 집행 장애요소를 개선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 등을 집행 점검회의에서 논의

나. 재정집행상황 보고

○ 분기별 수행상황보고 외 재정집행상황은 매월 실적 제출

- 작성시기 : 매 월말 기준

- 제출기한(시군→시도→유역환경청→환경부) : 익월 10일까지
※ 시도에서는 익월 10일까지 유역환경청 제출

- 제출서류 : 단위사업별 집행내역 보고서(서식 6)

다. 부진사업에 대한 조치방안

○ 분기별 집행결과를 분석하여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연도 내 예산 집행이 어려운 사업은 집행점검회의 및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해결

- 시·도(시·군)는 상반기 중으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의 조기추진 방안 및 내역조정 등을 강구

4. 예산편성·관리를 위한 시스템 도입·운영에 따른 유의사항

가. 보조사업 등록(예산편성)

○ 국고보조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관리를 위해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기획재정부)과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 행정안전부)을 연계('09년)하여 운영

○ 국고보조사업의 경우 정부 예산이 확정될 경우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통해 시·도 지방재정관리시스템으로 확정내시 통보

- 시·도는 통보된 확정내시에 따라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통해 시·군 확정내시를 다시 배분

- 시·군은 시·도에서 배분된 확정내시에 따라 보조사업 등록업무 수행(매핑)

나. 국고보조금 교부

○ 보조사업 등록이 완료되면 등록된 시·군은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당해 회계연도 내에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통해 보조사업 교부 요청

- 중앙부처는 지자체의 교부요청 내용을 검토하여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통해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및 보조금 교부(계좌이체) 등의 업무 추진

다. 국고보조금 집행·관리

○ 등록된 국고보조사업의 집행현황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통해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으로 전송되어 중앙부처는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통해 지자체의 보조사업 집행현황 확인

○ 일반회계를 운용하지 않는 상하수도사업자의 경우 대부분 지방재정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으므로 시스템 연계·운영을 위한 반드시 별도의 시스템 구성·운영

라. 시스템 도입·운영에 따른 유의사항

○ 예산편성 시 시스템을 통해 통보되는 가내시 및 확정내시에 따라 시·군에서 보조사업 등록업무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및 교부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음

- 따라서, 시·도의 확정내시 배분 및 시·군의 보조사업 등록절차는 별도로 통보되는 세부 내시자료에 따라 반드시 등록

○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통해 전송되는 보조사업자의 집행실적은 국고보조금 및 지방비에 대한 보조사업자의 실제 집행현황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으므로,

- 매월 별도로 보고하는 집행현황 자료와 일치될 수 있도록 정확하게 집행

-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별도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되 집행실적 입력을 누락하거나 오기하는 경우가 없도록 정확한 집행실적 관리 필요

※ 지방재정관리시스템상의 집행률이 저조하여 매년 지적되므로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집행자료 입력 철저

마.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 '17년부터 예산편성·교부·집행 시 추가적으로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www.gosims.go.kr)을 병행 운영하고 있음

Ⅴ. 총사업비 관리계획

Ⅴ. 총사업비 관리계획

1. 목 적

○ 상수도 분야 보조금 편성과 관련하여 단위사업장별 총사업비를 사업 추진 단계별로 합리적으로 조정·관리함으로써 재정지출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

2. 대상사업

○ 상수도 분야 국고보조사업 중 사업기간이 2년 이상인 사업으로서 국고를 지원받고 있거나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

3. 기본방향

○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총사업비 관리지침」을 준용하되, 500억원 이상(토목, 정보화) 사업은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으로 등재·관리

○ 매 회계연도 예산안 편성 시 국고지원액의 결정기준이 되는 총사업비의 산정은 동 총사업비 관리계획에 따른 변경신청 및 검토결과에 따름

○ 지방자치단체장은 원칙적으로 타당성조사, 기본계획수립, 기본설계, 실시설계, 발주 및 계약, 시공의 단계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각 사업추진 단계별로 총사업비 관리를 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장은 설계·시공일괄 입찰방식(턴키공사)으로 추진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 과정에서 기본계획에 의한 발주 당시의 사업규모, 총사업비 등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함

- 불가피하게 당초 기본계획 등에서 정한 총사업비를 초과하거나 사업내용 또는 규모 등이 변동되는 경우 최종 낙찰자를 선정하기 이전에 유역환경청(환경부)과 총사업비 또는 사업규모 변동내용 등을 협의하여야 함

○ 다음 연도 완공 예정사업의 총사업비 변경 시, 다음 연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 될 수 있도록 당해 연도 2월말까지 총사업비 변경을 요청하여야 하며, 완공 연도에는 총사업비 변경 불허

○ 사업물량 증가 등으로 사업계획 변경이 필요한 사업은 사업을 착공한 후 변경신청서 제출

○ 법령개정, 물가변동 등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 총사업비 변경은 1회로 한정

4. 총사업비 관리절차

1) 기본계획 수립

기본계획수립	· 추정 총사업비 산정(표준사업비에 따라 산정)
부지선정	· 다른 법령과의 연계성을 고려, 부지선정에 따른 민원 검토
신규사업 선정	· 경제성을 고려하여 추정 총사업비 산정, 설계비 반영

2) 기본설계

기본설계시행	· 조사부실 방지를 위한 충분한 용역기간 및 용역비 부여 · 주민·이해당사자 및 관계기관의 의견 수렴 · 기본계획과 변경 시 유역환경청 승인 ⇒ 사업추진 재검증
기본설계완료	· 총사업비 변경 시 유역환경청 승인 ⇒ 사업추진 재검증

3) 실시설계

실시설계시행	· 총사업비 변경 시 유역환경청 승인 ⇒ 사업추진 재검증

※ 발주단계 이전까지는 공사비가 예정공사비의 15% 이상 증가한 경우 총사업비 변경 요청

4) 발주 및 계약

계 약	·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계약

5) 시공

시공이전 총사업비변경	· 불가피한 사유로 시공이전 공사계약 변경시 유역환경청 승인 ⇒ 타당성 재검증 · 설계변경의 필요성, 설계서(비목별 세부 공사단가 포함), 종합공정표, 기타 공사비 산출내역 첨부
착공 후 총사업비변경	· 불가피한 사유로 착공후 공사계약 변경시 유역환경청 승인 · 설계변경의 필요성, 설계서(비목별 세부 공사단가 포함), 종합공정표, 기타 공사비 산출내역 첨부
완공사업 총사업비 변경	· 다음연도 완공되는 사업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향후 추가적인 변경이 없도록 완공소요를 면밀히 분석하여 당해연도 2월말까지 유역환경청에 변경요구 ※ 완공 당해연도에는 총사업비 등 변경 불허

① 예비타당성조사 :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준용

② 기본계획 또는 타당성조사 : 수도법에 따른 수도정비기본계획 등으로 갈음하되, 보조사업자는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신청 시 동 기본계획의 재정계획을 근거로 총사업비를 협의하여야 함

③ 기본설계 : 기본설계 과정에서 사업내용과 규모, 총사업비(공사비가 예정공사비에서 15%이상 증가된 경우) 등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미리 유역환경청장과 사업규모, 총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을 협의

- 보조사업자는 기본설계 과정에서 사업물량을 과도하게 산정하거나 불필요한 기능이 포함되지 않도록 하고, 합리적인 사유 없이 당초의 사업 규모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됨

④ 실시설계 : 실시설계 과정에서 사업내용과 규모, 총사업비(공사비가 예정공사비에서 15%이상 증가된 경우) 등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미리 유역환경청장과 사업규모, 총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을 협의

- 보조사업자는 실시설계 과정에서 충분하고 합리적인 사유 없이 당초의 사업규모를 변경하여서는 안됨

⑤ 발주 및 계약 : 실시설계 단계에서 총사업비와 실제계약액과의 차액(낙찰차액)이 발생한 경우, 50일 이내에 관할 유역환경청장에게 총사업비 변경요구를 하여야 함

⑥ 시공 : 보조사업자는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규모, 총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계약 변경이전에 관할 유역환경청장과 협의하여야 함

⑦ 다음 연도 완공사업에 대한 총사업비 협의 : 다음 연도에 완공되는 사업의 사업규모, 총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을 불가피하게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와 물가인상으로 공사비 증액이 예상되는 사업은 그 변경내용을 고려하여 다음 연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당해연도 2월말까지 유역환경청장에게 총사업비 등의 변경요구를 하여야 함

- 총사업비 등의 변경 요구 시 향후 추가적인 총사업비 변경이 없도록 잔여공정에 대한 완공소요를 면밀히 분석하여 반영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 완공 당해연도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총사업비 등의 변경을 허용하지 아니함

⑧ 설계·시공일괄입찰방식으로 추진되는 사업(턴키사업)은 기본계획 수립이후 턴키사업 발주이전에 관할 유역환경청과 사업규모, 총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을 협의하여야 함

-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 과정에서 기 협의된 사업규모, 총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불가피하게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최종낙찰자를 선정하기 이전에 관할 유역환경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함

- 자치단체의 장은 턴키사업 또는 대안 입찰방식으로 추진되는 사업에 대하여 사업자 선정일로부터 50일 이내에 관할 환경청장과 계약 잔액 반납, 설계보상비 반영 등을 위한 총사업비 변경 협의를 하여야 함

- 턴키사업 또는 대안입찰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정부에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음

5. 신청기한 및 제출서류

○ 사업추진 단계별로 총사업비 변경 사유 발생 시 신청

- 시·군 → 시·도 → 관할 유역환경청

(사유발생시) (10일 이내)

○ 다음 연도 완공사업에 대한 총사업비 협의

- 시·군 → 시·도 → 관할 유역환경청

(2.28까지)

○ 신청서류

- 시·군 및 시·도 : '서식 7' 및 '서식 8'을 유역(지방)환경청에 2부 제출

※ 시·도에서는 관할 유역(지방)환경청별로 구분하여 제출

6. 작성방법

○ 지정된 서식 및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고, 자료설명에 필요한 참고자료 등은 별도 첨부

- 작성서식에서 총 국고는 완료시까지 소요되는 총 국고(융자, 보조)를 말하며, 그 이외에는 전체사업비(국고, 지방비, 부담금 등)를 말함

7. 조정원칙

<기본 조정 원칙>

○ 안전시공, 법령개정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착공 이후 설계변경에 의한 물량증가를 초래하는 총사업비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인정

○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공종·단위사업 등의 추가로 인한 총사업비 변경은 불인정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원칙적으로 “지수조정 방식”을 적용(「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참조)

- 감리비에 대한 물가변경은 지수조정방식 또는 품목조정방식 적용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변경은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물가변동 조정률 산출”방법에 따라야 함

○ 미계약 공사분, 물가인상 예상분 등 확정되지 않은 물가조정 요구는 불인정

- 다만, 다음연도 완공사업의 경우 총사업비 변경 신청시 물가인상 예상분에 대해 조정을 요구할 수 있음

< 경비별 세부 조정원칙 >

① 보상비

○ 보상비는 직접보상비와 간접보상비를 모두 포함

- 직접보상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 기타보상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토지 등의 손실보상액·이주대책비용·이주정착금 등 주민에게 직접 지급되는 보상금액
- 간접보상비 : 분할측량비용·감정평가비용·권리이전비용·이주대책 등의 위탁수수료 등 토지취득 및 보상업무에 소요되는 부대경비

- 보상이 완료된 경우는 관련서류 확인 후 기 지출된 금액으로 조정

- 토지 등의 손실보상액은 감정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산정

- 감정평가가 행하여지지 않은 경우에는 공시지가, 인근 토지 감정평가 결과 등을 감안하여 추정 보상비를 반영하되, 추후 감정평가를 거쳐 보상비를 집행한 후 정산

○ 감정평가결과를 적정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평가기관 간 감정가격이 1.1배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제3의 감정평가기관에 재평가를 의뢰

○ 분할측량비용·감정평가비용·권리이전비용·이주대책 등의 위탁수수료 등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지가 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산정

② 공사비

○ 공사비는「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금액을 말함

※ 공사비 : 발주자의 공사비 총예정금액(자재대 포함) 중 용지비, 보상비, 법률수속비 및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일체의 금액

○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 완료사업의 경우는 설계결과 보고서상의 공사비로 조정하되, 다음의 기준을 적용

- 당초계획을 유지한 사업으로서 유사사업의 공사단가와 비교하여 차이가 크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설계결과를 반영하여 총사업비를 조정

- 당초계획보다 사업규모 등이 증가했거나 사업내용이 변동된 경우에는 사업물량 증가 또는 사업내용 변경의 타당성 등을 검토한 후 총사업비를 조정

- 공사단가가 유사사업에 비해 높은 경우에는 평균단가 등을 감안하여 설계결과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총사업비를 조정

○ 공사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서류를 확인하여 계약액을 기준으로 총공사비 조정

○ 공사착공 이후 설계변경은 원칙적으로 불인정

- 다만, 법령개정, 시설의 안전강화, 실시설계시 예상치 못한 지장물 또는 연약지반의 발견, 물가변동 등 불가피한 사유에 의한 설계변경

- 새로운 공법 및 기자재 설치 등으로 시설의 성능이 대폭 개선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최소한 인정

○ 설계변경으로 인한 총사업비의 조정 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5조의 규정을 준용하며, 설계변경에 따른 금액이 동 규정에 의한 계약단가 또는 예정가격단가 등에 의해 산정된 것인지 여부를 확인

○ 물가변동으로 인한 총사업비 변경의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의 규정을 준용

③ 시설부대경비

○ 시설부대경비는 감리비, 설계비, 시설부대비, 관리비(민간대행사업인 경우에 한함) 등을 말하며, 사전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에 소요되는 비용을 제외

○ 감리비

- 공사비에 기획재정부의 '예산안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서 정한 건설부분 감리 요율을 적용하여 산정

- 시공과정에서 총공사비가 조정되는 경우에는 조정시점 이후의 잔여 공사비 총액에 감리요율을 적용하여 조정함

○ 설계비

- 공사비에 기획재정부의 '예산안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서 정한 건설부분 설계 요율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시공 중인 사업으로서 불가피한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추가 반영

○ 시설부대비

- 공사비에 기획재정부의 '예산안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서 정한 시설부대비 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며, 공종별 또는 단위사업별로 개별적으로 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하여서는 아니 됨

- 시공과정에서 총공사비가 조정되는 경우에는 조정시점 이후의 잔여 공사비 총액에 시설부대비 요율을 적용하여 조정

○ 관리비

- 각 대행사업 관련 법률의 관계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되, 책임감리 시행여부, 사업규모 및 내용 등을 감안하여 책임감리비 내에서 적용

< 총사업비 검토요령(예시) >

항 목	승인대상	승인불가
○ 실시설계에 따른 사업비 변경	- 세부 실시설계로 관로노선이 연장된 경우 등	- 노후관망 교체 등 본 사업과 성격이 다른 부분포함
○ 사업지역의 확대	- 당초 사업계획에 따른 관로 경유지역으로 사업대상에 누락된 경우 - 미급수 지역으로 동 사업지역을 통과하여 상수공급이 가능한 지역으로서 관거연장이 필요한 경우 *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것보다 합리적인 경우 - 당초 사업계획의 용수공급원(상수원이나 정수장)이 위치하고 있으며 동 지역의 주민 민원으로 당초 사업계획 집행이 불가한 경우 * 용수 공급원이 위치한 행정리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가 인정되는 범위만 인정	- 관로 경유지역과 무관하며, 정수장이나 당초 관로 분기지점에서 별도의 노선으로 공급이 가능(합리적)한 경우 - 관로연장이 5㎞이상으로 10가구 미만인 마을
○ 용수공급방안의 변경	- 당초 사업계획 대비 사업비가 저감되는 용수공급방안 변경 * 실시설계 경제성 분석 제시 - 용수공급방안 변경으로 소규모수도시설, 우물, 전용상수도 등을 폐쇄하는 경우	- 신규 광역상수도를 수수하거나 지방상수도를 폐쇄하는 사업
○ 개발계획	- 당초 계획대비 시설계획의 변경 원인이 개발계획에 의한 경우, 사업계획은 인정하되, - 사업비는 원인자 부담이 원칙	
○ 기타	- 각 변경 원인의 타당성을 각각 판단한 후, 변경 조건에 부합하는 항목의 사업계획 변경만 인정	- 당초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수도시설 설치

Ⅵ. 관련 자료

서식 1 : 2021년 환특 예산안 신청서 ····· 53
서식 2 : 2021년 균특 예산안 신청서 ····· 64
서식 3 : 2021년 예산안 유역환경청 검토서 ····· 79
서식 4 :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 81
서식 4-1 : 사업추진계획서 ····· 82
서식 5 : 사업수행 상황보고서(분기 보고) ····· 84
서식 5-1 : 사업추진 실적보고서 ····· 86
서식 6 : 단위사업별 집행내역 보고서(월 보고) ····· 87
서식 7 : 총 사업비 변경요구 신청서(특·광역시, 시·군 작성) ····· 88
서식 8 : 총 사업비 조정요구 신청서(시·도 작성) ····· 97

[서식 1] ⇒ 시·도 및 시·군·구 작성 서식

2021년 환특 예산안 신청서(시·도, 시·군·구명)

Ⅰ. 예산신청 총괄현황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별	'20예산	'21예산요구					비고
		세부단위 사업수	계	국고 (융자)	지방비	기타	
소관합계							
○스마트지방상수도 지원사업							신규 : 0개소 계속 : 0개소
○노후상수관로 정밀조사 지원							신규 : 0개소

※ '20예산 및 '21예산요구액은 국고기준, 비고란에는 신규, 계속사업 개소수 등을 반드시 기재

작성자 : 담당과 직명 성명 (인)
(TEL : FAX :)
확인자 : 담당과 직명 성명 (인)
(TEL : FAX :)

Ⅱ. 세부사업별 예산 설명자료

가. 스마트지방상수도 지원사업

(단위: 백만원)

시·군·구명	'20예산	'21예산요구				비고
		계	국고	지방비	기타	
계						신규 0개소 계속 0개소
○						신규 0개소 계속 0개소
○						신규 0개소 계속 0개소

※ 비고란에는 단위사업별 신규, 계속사업 개수 등 기재

나. 노후상수관로 정밀조사 지원

(단위: 백만원)

시·군·구명	'20예산	'21예산요구				비고
		계	국고	지방비	기타	
계						신규 0개소
○						신규 0개소
○						신규 0개소

※ 비고란에는 단위사업별 신규, 계속사업 개수 등 기재

Ⅲ. 세부 단위사업별 예산 설명자료

시·군·구명	스마트지방상수도 지원사업(신규, 계속)

※ 세부단위사업별로 작성하되, 신규 및 계속사업으로 구분하여 ( )로 기재

※ 시·군·구에서 작성

(단위: 백만원)

시·군·구명	'20예산	'21예산요구	비고				비고
			계	국고	지방비	기타	
스마트지방상수도 지원사업							

※ '20예산 및 '21예산은 국고기준

1. 사업개요

□ 사업의 필요성

※ 간략히 기술하되, **신규사업의 경우는 필요성, 타당성 등의 근거를 설명할 수 있는 상세자료를 작성**하여 "6. 참고자료"에 별도첨부

○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 총사업비 : 억원(국고 : 억원)('19년까지 국고 지원액 : 억원)

○ 사업규모(자산관리 대상 수량, 관로연장 등) :

○ 추진공정('20.3월말 기준)

- 기본/실시설계 %(완료일 또는 완료예정일), 공사진도 %

□ 사업추진현황*('20년 현재까지의 추진현황을 연월일별로 기술)*

○ '00.00.00 :

○ '00.00.00 :

○ '00.00.00 :

○ '00.00.00 :

□ **사업추진상 문제점**

○ *(민원발생 등으로 사업추진 지연, 집행율 저조 사유 등을 중심으로 발생사유와 진행과정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 **대 책**

○ *(사업추진상 문제점에 대한 대책 또는 향후 추진일정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 따른 대응전략 등에 따른 구상을 기술)*

□ **향후일정***(이후 일정을 시운전, 준공예정일까지 기술)*

○ 연월(일) :

○ 연월(일) :

○ 연월(일) :

○ 연월(일)~연월(일) : 시운전기간

○ 연월(일) : 준공예정

2. 연차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19년 까지	'20년 예산	연차별 투자계획		
		현행	변경			'20	'21	'22
계								
국고 보조금								
지방비	소계							
	시도비							
	시군비							
원인자부담금								
기타								

3. '20년도말 예상 사업진도 및 예산집행률 전망

□ **'20년말 기준 예상 사업진도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예상 진도	'20년말 예상집행 상황							연도말 사업진도
		'20예산액(E)	전년이월액(D)	예산현액(F=E+D)	계약액(G)	G/F (%)	지출액(H)	H/F (%)	
전체사업비									
· 실시설계									
· 용지보상									
· 공용지보상									
· 자재구입비									
· 기타									

※ 구분의 내용은 해당 지자체의 상황에 맞게 수정 가능

4. 참고자료

○ 기타 예산안 편성과 관련하여 보완설명 등이 필요한 자료 첨부

Ⅲ. 세부 단위사업별 예산 설명자료

시·군·구명	노후상수관로 정밀조사 지원(신규, 계속)

※ 세부단위사업별로 작성하되, 신규 및 계속사업으로 구분하여 ( )로 기재

※ 시·군·구에서 작성

(단위: 백만원)

사업명	'19예산	'20예산	'21예산요구				비고
			계	국고	지방비	기타	
노후상수관로 정밀조사 지원							

※ '18예산 및 '19예산은 국고기준

1. 사업개요

□ 사업의 필요성

※ 간략히 기술하되, **신규사업의 경우는 필요성, 타당성 등의 근거를 설명할 수 있는 상세자료를 작성**하여 "6. 참고자료"에 별도첨부

○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 총사업비 : 억원(국고 : 억원)('19년까지 국고 지원액 : 억원)

○ 사업규모(조사 연장 등) : (㎞ 등)

○ 추진공정('20.3월말 기준)

- 기본/실시설계 %(완료일 또는 완료예정일), 공사진도 %

□ 사업추진현황 *('20년 현재까지의 추진현황을 연월일별로 기술)*

○ '00.00.00 :

○ '00.00.00 :

○ '00.00.00 :

○ '00.00.00 :

□ 사업추진상 문제점

○ *(민원발생 등으로 사업추진 지연, 집행율 저조 사유 등을 중심으로 발생사유와 진행과정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 대 책

○ *(사업추진상 문제점에 대한 대책 또는 향후 추진일정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 따른 대응전략 등에 따른 구상을 기술)*

□ 향후일정 *(이후 일정을 시운전, 준공예정일까지 기술)*

○ 연월(일) :

○ 연월(일) :

○ 연월(일) :

○ 연월(일)~연월(일) : 시운전기간

○ 연월(일) : 준공예정

2. '21예산안 세부 요구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물량 (보조율)	총 사업비	'19까지 예산	'20예산	'21예산 소요내역		'21이후
						금액	산출근거	
세부내역	**합 계**							
	◦ 기본설계							
	- 시설물현황조사							
	- 관로탐사							
	- 직접조사							
	- 정비계획수립							
	◦ 기 타							
재원별	◦ 국고	(%)						
	- 보조금	(%)						
	◦ 지방비	(%)						
	- 시도비	(%)						
	- 시군비	(%)						
	◦ 원인자부담금	(%)						
	◦ 기타	(%)						

주) 1. 세부내역에 기본설계, 건설사업관리비, 기타 등의 구분이 곤란한 사업은 별도항목으로 구분하여 기재
2. 물량은 2018년 상수도 통계연보 상의 수치를 기준으로 기재 작성한다.
3. 기본설계비용은 시설물현황조사, 관로탐사, 직접조사, 정비계획수립 비용으로 산정
4. 시설물현황조사 물량에는 도수·송수·배수관 연장을 ㎞로 기재하고 사업비는 ㎞당 25천원을 반영하여 산정한다.
5. 관로탐사 물량은 도수·송수·배수관 전체 경년관 연장의 10%를 ㎞로 기재하고 사업비는 ㎞당 2,294천원을 반영하여 산정한다.
6. 직접조사는 관체를 직접조사하는 비용으로 물량은 지자체별 중점관리지역 소블록당 1개소, 경년관은 3㎞당 1개소 조사를 기준으로 조사물량을 산정하여 개소 기재하고 사업비는 개소당 6,220천원을 반영하여 산정한다.
7. 정비계획 수립은 아래 식에 따라 지자체별 보정계수를 적용하여 1식으로 산정한다.
   * 정비계획 비용 = 24,249천원 × 보정계수1 + 10,838천원 × (보정계수2 + 보정계수3) + 35,000천원
   - 보정계수1 = (인구(명)/100,000)^0.35 [최소 0.805 ~ 최대 5.012]
   - 보정계수2 = {(도수·송수·배수관 연장(㎞))/400}^0.45 [최소 0.390 ~ 최대 5.260]
   - 보정계수3 = (정수장용량(㎥/일)/50,000)^0.35 [최소 0.254 ~ 최대 4.191]
8. 기타의 경우, 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해당사항이 없으면 공란

3. 연차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19 까지	'20 예산	연차별 투자계획				
		현행	변경			'21	'22	'23	'24	'25이후
계										
국고	소계									
	융자금									
지방비	소계									
	시·도비									
	시·군비									
원인자부담금										
기타										

4. 결산현황

□ 최근 3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별		당초예산 (A)	전년도 이월액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지출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전년도	당해연도		
'17	계								
	국고								
	지방비								
	원인자부담금								
'18	총액								
	국고								
	지방비								
	원인자부담금								
'19	총액								
	국고								
	지방비								
	원인자부담금								

○ 연도별 이·전용, 이월 및 불용 발생사유

- ('17년)
- ('18년)
- ('19년)

□ 세부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18까지 결산(A=B+C+D)				'19년 결산(E+F=G=H+I+J)						
		'18까지 예산 (A)	'18까지 지출액 (B)	다음년도 이월액 (C)	불용액 (D)	'19예산 (E)	전년도 이월등 (F)	예산 현액 (G)	지출액 (H)	다음년도 이월액 (I)	불용액 (J)	집행률 (H/G)
합 계									( )	( )	( )	
국고	소계								( )	( )	( )	
	융자금								( )	( )	( )	
지방비	소계								( )	( )	( )	
	시도비								( )	( )	( )	
	시군비								( )	( )	( )	
원인자부담금									( )	( )	( )	
기타									( )	( )	( )	

※ 동 결산내역의 작성은 지자체별 공식 연도별 결산내역에 의거 작성하고 이후 '20예산에 대한 분기별 집행상황 파악과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관리될 것이므로 정확히 작성

※ 2019년 결산내역의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은 전년도 이월액에 대한 집행현황을 하단에 ( )로 별도 표기

○ '19년도 예산집행 부진사유(집행률 90% 미만 사업)

- *('19년도 예산집행 부진으로 발생한 이월액과 '20년도 예산에 대한 집행전망을 구체적으로 설명)*

○ '20년도 예산집행 전망

- *('19년도 예산집행 부진으로 발생한 이월액과 '20년도 예산에 대한 집행전망을 구체적으로 설명)*

5. '20년도말 예상 사업진도 및 예산집행률 전망

□ '19년말 기준 사업진도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계약사항		'19년까지 집행상황						'20예산
	계약일	계약기간	예산액 (A)	계약액 (B)	B/A (%)	지출액 (C)	C/A (%)	차년이월 (D=A-C)	
전체사업비									
◦ 기본설계									
- 시설물현황조사									
- 관로탐사									
- 직접조사									
- 정비계획수립									
◦ 기 타									

※ 사업비는 국고, 지방비 등 구분없이 전체사업비 기준

□ '20년말 기준 예상 사업진도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예상 진도	'20년말 예상집행 상황							연도말 사업진도
		'20예산액(E)	전년이월액(D)	예산현액 (F=E+D)	계약액 (G)	G/F (%)	지출액 (H)	H/F (%)	
전체사업비									
◦ 기본설계									
- 시설물현황조사									
- 관로탐사									
- 직접조사									
- 정비계획수립									
◦ 기 타									

6. 참고자료

○ 기타 예산안 편성과 관련하여 보완설명 등이 필요한 자료 첨부

[서식 2] ⇒ 시·도 및 시·군·구 작성서식

2021년 균특 예산안 신청서(시·도명)

Ⅰ. 예산신청 총괄현황

(단위 : 백만원)

세부(내역)사업별	'19예산	'20예산요구					비고
		세부단위 사업수	계	국고	지방비	기타	
소관합계							
○ 상수도시설 확충 및 관리 (지역자율, 제주, 세종)							신규 0 계속 0
- 강변여과수개발							신규 0 계속 0
- 고도정수처리시설설치							
- 도서지역식수원개발							
- 지방상수도비상공급망구축							
- 친환경대체취수원개발							
○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시범사업(지역지원)							
- 녹조대응							계속 0
- 미량유해물질대응							계속 0

※ '19년 예산은 국고기준, 비고란에는 '20년 예산요구사업의 신규, 계속사업 개소수 기재

※ 노후상수도정비(생활, 제주) 사업은 별도 제출

작성자 : 담당과 직명 성명 (인)
(TEL : FAX :)
확인자 : 담당과 직명 성명 (인)
(TEL : FAX :)

Ⅱ. 세부사업별 예산 설명자료

사업명 : 상수도시설 확충 및 관리(시・도)

< 회계-계정 > (단위: 백만원)

구 분[1]	2019결산	2020예산 (A)	2021예산(안) 신청(B)	증(△)감	
				(B-A)	%
계					
▪ 강변여과수개발					
▪ 고도정수처리시설설치					
▪ 도서지역식수원개발					
▪ 지방상수도비상공급망구축					
▪ 친환경대체취수원개발					

※ 예산은 국고기준임

※ 담당자 : ☏

※ 세부사업을 구성하는 모든 내역사업을 기술

1. 예산신청 개요

□ 사업목적

※ 전체 내역사업을 포괄하는 내용을 개조식으로 간략하게 기술(1줄 이내)

□ 사업내용

내역사업명[2]	사업기간	총사업비[3]	사업규모[4]	지원조건[5]	시행주체[6]
▪ 강변여과수개발 (계속)	'00～'00	22,038억원 ('19까지 △△억원)	· 취수장 1개소 · 정수장 1개소 · 가압장 1개소 (단위: ㎥/일) · 관로 1㎞	국고보조 (국고 70% 지방 30%)	시・군
▪ 고도정수처리 시설설치 (계속)	'94～계속		· 고도정수처리 시설 00㎥/일	국고보조 (국고 70% 지방 30%)	
▪ 도서지역식수 원개발 (계속)			· 해저관로 0km · 해수담수화 00 ㎥/일	국고보조 (국고 70% 지방 30%)	
▪ △△사업 (신규)	～			국고보조 (국고 70% 지방 30%)	

1), 2) 내역사업명으로 작성, 신규 내역사업은 사업명 뒤에 “(신규)” 표시
3) 국비와 지방비 등을 모두 포함한 금액을 기재, 괄호에는 ‘19까지 기 투자액(예산)을 기재, 총사업비가 없는 사업은 ‘17까지 기 투자액(예산)만 기재
4) 사업규모(연장 km, 개소 등)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를 기입(없을 경우 생략 가능)
5) 지원형태(직접수행, 민간·지자체 보조, 출연(출자), 융자 등) 및 지원조건(보조율 등 재원분담, 융자조건, Matching 여부, 바우처, 기타 제도개선사항 등)을 기재
계속사업은 기존보조율, 신규사업은 포괄보조율 적용
6) 출연사업 및 민간이전사업 등은 실제 사업시행주체(연구소, 대학 등) 기재

□ 국가균형발전계획과 연계성

※ 국가균형발전 비전 및 전략과의 연계성 기술

○ (강변여과수개발)

○ (고도정수처리시설설치)

○ (도서지역식수원개발)

○ (지방상수도비상공급망구축)

○ (친환경대체취수원개발)

○ (△△사업)

2. 2021년 예산신청 내용

□ 예산 신청 내역

※ 사업내역(특히, 사업량 및 사업비 산출근거)을 신규·계속·완료 물량을 구분하여 상세하게 기술

(단위: 개소, 백만원)

내역사업명	‘20년 예산		‘21년 신청		산출근거
	물량	예산	물량	예산	
<합 계>					
▪ 강변여과수 개발(계속)					· (신규) 00개소 0,000백만원 · (계속) 00개소 0,000백만원
▪ 고도정수처리 시설					· (신규) 00개소 0,000백만원 · (계속) 00개소 0,000백만원
▪ 도서지역식 수원개발					· (신규) 00개소 0,000백만원 · (계속) 00개소 0,000백만원
▪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					· (신규) 00개소 0,000백만원 · (계속) 00개소 0,000백만원
▪ 친환경대체 취수원개발					· (신규) 00개소 0,000백만원 · (계속) 00개소 0,000백만원
▪ △△사업 (신규)					· (신규) 00개소 0,000백만원 · (계속) 00개소 0,000백만원

□ 사업내역별 투자계획

(단위: 백만원)

내역사업명	재원 구분	총 사업비	2020 까지	2021 예산 요구	연차별 투자계획				
					2022	2023	2024	2025	2026 이후
< 합 계 >	계								
	국비								
	지방비								
	기타								
▪ 강변여과수개발	소계	64	20	20	10	10	4	-	-
	국비	32	10	10	5	5	2	-	-
	지방비	32	10	10	5	5	2	-	-
	기타	-	-	-	-	-	-	-	-
▪ 고도정수처리시설설치	소계								
	국비								
	지방비								
	기타								
▪ △△사업	소계								
	국비								
	지방비								
	기타								

□ '21년 신규사업 사전절차 이행여부

내역사업명	2021년 예산(안)	부지확보	각종 영향평가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수도정비기본 계획 반영	비고
계						
▪						
▪						

※ 부지확보 : 부지확보한 일자 기입
※ 각종 영향평가 : 평가를 받은 영향평가명을 기입하고, 완료일자 기입
※ 지방재정투융자심사 : 투융자 심사완료 일자를 기입
※ 수도정비기본계획 반영 : 수도정비기본계획 승인(환경부) 일자
※ 비고란에는 사전절차 이행 대상이 아닌 경우 그 사유를 명시, 또한 사전 이행절차 완료 등 집행가능성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는 입증내용 명시
※ 항목에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해당없음'을 표시

□ 예산집행실적(국비 실집행기준)

* 환경부(유역환경청)에 제출한 1/4분기 사업수행상황보고서(엑셀자료 포함)와 동일하게 작성

(백만원)

내역사업명	'19년 예산				'20년 예산		
	예산현액 (A)	집행액 (B)	차년도 이월 (C)	집행률(%) (B/A)	당초 예산 (D)	예산현액 (C+D)	1/4분기 집행액
계							
▪ 강변여과수개발							
▪ 고도정수처리시설설치							
▪ 도서지역식수원개발							
▪ 지방상수도비상공급망구축							
▪ 친환경대체취수원개발							

※ '19년 예산현액 : '19년 당초예산 + 전년도('18년) 이월금 + 이·전용액
※ '20년 예산현액 : '20년 당초예산 + 전년도('19년) 이월금 + 이·전용액

□ 예산집행실적 부진사유 및 애로사항

내역사업명	부진사유	애로사항 및 '19년 집행전망
계		
▪		
▪		

※ 내역사업은 예산현액 대비 실집행율이 60%이하인 사업을 대상으로 작성

3. 고려사항

□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예비타당성 조사

[양식 1-1] 사업별 참고자료 작성양식 (시·도 작성, 자율편성사업만 해당)

참고 1 내역사업별 신청 현황 (시·군·구 단위 작성)

(단위 :개소, 백만원, %)

내역사업명	2020년도				2021년도 요구				증 감	
	물량	계 (a+b)	국고 (a)	지방비 (b)	물량	계 (c+d)	국고 (c)	지방비 (d)	(c-a)	(c/a)
<합 계>										
① 강변여과수개발	100	60	30	30	150	90	45	45	15	50
· 의령군(계속)	10	6	3	3	7	4	2	2	△1	△33.3
② 고도정수처리 시설설치										
· 부안군(계속)										
· 김제시(계속)										
· 김제시(신규)										
· 고창군(계속)										
③ 도서지역식수원 개발										
· 인천시(신규)										
· 통영시(계속)										
④ 지방상수도비상 공급망구축										
· 창녕군(계속)										
· 공주시(계속)										
· △△시(신규)										
⑤ 친환경대체취수 원개발										
· 제주(계속)										
· △△시(신규)										
⑥ ◇◇사업(신규)										
· △△시(신규)										

※ '20년 완료사업은 제외, 동일 내역사업에 1개 지자체의 사업이 2개 이상인 경우 각각 작성

참고 2 내역사업별 투자계획 (시·군·구 단위 작성)

(단위: 백만원)

내역사업명	재원 구분	총 사업비	2020 까지	2021 예산 요구	연차별 투자계획				
					2022	2023	2024	2025	2026 이후
< 합 계 >	계								
	국비								
	지방비								
	기타								
① 강변여과수개발	소계	64	20	20	10	10	4	-	-
	국비	32	10	10	5	5	2	-	-
	지방비	32	10	10	5	5	2	-	-
	기타	-	-	-	-	-	-	-	-
▪ 고창군(계속)	소계								
	국비								
	지방비								
	기타								
②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소계								
	국비								
	지방비								
	기타								
▪ 고창군(계속)	소계								
	국비								
	지방비								
	기타								
▪ 부안군(계속)	소계								
	국비								
	지방비								
	기타								
▪ △△군(신규)	소계								
	국비								
	지방비								
	기타								

참고 3 내역사업별 집행실적 (시·군·구 단위 작성)

(백만원)

내 역 사 업 명	'19년 예산				'20년 예산		
	예산현액 (A)	집행액 (B)	차년도 이월 (C)	집행률(%) (B/A)	당초 예산 (D)	예산현액 (C+D)	1/4분기 집행액
계							
① 강변여과수개발							
▪ 의령군(계속)							
▪ △△시(신규)							
② 고도정수처리시설설치							
▪ 용인시(계속)							
▪ 성남시(계속)							
▪ △△시(신규)							
③ 도서지역식수원개발							
▪ 인천시(신규)							
▪ 신안군(신규)							
▪ 군산시(계속)							
④ 지방상수도비상 공급망구축							
▪ 창녕군(계속)							
▪ 공주시(계속)							
▪ △△시(신규)							
⑤ 친환경대체취수원개발							
▪ 제주(계속)							
▪ △△시(신규)							

참고 4 내역사업별 사업설명자료

00시·도 (○○부, 균특 **시도/시군구자율** / **세부사업명**) **계속/신규**

시도 강변여과수개발

(백만원)

구 분	'20년 예산 (A)	'21년 예산			증감 (B-A)	
		요구		검토안		
		지자체	부처(B)			%
○000 강변여과수개발	60	75			15	25.0

*○○부 ○○과 ○○○, 010-0000-0000 / ○○시·도 ○○과 ○○○ 010-0000-0000

□ 사업개요

○ 총사업비 : 1.2억원(국비 0.6, 지방비 0.6) / ○ 보조율 : 국비 70%, 지방비 30%
○ 사업위치 : 00군 00면 00로 00-00번지(00리 00번지)
○ 사업기간 : '15. 1. ~ '22. 10.
○ 시행주체 :
○ 사업내용 : 구체적인 사업물량 적시
-

□ 사전절차 이행여부 : 미이행시 "X", 이행시 "○", 미해당시 "해당없음"

	부지매입	투자심사	사전평가	수도정비기본계획
여부	○ / X / 해당없음	○ / X / 해당없음	○ / X / 해당없음	○ / X / 해당없음

* 미이행시 사유 or 치유 예정일:

□ 사업집행률(국비 기준)

(백만원)

'18			'19			'20		
현액	집행액	%	현액	집행액	%	현액	집행액	%
500	500	100.0	500	500	100.0	500	500	100.0

* '18년은 12월말 기준, '19년은 3월말 기준

□ 연차별 투자계획

(백만원)

	계	'20까지	'21	'22	'23	'24이후
국비	4,000	2,000	500	500	500	500

□ 시도 검토의견 : 적정/부적정(사유 명시)

시·군·구명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시범사업(계속)

※ 시·군·구에서 작성 후 시·도에서 제출

(단위: 백만원)

사업명	'19예산		'20예산		'21예산요구				비고
	국고	융자	국고	융자	계	국고	지방비	융자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시범사업(지역지원)									
- 녹조대응 고도정수처리시설설치									
- 미량유해물질대응 분말활성탄접촉조 설치									

※ '19예산 및 '20예산은 국고+융자기준

※ 현재 추진중인 계속사업 이외에는 균특 지역자율계정으로 편성

1. 사업개요

□ **사업의 필요성** ※ 간략히 기술

○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 총사업비 : 백만원(국고 : 백만원)

○ 전체시설용량(톤/일) :

○ 고도화 시설 도입용량(톤/일) :

○ 추진공정계획

- 기본/실시설계 완료예정일 :

□ **사업추진현황***('20년 현재까지의 추진현황 등을 연월일별로 기술)*

○ 연월일 :

○

□ **사업추진상 문제점**

○ *(민원발생 등으로 사업추진 지연, 집행율 저조 사유 등을 중심으로 발생사유와 진행과정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대 책**

○ *(사업추진상 문제점에 대한 대책 또는 향후 추진일정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 따른 대응전략 등에 따른 구상을 기술)*

□ **향후일정***(이후 일정을 시운전, 준공예정일까지 기술)*

○ 연월(일) :

○ 연월(일)~연월(일) : 시운전기간

○ 연월(일) : 준공예정

2. '21년 예산안 세부 요구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물량 (보조율)	총 사업비	'19까지	'20년	'21년 예산 소요내역		'21이후
						금액	산출근거	
사업비	**합 계**							
	◦ 타당성 조사							
	◦ 설계(기본실시)							
	◦ 감리비							
	◦ 공사비							
	◦ 용지(보상)비							
	◦ 부대비용							
	◦ 기 타							
재원별	◦ 국고	(%)						
	- 보조금	(%)						
	- 융자금	(%)						
	◦ 지방비	(%)						
	- 시·도비	(%)						
	- 시·군비	(%)						
	◦ 기타	(%)						

주) 1. 사업비 기재 시 타당성조사 및 기본/실시 설계, 공사비 등의 구분이 곤란할 경우 별도 항목으로 구분하여 기재

2. 산출근거에 물량·단가 등을 기재하고 기타 상세한 산출근거·증빙자료는 별도 첨부

3. 공사비 산출근거에는 고도화 시설 투자비, 시설개량 및 모형실험 예산을 구분하여 별도 기재한 후 제시

4. 기타의 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해당사항이 없으면 공란

3. 연차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19년 까지	'20년 예산	연차별 투자계획				
		최초	현행			'21	'22	'23	'24	'25이후
계										
국고	소계									
	보조금									
지방비	소계									
	사도비									
	사군비									
원인자부담금										
기타										

4. 결산현황

□ 최근 3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별		당초예산 (A)	전년도 이월액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지출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전년도	당해연도		
'17	계								
	국고								
	지방비								
	원인자부담금								
'18	총액								
	국고								
	지방비								
	원인자부담금								
'19	총액								
	국고								
	지방비								
	원인자부담금								

○ 연도별 이·전용, 이월 및 불용 발생사유

- ('17년)
- ('18년)
- ('19년)

□ 세부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18까지 결산(A=B+C+D)				'19년 결산(E+F=G=H+I+J)						
		'17까지 예산 (A)	'17까지 지출액 (B)	다음년도 이월액 (C)	불용액 (D)	'18예산 (E)	전년도 이월등 (F)	예산 현액 (G)	지출액 (H)	다음년도 이월액 (I)	불용액 (J)	집행률 (H/G)
합 계									( )	( )	( )	
국고	소계								( )	( )	( )	
	융자금								( )	( )	( )	
지방비	소계								( )	( )	( )	
	시도비								( )	( )	( )	
	시군비								( )	( )	( )	
원인자부담금									( )	( )	( )	
기타									( )	( )	( )	

※ 동 결산내역의 작성은 지자체별 공식 연도별 결산내역에 의거 작성하고 이후 '19예산에 대한 분기별 집행상황 파악과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관리될 것이므로 정확히 작성

※ 2019년 결산내역의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은 전년도 이월액에 대한 집행현황을 하단에 ( )로 별도 표기

○ '19년도 예산집행 부진사유(집행률 90% 미만 사업)

- *(사업추진에 대한 사전준비 부족, 사업계획 추진과 예산지원시기의 적정여부, 재원의 조달문제, 예상치 못한 장애요소 발생, 계약체결 및 기성금 지급방법에 문제가 있는지 등 구체적인 부진요인을 들어 설명)*

ㅇ '20년도 예산집행 전망

- *('19년도 예산집행 부진으로 발생한 이월액과 '20년도 예산에 대한 집행전망을 구체적으로 설명)*

5. '20년도말 예상 사업진도 및 예산집행률 전망

□ '19년말 기준 사업진도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계약사항		'19년까지 집행상황						'19예산
	계약일	계약기간	예산액 (A)	계약액 (B)	B/A (%)	지출액 (C)	C/A (%)	차년이월 (D=A-C)	
전체사업비									
· 용지보상									
· 타당성조사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기타부대비									
· 시설공사									

※ 사업비는 국고, 지방비 등 구분없이 전체사업비 기준

□ '20년말 기준 예상 사업진도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예상 진도	'20년말 예상집행 상황							연도말 사업진도
		'18예산액(E)	전년이월액(D)	예산현액 (F=E+D)	계약액 (G)	G/F (%)	지출액 (H)	H/F (%)	
전체사업비									
· 용지보상									
· 타당성조사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기타부대비									
· 시설공사									

6. 참고자료

ㅇ 기타 예산안 편성과 관련하여 보완설명 등이 필요한 자료 첨부

[서식 3]

'21년 예산안 유역환경청 검토서

<0000유역환경청>

□ 환경개선특별회계

구분	내역사업명	지자체	신규/계속	'20 예산	'21신청(안)		유역청 검토	
					신청액	신청내역	검토액	검토의견
	합 계							
스마트 지방 상수도 지원 사업	< 소 계 >							
	▪스마트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	00군	계속		2,000	잔여사업비 100%	1,500	편성 및 감액기준에 따라 000백만원으로 조정 필요
		00시	신규		500	설계비	0	수도정비기본계획 미반영
	▪생애주기관리(자산관리)시스템 구축사업	00시	계속					
		00군	신규					
	▪							
노후 상수 관로 정밀 조사 지원	< 소 계 >							
	▪노후상수관로 정밀조사 지원	00군	계속		2,000	잔여사업비 100%	1,500	편성 및 감액기준에 따라 000백만원으로 조정 필요
		00시	신규		500	설계비	0	수도정비기본계획 미반영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단위: 백만원)

구분	내역사업명	지자체	신규/계속	'20 예산	'21신청(안)		유역청 검토	
					신청액	신청내역	검토액	검토의견
	합 계							
지역자율계정	< 소 계 >							
	▪ 강변여과수개발	00군	계속		2,000	잔여사업비 100%	1,500	편성 및 감액 기준에 따라 000백만원으로 조정 필요
		00시	신규		500	설계비	0	수도정비기본계획 미반영
	▪ 고도정수처리시설	00시						
		00군						
	▪							
제주계정	< 소 계 >							
	▪ 강변여과수개발							
	▪ 고도정수처리시설							
	▪							
	▪							
세종계정	< 소 계 >							
	▪							
	▪							
	▪							
	▪							

* 별도 엑셀자료 제출

[서식 4]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신청자	성 명		전화번호		
	주 소				
사업명	세부사업명 (내부기준사업명)				
	세부단위사업명				
사업목적					
사업기간	착공(예정)일: 준공예정일:				
20 년도 사업비	구 분	계	기교부액	금회	잔액
	국 고				
	지 방 비				
	원인자부담금				
	기 타( )				
사업계획	붙임참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국고보조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 ○ ○ (관인)

환경부장관 귀하

[서식 4-1]

사 업 추 진 계 획 서

세부사업명 (내부기준사업명)		기관명
세부단위사업명		

1.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사업량(시설용량, 연장 등) : ㎥/일, ㎞ 등

○ 사업기간 :

○ 사업비 분담율 : 국고보조 %, 지방비 %, 기타 %

□ 연차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A)	기 투자실적	'19예산	향후 투자계획
계					
국고	소계				
	보조금				
	융자금				
지방비	소계				
	시·도비				
	시·군비				
원인자부담금					
기 타					

2. 사업추진현황

○ (일정별로 주요 사업추진 현황 알 수 있도록 작성)

○

○

○ 2020년 월 현재 사업진도 : 실시설계 %, 전체공정 %

3. 2020년도 사업추진 계획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비 구분	'20예산현액			주요 추진내역	추진일정 (연월)
	계	전년 이월액	'20예산		
합 계					

※ 사업비 구분은 타당성 조사비, 기본·실시설계비, 감리비 용지보상비, 시설공사비, 기타부대비, 융자금원리금상환 등으로 구분

4. 지방비 확보여부 : (확보 또는 미확보)

○

※ 확보시 예산명세서 사본 첨부, 미확보시 향후 확보방법 및 일정 등 기술

[서식 5]

사업수행 상황보고서

(2020. / 분기)

세부사업명 (내부기준사업명)		보고기관명
세부단위사업명		

※ 세부단위사업별로 작성, 내부기준사업이 없는 경우는 생략

1. 사업개요

○ 시설의 위치 :

○ 사업량(시설용량, 연장 등) (㎥/일, ㎞ 등)

○ 사업기간 :

○ 기타 : (사업별 성격에 따라 적절한 항목을 추가)

○ 연차별 투자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A)	기 투자실적(연도별)				향후 투자계획(연도별)			
			계(B)				계(C)			
계										
국고	소계									
	보조비									
	융자비									
지방비	소계									
	시·도비									
	시·군비									
원인자부담금										
기 타										

2. 사업추진현황

○ (일정별로 주요 사업추진 현황 알 수 있도록 작성)

○

< 전체 사업진도 및 실적 >

총 공 정(%)		총 투자비(백만원)		착공(예정)일	준공(예정)일
계 획	실 적	계 획	실 적		

< 분기말 예산집행상황 >

(단위: 백만원)

구분	2020년 ( )/4분기 집행현황						
	'20예산(A)	전년도 이월액(B)	예산현액(C=A+B)	지출원인 행 위 액	지출액(D)	잔액(C-D)	%(D/C)
합계							
○국고 - 보조금 - 융자금 - 기 타							
○지방비 - 시·도비 - 시·군비							
○원인자부담금							
○기타							

3. 문제점 및 조치계획 등

< 문제점 >

○ (정상추진여부, 집행부진사유, 민원발생사유, 사업추진상 장애요소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 조치계획 등 >

○ (문제점에 대한 조치계획, 향후 사업추진 일정 등을 기술)

○

[서식 5-1]

사업추진 실적보고서

세부사업명 (내부기준사업명)		보고기관명
세부단위사업명		

※ 세부단위사업별로 작성, 내부기준사업이 없는 경우는 생략

1. 사업개요

○ 시설의 위치 :

○ 사업량(시설용량, 연장 등) (㎥/일, ㎞ 등)

○ 사업기간 :

○ 기타 : (사업별 성격에 따라 적절한 항목을 추가)

2. 사업비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A)	교부액 (B)	집행액 (C)	집행잔액 (D=B-C)	이자 (E)	반납액 (F=D+E)	비고
계								
국고	소계							
	보조비							
	융자비							
지방비	소계							
	시·도비							
	시·군비							
원인자부담금								
기 타								

3. 집행잔액 사용 계획

○

<별도 첨부> 1. 연도·내역별 집행현황(총괄표, 국비 세부표기)
2. 이자산출근거
3. 집행확인에 필요한 첨부자료

[서식 6]

단위사업별 집행내역 보고서('20. 월말 기준)

기관명 :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시도	시군구	단위사업 장명	사업량	환경부			보조사업자							사업 진도 (공정률)
					'20예산	예산 현액	교부액 (A)	구분	전년 이월액 (B)	예산 현액 (A+B=C)	지출액			집행률 (D/C)	
											계 (D)	전년 이월액	'18예산		
								계							
								국고							
								지방비							
								계							
								국고							
								지방비							
								계							
								국고							
								지방비							
								계							
								국고							
								지방비							
								계							
								국고							
								지방비							

※ 단위사업장별로 작성, 융자사업 포함, 사업진도(공정율)는 "기본 및 실시설계중(20%)", "공사계약('19.1.20), "공사중(60%)" 등으로 표기, 사업량은 사업성격에 따라 시설용량(톤/일), 연장(㎞) 등을 기준으로 표기, 국고예산 기준으로 작성하되 보조사업자 지출액은 "전체사업비 지출액 × 국고보조율 = 실집행액(원인자부담금이 있을시는 비율 별도 산정)"으로 산정기입

※ 엑셀시트(EXCEL SHEET)로 작성하며, 작성서식은 별도 통보

[서식 7] ⇒ 특·광역시, 시·군 작성서식

총사업비 변경요구 신청서

특·광역시, 시·군 명

Ⅰ. 총사업비 변경요구 총괄표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별	개소수	총사업비		증 감		국고		증 감		비고
		현행 (A)	변경 (B)	B-A	%	현행 (a)	변경 (b)	b-a	%	
소관합계										

※ 개소수는 총사업비 변경뿐아니라 사업기간 변경요구 개소수를 포함, 비고란에는 변경사유별 개소수 표시(예 : 용량증가 3, 물가상승 2, 설계결과반영 1, 사업기간변경 2)

작성자 : 담당과 직명 성명 (인)
(TEL : FAX :)
확인자 : 담당과 직명 성명 (인)
(TEL : FAX :)

Ⅱ. 세부사업별 총사업비 변경요구 총괄표

세부사업명

※ 총사업비 변경요구 총괄표상의 사업순서대로 작성하되, 내부기준사업이 있는 사업은 내부기준사업별로 작성

[사업별 총괄표]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사업기간		총사업비		증 감		국고		증 감		변경사유
	현행	변경	현행 (A)	변경 (B)	B-A	%	현행 (a)	변경 (b)	b-a	%	
○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											
·(단위사업장명)	′yy.mm ~ ′yy.mm	′yy.mm ~ ′yy.mm									
·(단위사업장명)	′yy.mm ~ ′yy.mm	′yy.mm ~ ′yy.mm									
·											
·											
·											
·											

※ 변경요구사유는 ′용량증가, 물가상승, 설계결과 반영, 사업기간 변경 등으로 표시

Ⅲ. 단위사업장별 총사업비 변경요구 자료

※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은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른 별도서식 추가 작성

	자치단체명	실·국명	직책	성명	연락처
담당자			국(실)장		지역번호-국-번
			○○과장		지역번호-국-번
			사무관/주사		지역번호-국-번

단위사업장명

1. 사업추진 현황

□ 사업목적

○

□ 사업개요(변경전)

○ 위　　치 :

○ 시설용량 :

○ 사업기간 :

□ 사업기대효과

○

○

□ 사업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 추진경위

- yyyy. mm. dd :
- yyyy. mm. dd :
- yyyy. mm. dd :
- yyyy. mm. dd :
- yyyy. mm. dd :

□ 재원배분

(단위: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국가				지자체	민간	기타
		직접수행	보조금	융자	출연(출자)			
금액								
지원비율(%)								

□ 사업진행 상황

(단위: 백만원)

구 분	수행기간		시행주체	예산액	용역수행	용역결과 총사업비
	착수	완료				
◦ 타당성조사	yy.mm.dd	yy.mm.dd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공　　사						

□ 계약체결 현황

○ 공사비

(단위: 백만원)

구분(공정별)	예산상 공사비	최초계약			최종계약		계약변경회수	최종물가조정일
		계약일	예정가격	계약액	계약일	계약액		
◦ 기계약분								
-								
-								
◦ 미계약분								
-								
-								

○ 보상비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상 사업비 (A)	현 계약현황		잔 액 (A-B)	비 고
		일자	계약액(B)		
◦ 보상비		yy.mm.dd			

○ 시설부대경비(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상 사업비 (A)	현 계약현황		잔 액 (A-B)	비 고
		일자	계약액(B)		
◦ 설계비		yy.mm.dd			
◦ 감리비		yy.mm.dd			
◦ 시설부대비		yy.mm.dd			
합 계		yy.mm.dd			

2. 총사업비 변경요구

□ 사업기간 변경요구

현행 : 백만원		변경요구 : 백만원	
착수	완료	착수	완료
yyyy.mm	yyyy.mm	yyyy.mm	yyyy.mm

□ 변경요구 총괄표

(단위: 백만원)

구분		현행(A)	변경요구(B)	증감		변경내역
				B-A	%	
1. 공사비						
2. 보상비						
3. 시설부대경비						
총사업비 계						
재원분담	국고					
	지방비					
	원인자부담금					
	기타					

□ 변경요구 사유 및 미반영시 문제점

○ 변경요구 사유

※ 변경사유는 용량증가, 물가상승, 설계결과 반영, 사업기간 변경 등 구체적으로 기입

○ 미반영시 문제점

□ 총사업비 변경요구 내역별 사유

(단위: 백만원)

구 분	현행(A)	변경 요구(B)	증감		변경사유
			B-A	%	
합 계					
1.공사비					
◦ 물량변동					
◦ 물가변동[주1)]					“산출근거자료 별도붙임”
2.보상비					
◦ 직접보상비					
◦ 간접보상비					
◦ 물가변동[주1)]					“산출근거자료 별도붙임”
3.시설부대경비					
◦ 설계비					
◦ 감리비[주2)]					“산출근거자료 별도붙임”
◦ 시설부대비					
◦ 물가변동[주1)]					“산출근거자료 별도붙임”

※ 공사비는 물량변동, 설계변경, 물가변동 등으로 대별하고, 그 단위내용을 세분하여 작성
- 물량증감 및 공법변경내용은 공종별로 구체적으로 표기

※ 직접보상 : 토지, 어업권, 지장물 등 사업과 직접 관련된 보상비를 기입

※ 간접보상 : 토지취득 및 보상업무에 소요되는 부대경비를 기입

※ 공사비는 정수처리장의 경우 처리장과 상수도관망을 구분하여 내역작성

※ 변경사유는 시설확대, 추가 등 세부 변경요인별로 기재

※ 총사업비 변경요구는 해당 시·도지사와 변경내역에 대한 전반적인 타당성 및 적정성 여부 등을 반드시 협의한 후 변경요구

※ 증빙서류 첨부
- 도급(토목, 기계, 전기, 건축, 조경 등 내역을 구분 할 수 있도록 설계서 등 첨부), 관급, 설계용역, 감리계약서 사본 및 용지매입서 사본 등
- 용지(보상)비 변경은 공시지가 및 감정평가 서류 등

주1) 물가변동에 의한 변경금액 산출 근거자료를 별도 첨부

주2) 품목조정율에 의한 감리비 물가변경금액의 산출 근거자료를 별도 첨부

□ 재원분담

(단위: 백만원)

구 분		현행 (A)	변경 요구(B)	증 감		비 고
				(B-A)	%	
총사업비						
◦ 국 고	소계					
	보조					
	융자					
◦ 지방비	소계					
	시도					
	시군구					
◦ 원인자부담금						
◦ 기타						

□ 투자실적 및 향후 계획

(단위: 백만원)

구분		총사업비		'18까지		'19		'20예산 요구	'21년 이후
		현행	변경	예산	결산	예산	예산현액		
1.공사비									
◦ *세부구분*									
◦ *세부구분*									
2.보상비									
◦ 직접보상									
◦ 간접보상									
3.시설부대경비									
◦ 설계비									
◦ 감리비									
◦ 시설부대비									
총사업비 계									
국고	소계								
	보조								
	융자								
지방비	소계								
	시도비								
	시군구비								
원인자부담금									
기 타									

□ 총사업비 변경연혁(관리대장)

(단위: 백만원)

구분	사업단계	총사업비	물량변동			물가변동			
			내역	요구액	조정액	적용시기		요구액	조정액
						기준시점	비교시점		
최초 (yy.mm.dd)									
1차 조정 (yy.mm.dd)			소계						
			*설계변경						
			*설계변경						
2차 조정 (yy.mm.dd)			소계						
			*설계변경						
			*설계변경						
3차 조정 (yy.mm.dd)			소계						
			*설계변경						
			*설계변경						

※ 사업진행단계는 타당성조사, 기본설계, 실시설계, 공사중으로 구분하고 최초 및 각 단계의 조정액은 환경부가 승인한 금액 기입

□ 책임소재 및 제재조치 계획

※ 증액 사유별로 책임소재와 제재조치 실적 및 계획을 기술
(구체적 자료가 있는 경우는 별도 참고자료에 첨부)

□ 사업담당자 및 설계자 검토의견

	소속	직급	성명	전화번호
사업담당자 검토의견				
	소속	직급	성명	전화번호
설계자 검토의견				

[서식 8] ⇒ 시·도 작성서식

총사업비 조정요구 신청서

시·도 명

Ⅰ. 총사업비 조정요구 총괄표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별	개소수	총사업비		증 감		국고		증 감		비고
		현행 (A)	변경 (B)	B-A	%	현행 (a)	변경 (b)	b-a	%	
소관합계										

※ 변경요구는 시·군에서 요청한 금액을 기입

※ 개소수는 총사업비 변경뿐아니라 사업기간 변경요구 개소수를 포함, 비고란에는 변경사유별 개소수 표시(예 : 용량증가 3, 물가상승 2, 설계결과반영 1, 사업기간변경 2)

작성자 : 담당과 직명 성명 (인)
(TEL : FAX :)
확인자 : 담당과 직명 성명 (인)
(TEL : FAX :)

Ⅱ. 세부사업별 총사업비 조정요구 총괄표

세부사업명

※ 총사업비 변경요구 총괄표상의 사업순서대로 작성하되, 내부기준사업이 있는 사업은 내부기준사업별로 작성

[사업별 총괄표]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사업기간		총사업비		증 감		국고		증 감		변경사유
	현행	변경	현행 (A)	변경 (B)	B-A	%	현행 (a)	변경 (b)	b-a	%	
○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											
·(단위사업장명)	'yy.mm ~ 'yy.mm	'yy.mm ~ 'yy.mm									
·(단위사업장명)	'yy.mm ~ 'yy.mm	'yy.mm ~ 'yy.mm									
·											
·											
·											
·											

※ 조정요구사유는 '용량증가, 물가상승, 설계결과 반영, 사업기간 변경 등으로 표시

Ⅲ. 단위사업장별 총사업비 조정요구

단위사업장명

□ 총사업비 및 사업기간 조정요구

현 행 : 백만원		조 정 : 백만원	
착수	완료	착수	완료
yyyy.mm	yyyy.mm	yyyy.mm	yyyy.mm

□ 조정 총괄표

(단위: 백만원)

구분		현행(A)	변경요구	조정 요구(B)	증감		조정내역
					B-A	%	
1. 공사비							
2. 보상비							
3. 시설부대경비							
총사업비 계							
재원 분담	국고						
	지방비						
	원인자 부담금						
	기타						

□ 시·도지사 검토반영 내용

○ (※시·도에서 작성)

□ 총사업비 조정요구 내역별 사유

(단위 : 백만원)

구 분	현행 (A)	변경 요구	조정 (B)	증감		변경사유
				B-A	%	
합 계						
1.공사비						
◦ 물량변동						
◦ 물가변동						
2.보상비						
◦ 직접보상비						
◦ 간접보상비						
◦ 물가변동						
3.시설부대경비						
◦ 설계비						
◦ 감리비						
◦ 시설부대비						
◦ 물가변동						

□ 재원분담

(단위: 백만원)

구 분		현행 (A)	변경 요구	조정 (B)	증 감		비 고
					(B-A)	%	
총사업비							
◦ 국 고	소계						
	보조						
	융자						
◦ 지방비	소계						
	시도						
	시군구						
◦ 원인자부담금							
◦ 기타							

부 록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102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33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 155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 189

◇ 환경부 소관 보조금 사업 위임사무 ····· 226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보조금법)

[시행 2020. 3. 24] [법률 제17091호, 2020. 3. 24, 타법개정]

기획재정부(예산기준과) 044-215-7158

제1장 총칙 <개정 2011. 7. 25.>

제1조(목적) 이 법은 보조금 예산의 편성, 교부 신청, 교부 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보조금 예산의 편성 및 집행 등 보조금 예산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7. 25.]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국가재정법」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것과 그 밖에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 교부하는 것만 해당한다), 부담금(국제조약에 따른 부담금은 제외한다),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보조사업"이란 보조금의 교부 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3. "보조사업자"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 "간접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보조금을 재원(財源)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그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따라 다시 교부하는 급부금을 말한다.
5. "간접보조사업"이란 간접보조금의 교부 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6. "간접보조사업자"란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7. "중앙관서의 장"이란 「국가재정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을 말한다.
8. "보조금수령자"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로부터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1. 7. 25.]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① 보조금 예산의 편성·집행 등 그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법을 적용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에 대하여는 해당 규정 중 "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부장관"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교육감"으로 본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6. 1. 28., 2017. 7. 26.>

③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7. 1. 4.>

[전문개정 2011. 7. 25.]

제2장 보조금 예산의 편성 <개정 2011. 7. 25.>

제4조(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신청 등) ①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는 매년 중앙관서의 장에게 보조금의 예산 계상(計上)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때에는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가 시장·군수인 경우에는 그 시장·군수에 대한 보조금은 관할 도지사(광역시의 군인 경우에는 광역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종합하여 일괄신청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청에 필요한 신청서 서식, 첨부서류, 제출일 등 필요한 사항은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다. 이 경우 제출일은 해당 회계연도의 전년도 4월 30일 이전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1.>

[전문개정 2011. 7. 25.]

제5조(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보조사업에 대한 예외조치) 국가는 제4조에 따른 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보조사업의 경우에도 국가시책 수행

상 부득이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7. 25.]

제6조(중앙관서의 장의 보조금 예산 요구)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로부터 신청받은 보조금의 명세 및 금액을 조정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조금 예산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조에 따른 보조사업의 경우에는 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더라도 그 보조금 예산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사업 중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별 명세 없이 총액으로 보조금 예산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금 예산을 요구할 때 기획재정부장관이 관계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한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신청내용과 중앙관서의 장의 조정내용 및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7. 25.]

제7조(지방비 부담 경비의 협의 등) ① 중앙관서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보조금 예산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보조사업계획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협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의견서를 해당 회계연도의 전년도 5월 2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과 관계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 1.,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11. 7. 25.]

제8조(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자료 제출 등) ①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는 중앙관서의 장이 요구할 때에는 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설명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중앙관서의 장이 제출한 보조금의 예산요구액을 조정할 때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설명하도록 직접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7. 25.]

제9조(보조금의 대상 사업 및 기준보조율 등) ①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 사업, 경비의 종목, 국고 보조율 및 금액은 매년 예산으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1. 28.>

1. 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 사업의 범위
2. 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 및 예산 편성 시 보조사업별로 적용하는 기준이 되는 국고 보조율(이하 "기준보조율"이라 한다)

②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국고보조사업의 기준보조율을 변경하여 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경우에는 사전에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 28.>

[전문개정 2011. 7. 25.]

제10조(차등보조율의 적용)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매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사정을 고려하여 기준보조율에서 일정 비율을 더하거나 빼는 차등보조율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준보조율에서 일정 비율을 빼는 차등보조율은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보통교부세를 교부받지 아니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만 적용할 수 있다.

② 차등보조율의 적용기준은 그 적용대상이 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주도, 분야별 재정지출지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하며, 각 적용기준의 구체적인 산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의 차등보조율의 적용으로 인한 국고보조금의 추가적인 소요예산과 관련된 사항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7. 25.]

제11조(보조금 예산의 편성에 관한 의견 제시)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보조금 예산의 편성 과정에서 해당 관할구역의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또는 보조금 예산액의 조정 등에 관한 의견을 해당 중앙관서의 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16. 1. 28.>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제시한 의견 중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해당 중앙관

서의 장의 의견을 들어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6. 1. 28.>

[전문개정 2011. 7. 25.]

제12조(보조금 예산의 통지) ① 중앙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조금 예산안을 사업별로 해당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에게 해당 회계연도의 전년도 9월 15일까지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4.>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지한 보조금 예산안이 국회에서 심의·확정된 후에는 그 확정된 금액 및 내역을 사업별로 해당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에게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하여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 4.>

③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할 때 해당 보조금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인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1. 4., 2017. 7. 26.>

④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할 때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가 시장·군수인 경우에는 해당 시·군을 관할하는 도지사에게 일괄하여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17. 1. 4.>

[전문개정 2011. 7. 25.]

제13조(지방비 부담 의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액을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해당 연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7. 25.]

제14조(출연기관에 대한 별도의 보조금 교부 제한) 국가는 출연금을 예산에 계상한 기관에 대하여는 출연금 외에 별도의 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없다.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이 사업 수행상 특히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1. 7. 25.]

제15조(보조사업의 존속기간과 연장평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사업을 제외한 보조사업의 존속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보조사업에 대하여 실효성 및 재정지원의 필요성을 평가하여 3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보조사업의 존속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존속기간이 연장된 보조사업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평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보조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를 「국가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 1. 28.]

제3장 보조금의 교부 신청과 교부 결정 <개정 2011. 7. 25.>

제16조(보조금의 교부 신청) ① 보조금의 교부를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지정한 기일 내에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공모(公募)를 통하여 제1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예산에 반영된 사업 중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보조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모방식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1. 7. 25.]

제17조(보조금의 교부 결정) ① 중앙관서의 장은 제16조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지체 없이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법령 및 예산의 목적에의 적합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자금의 일부를 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6조제2항에 따라 공모방식으로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며, 그 밖의 세부사항은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1. 7. 25.]

제18조(보조금의 교부 조건)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법령과 예산에서 정하는 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 그 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가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7. 25.]

제19조(보조금 교부 결정의 통지)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교부 결정의 내용(그에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그 조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 없이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통지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경우 단위사업별·보조사업자별로 작성한 교부 결정 내용을 즉시 기획재정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11. 7. 25.]

제20조(보조금의 통합 운용)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할 때 보조사업의 명세를 세분함으로써 보조금의 규모가 영세하여질 경우에는 단위사업 내의 여러 개의 경비 명세를 합하여 교부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단위사업 내의 여러 개의 경비 명세를 합하여 교부 결정

을 하여야 하는 금액 등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목적이 유사한 보조사업의 예산을 통합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7. 25.]

제21조(사정 변경에 의한 교부 결정의 취소 등)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 경우 그 후에 발생한 사정의 변경으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 결정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중앙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한 후에 발생한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정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③ 중앙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 결정 내용을 변경하거나 교부 결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협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중요하지 아니한 사항인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함으로써 협의를 갈음할 수 있다.

1. 교부 결정의 취소 등을 하여야 할 사유
2. 교부 결정의 취소 등에 대한 해당 보조사업자의 의견
3. 교부 결정의 취소로 인한 미교부 보조금의 향후 사용계획

④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그 취소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게 된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 결정 내용을 변경하거나 교부 결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제19조제1항을 준용한다.

⑥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 결정 내용을 변경하거나 교부 결정을 일부 취소할 경우에 수정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에 대하여도 제20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 7. 25.]

제4장 보조사업의 수행 <개정 2011. 7. 25.>

제22조(용도 외 사용 금지) ①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간접보조사업자는 법령과 간접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31조제4항에 따라 보조금 초과액을 반납하지 아니하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유사한 목적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7. 25.]

제23조(보조사업의 내용 변경 등)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1. 7. 25.]

제24조(보조사업의 인계 등)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1. 7. 25.]

제25조(보조사업의 수행 상황 점검 등)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중앙관서의 장 또는 보조사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③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자료를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보관하여야 하는 자료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7. 25.]

제26조(보조사업의 수행명령)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보조사업자에게 보조사업 수행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제1항의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7. 25.]

제26조의2(보조금통합관리망의 구축 등) ①기획재정부장관 및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보조금의 중복 수급이나 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조금통합관리망(이하 "보조금통합관리망"이라 한다)을 구축하여야 하고, 보조사업 및 보조사업자의 선정, 보조사업의 집행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0., 2016. 1. 28., 2017. 1. 4.>

② 중앙관서의 장(제38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받은 소속 관서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26조의3 및 제26조의4에서 같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하여 관련된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집행 및 사후관리 등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통일·안보 등에 관련된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으로서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기획재정부장관이 관계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은 제외한다. <신설 2017. 1. 4.>

③ 보조금통합관리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이하 "보조금관리정보"라 한다)가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5. 7. 20., 2017. 1. 4.>

1. 보조사업자, 간접보조사업자 또는 보조금수령자(이하 "보조사업자등"이라 한다)의 선정 및 자격확인 등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수급자격의 적격 여부에 관한 사항
2.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출과 관련된 증빙자료 등 보조금 또는 간

접보조금 집행의 적절성 확인에 관한 사항

3.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급 이력 또는 개별 법령에 따른 급부금 중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과 통합적인 관리가 필요한 급부금의 수급 이력의 관리에 관한 사항

4. 「국가재정법」 제8조에 따른 보조사업에 대한 성과보고서

5. 「국가재정법」 제54조에 따른 국고보조금의 교부실적과 보조금 집행실적

6. 제15조에 따른 보조사업 운용 평가 결과

7. 그 밖에 보조사업의 효과적인 통합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1. 7. 25.]

[제목개정 2017. 1. 4.]

제26조의3(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 등) ①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사업자등의 선정 및 자격관리,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중복·부정 수급 방지 등 보조금의 효율적인 집행 및 관리를 위하여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하여 보조사업자등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받아 처리(「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2호의 처리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6조의5부터 제26조의9까지에서 같다)할 수 있다.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

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이하 "금융정보"라 한다)

3. 「부동산등기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등기기록

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이하 "신용정보"라 한다)

5. 「주민등록법」 제28조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세 관련 자료 또는 정보

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에 따른 과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나. 「국세징수법」 제6조에 따른 납세증명서

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관련 자료 또는 정보

라. 「소득세법」 제163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전자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마.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에 따른 근로장려금 관련 자료 또는 정보

바. 「지방세징수법」 제5조에 따른 납세증명서 또는 「지방세기본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과세정보

7.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기초연금 또는 장애인연금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8. 그 밖에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효율적 운영 및 보조금의 중복·부정 수급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②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의 효율적인 집행 및 관리에 필요한 범위에서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1항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는 제외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관련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집행 및 중복·부정 수급 여부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하여 제1항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보유하거나 이용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요청 및 보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7. 1. 4.]

제26조의4(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의 제공) ①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조사업자등의 선정 및 자격관리,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중복·부정 수

급 방지 등 보조금의 효율적인 집행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하여 금융기관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의 명의인의 정보제공에 대한 동의 서면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의 서면은 전자적 형태로 바꾸어 제출할 수 있다.

③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기관등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명의인의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를 제공한 금융기관등의 장은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의 제공 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명의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7항에도 불구하고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의 제공 요청 및 동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 1. 4.]

제26조의5(보조금관리정보 등의 파기) ① 보조금관리정보를 보유한 자는 그 정보를 보유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즉시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금의 중복·부정 수급 방지를 위하여 보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필요성이 인정되는 때까지 보유할 수 있다.

② 제26조의3제1항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수집한 자는 자격 검증 등 처리 목적을 달성한 즉시 수집한 자료 또는 정보를 폐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거나 증거자료 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7. 1. 4.]

제26조의6(보조금관리정보 등의 보호)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보조금관리정보의 처리를 방해할 목적으로 보조금관리정보를 위조·변경·훼손하거나 말소하는 행위
2. 업무상 알게 된 보조금관리정보를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누설하는 행위
3. 보조금통합관리망을 위조·변경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4. 정당한 권한 없이 보조금관리정보를 처리하거나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보조금관리정보를 처리하는 행위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보조금관리정보를 보조금의 효율적인 집행 및 관리 목적의 범위에서 사용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목적 외의 용도로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보조금관리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③ 제2항 각 호에 따라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관리정보를 이용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보조금관리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물리적 대책을 포함한 보호조치를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 1. 4.]

제26조의7(보조금통합관리망의 운영 등의 총괄 및 업무의 위탁)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보조금통합관리망의 구축, 운영 및 유지·보수 등 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총괄하고 보조금 또는 간접보

조금의 중복·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26조의3제1항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이를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처리할 수 있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요청하는 정보가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에 해당하는 경우 정보의 제공 요청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26조의4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획재정부장관"으로, "금융기관등의 장"은 "관계 기관의 장"으로 본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재정정보원법」에 따른 한국재정정보원(이하 이 조에서 "한국재정정보원"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1. 보조금통합관리망의 유지·개선 등 운영에 관한 업무
2. 보조금관리정보 및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
3.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신청, 접수, 결정, 교부 및 사후관리의 전자적 지원에 관한 업무
4. 제39조의3제1항에 따른 대국민 포털의 관리에 관한 업무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한국재정정보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보조금을 예탁(預託)하여 지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탁되는 보조금의 범위, 구체적인 예탁 방법, 예탁된 보조금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 1. 4.]

제26조의8(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보조금의 통합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관계 기관의 장에게 보조금통합관리망과 다음 각 호의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2. 「지방재정법」 제96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3.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4제1항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
4.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전자이용권 관리체계

5. 「영유아보육법」과 그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전산시스템
6.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7. 「아이돌봄 지원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전자시스템
8.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정보망
9. 「고용정책 기본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② 제1항 각 호의 시스템과 보조금통합관리망의 연계를 통하여 수집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는 보조금 집행내역 및 보조금 집행 적절성 확인을 위한 자료 또는 정보(「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다)에 한정한다. 다만,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 및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6조의9제1항에 따른 보조금통합관리망 운영기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수집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 1. 4.]

제26조의9(운영기관 협의회 설치 등) ① 보조금통합관리망의 운영과 제26조의8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스템과의 연계 및 정보보안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계 부처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보조금통합관리망 운영기관 협의회(이하 "운영기관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운영기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 보호정책
2. 시스템 접속기록 관리 등 개인정보 오남용 방지 체계
3. 악성프로그램 방지 등 시스템 보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사항

③ 그 밖에 운영기관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 1. 4.]

제26조의10(보조사업자 등의 정보공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보조금통합관리망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는

제27조의2에 따라 감사보고서 또는 감사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1.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신청서(첨부서류를 포함한다)
2.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입·지출 내역
3. 제27조제2항에 따른 정산보고서
4.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관련 감사 지적사항
5.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 대한 감사보고서 또는 감사 관련 보고서
6. 그 밖에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공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사실을 공시한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거나 보조금의 삭감 또는 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정보공시, 시정명령 및 보조금 삭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 1. 4.]

제27조(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실적을 적은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중앙관서의 장 또는 보조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에는 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정산보고서 및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으로부터 정산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증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 1. 28., 2017. 10. 31.>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정산보고서의 정산 및 검증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 1. 28.>

[전문개정 2011. 7. 25.]
[제목개정 2016. 1. 28.]

제27조의2(특정사업자에 대한 회계감사) ① 같은 회계연도 중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특정사업자"라 하며,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이 해당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작성한 감사보고서(이하 이 조에서 "감사보고서"라 한다)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한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2년 이상 계속하여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특정사업자로서 직전 회계연도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회계연도에 대한 감사보고서의 작성·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7. 10. 3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정사업자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감사보고서를 갈음하여 해당 법률에 따라 작성된 감사 관련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 관련 보고서에는 보조사업에 관한 감사의견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 10. 31.>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중앙관서의 장은 특정사업자가 교부받은 보조금을 다른 간접보조사업자에게 다시 교부하는 등 그 특성상 감사보고서를 작성·제출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해당 특정사업자에게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정사업자의 감사인 선정, 회계감사의 기준 및 감사보고서의 작성·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 1. 28.]

제28조(보조금의 금액 확정) ① 중앙관서의 장은 제27조에 따라 보조사업자로부터 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받으면 그 보조사업의 실적이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현지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심사 결과 보조사업의 실적이 제1항의 심사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의 금액을 확정하여 그 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7. 25.]

제29조(보조사업의 시정명령) 중앙관서의 장은 제27조에 따른 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받은 경우에 그 보조사업의 실적이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보조사업자에게 보조사업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7. 25.]

제5장 보조금의 반환 및 제재 <개정 2016. 1. 28.>

제30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② 중앙관서의 장은 간접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그 간접보조금에 관련된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제19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 7. 25.]

제31조(보조금의 반환)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그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의 금액을 제28조에 따라 확정한 경우에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한 이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반환 명령을 한 경우에 그 보조금 교부 결정의 취소가 제30조제2항에 따른 것일 때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보조사업의 원래 목적을 달성하고, 자체 노력으로 예산을 절감한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해당 보조사업의 목적과 유사한 사업(신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제외한다)에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반환하지 아니한 초과액의 사용명세서(과목별로 금액 및 구체적 이유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를 초과액을 사용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제4항 및 제6항을 위반하여 초과액을 사용하거나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중복되거나 과다하게 보조금 예산을 신청하여 교부받은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의 해당 세출예산

을 편성할 때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라 유사한 사업에 초과액을 사용하는 데에 필요한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7. 25.]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를 소관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이 복지사업 또는 정부 정책사업을 대행하는 것으로 다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로 대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사업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지 아니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유로 제30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1회 이상 받은 경우
2.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사유로 제30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3.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사유로 제30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수령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조금수령자를 소관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을 제한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유로 제33조에 따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을 1회 이상 받은 경우
2.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 제33조에 따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3.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아 제33조에 따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③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조사업자등에 대하여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급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기획재정부장관 및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다른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 보조사업자등을 소관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급을 제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조사업·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대상 배제 및 보조금·간접보조금 수급 제한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기준과 이와 관련된 정보의 통합·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 1. 28.]

제32조(다른 보조금 교부의 일시 정지 등)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반환 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보조사업자에게 동종(同種)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이 있을 때에는 그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보조금과 보조사업자가 반환하지 아니한 보조금 금액을 상계(相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7. 25.]

제33조(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환수) ① 중앙관서의 장,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수령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2.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②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해당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수령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수령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 동안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지급제한을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 1. 28.]

제33조의2(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징수) ①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자등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기 전 또는 부과한 후에 보조사업자등이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부정한 수급 등을 이유로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벌금·과료, 몰수·추징,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재부가금을 면제·삭감 또는 변경·취소할 수 있다.

1. 제31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
2. 제33조에 따라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보조금수령자에게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사유로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제33조에 따라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한 반환명령의 적정성을 조사·확인한 후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급여
2. 「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따른 장애수당
3.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복지 급여

5. 그 밖에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할 실익이 크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재부가금·가산금의 산정방법 및 부과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6. 1. 28.]

제33조의3(강제징수) ①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반환금,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거나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0. 3. 24.>

1.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제31조 또는 제35조에 따른 반환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중앙관서의 장
2. 보조금수령자가 제33조에 따른 반환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조사업자인 경우에 한정한다)
3. 보조사업자등이 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가산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중앙관서의 장

② 제1항에 따른 반환금,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한다.

[본조신설 2016. 1. 28.]

제6장 보칙 <개정 2011. 7. 25.>

제34조(별도 계정의 설정 등)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計定)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제1항에 따른 회계는 보조사

업 집행에 소요되는 국비 및 지방비의 내역과 각각의 집행실적을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7. 25.]

제35조(재산 처분의 제한)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재산(이하 "중요재산"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현재액과 증감을 명백히 하여야 하고, 그 현황을 중앙관서의 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28.>

② 중앙관서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로부터 보고받은 중요재산의 현황을 컴퓨터 통신 등을 이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③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해당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도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2. 양도, 교환, 대여
3. 담보의 제공

④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해당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제3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6. 1. 28.>

1. 중요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
2. 중요재산의 효용가치 증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3. 중요재산의 양도, 교환, 대여 또는 담보 제공을 통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

[전문개정 2011. 7. 25.]

제35조의2(중요재산의 부기등기)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등기를 할 때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표기내용으로 하는 부기등기(附記登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국유재산법」 등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취득·관리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부동산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아 취득하였거나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재산이라는 사항
2.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해당 부동산의 내용연수를 고려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였음에도 그 부동산을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부기등기는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토지·건물표시변경등기와 동시에 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로 부동산의 등기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7조에 따른 보조사업실적보고서 제출 전까지 부기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부기등기일 이후에 제35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요재산을 양도·교환·대여하거나 담보물로 제공한 경우에는 그 효력을 무효로 한다.

④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부기등기 사항을 말소할 수 있다.

1.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제18조제2항 또는 제31조에 따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전부를 국가에 반환하고,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이러한 사실을 확인받은 경우
2.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부동산의 내용연수를 고려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 기간이 지난 경우

[본조신설 2016. 1. 28.]

제36조(검사)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절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 또는 사

업장에서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재산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 또는 질문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자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1. 7. 25.]

제36조의2(명단 등의 공표) ①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명단과 위반행위 및 처분내용 등 처분과 관련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매년 3월 31일까지 해당 중앙관서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4.>

1. 제26조의10제1항에 따른 공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사실을 공시하여 시정명령, 보조금 삭감 등의 처분을 3회 이상 받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
2. 제3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
3. 제31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조금수령자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부정수급자 명단의 공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각 중앙관서에 보조금부정수급자명단 공표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앙관서의 장은 공표 대상자의 사망으로 공표의 실효성이 없거나 공표가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공표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공표를 실시하기 전에 공표 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의견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교부 결정의 취소,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반환명령 등에 대한 제37조에 따른 이의신청이나 그 밖의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불복절차가 끝난 후에 제1항에 따른 공표를 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명단 등의 공표 방법, 절차,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 1. 28.]

제37조(이의신청)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의 교부 결정, 교부 결정의 내용, 교부 결정의 취소, 보조금의 반환 명령 또는 삭감,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배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급 제한 및 제재부가금의 부과, 그 밖에 보조금의 교부에 관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그 중앙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6. 1. 28.>

② 간접보조사업자 또는 보조금수령자는 보조금의 반환 명령 또는 삭감,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배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급 제한 및 제재부가금의 부과에 관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그 중앙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6. 1. 28.>

③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관계자의 의견을 들은 후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이의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부 결정의 내용에 관한 이의신청자가 그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보조금의 교부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 1. 28.>

[전문개정 2011. 7. 25.]

제38조(사무의 위임)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 등에 관한 중앙관서의 장의 사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7. 25.]

제39조(회계 관계에 관한 규정) 보조금의 회계에 관하여는 「국가재정법」 제11조 및 제99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 7. 25.]

제39조의2(신고포상금의 지급) ①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관계 행정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

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1. 28.>

1. 제3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조사업자
2. 제3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보조사업자
3.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조금수령자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 7. 25.]

제39조의3(대국민 이용 지원)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보조금 또는 보조사업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 국민에게 관련된 자료 또는 정보의 검색, 조회 등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 기반의 대국민 포털을 구축·관리하고 그 활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 및 중앙관서의 장은 정보취약계층이 보조금통합관리망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용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대국민 포털의 구축·관리 및 제2항에 따른 보조금통합관리망의 사용 지원 대책 마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7. 1. 4.]

제39조의4(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6조의7제4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한국재정정보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7. 1. 4.]

제7장 벌칙 <개정 2011. 7. 25.>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 자

2. 제26조의6제1항제1호를 위반한 자

[전문개정 2017. 1. 4.]

제4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 28., 2017. 1. 4.>

1. 제22조를 위반하여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2. 제26조의6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위반한 자
3. 제35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전문개정 2011. 7. 25.]

제42조(벌칙) ① 제23조 또는 제24조를 위반하여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을 인계·중단 또는 폐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제26조제2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3. 제27조 또는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한 자

[전문개정 2016. 1. 28.]

제4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 1. 30.]

부칙 <제17091호, 2020. 3. 24.>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㊱까지 생략

㊲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㊳부터 <10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보조금법 시행령)

[시행 2020. 1. 29] [대통령령 제30360호, 2020. 1. 29, 일부개정]

기획재정부(재정정보공개 및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구축추진단
기획법령팀) 02-6312-8312
기획재정부(예산기준과) 044-215-7158

제1조(목적) 이 영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10. 26.]

제2조(급부금의 지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부담금 외의 급부금은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3조에 따른 소득보조금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10. 26.]

제3조(신청이 없는 보조금의 예산 계상) 법 제5조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 계상(計上)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국가가 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가 소요경비 전액을 교부하는 보조사업인 경우
2. 재해 발생 등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보조금의 교부가 불가피한 경우
3.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국가의 주요시책 수행상 보조금의 교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인 경우

[전문개정 2011. 10. 26.]

제4조(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①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조금이 지급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의 범위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기준보조율(이하 "기준보조율"이라 한다)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별표 2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6. 4. 28.>

② 기준보조율은 해당 회계연도의 국고보조금, 지방비 부담액, 국가의 재정융자금으로 조달된 금액, 수익자가 부담하는 금액과 그 밖에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에서 국고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율로 한다.

[전문개정 2011. 10. 26.]

제5조(차등보조율의 적용기준 등) ① 법 제10조에 따라 기준보조율에 일정 비율을 더하는 차등보조율(이하 "인상보조율"이라 한다)은 기준보조율에 20퍼센트, 15퍼센트, 10퍼센트를 각각 더하여 적용하고, 기준보조율에서 일정 비율을 빼는 차등보조율은 기준보조율에서 20퍼센트, 15퍼센트, 10퍼센트를 각각 빼고 적용하며, 그 적용기준과 각 적용기준의 구체적인 계산식은 별표 3과 같다.

② 인상보조율은 재정사정이 특히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인상보조율의 적용을 요구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에 대하여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10. 26.]

제6조(보조사업의 존속기간 설정 제외대상 사업) 법 제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4. 11. 28., 2016. 4. 28.>

1. 「국가재정법」 제7조제2항제4호의2에 따른 의무지출 사업
2.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또는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재정투자사업 심사 결과 사업타당성이 인정되어 진행 중인 계속사업
3.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0조에 따라 포괄보조금으로 편성한 사업
4. 그 밖에 존속기간의 설정 취지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업으로서 보조사업의 존속기간을 3년 이내로 한정할 필요가 없다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11. 10. 26.]
[제목개정 2016. 4. 28.]

제6조의2(보조사업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보조사업평가위원을 선정하여 보조사업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 4. 28.>

1. 보조금의 운용 및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조교수 이상의 대학교수
2. 정부출연기관에 소속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보조금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3.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및 금융업무 전문가
4. 그 밖에 보조금 사업 운용실태의 조사 및 평가 업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평가단은 평가대상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중앙관서의 장에게 그 보조사업의 평가와 관련된 자료 및 정보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중앙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1. 10. 26.]

제6조의3(보조금관리위원회) ① 보조금 예산의 편성·집행·관리 등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 5. 8.>

1. 보조사업과 관련된 주요정책의 결정과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2. 보조사업 및 보조사업자 선정 등의 타당성 확인에 관한 사항
3. 보조금의 중복 또는 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의 수립·운영과 보조사업의 정비에 관한 사항
4. 법 제26조의2에 따른 보조금통합관리망(이하 "보조금통합관리망"이라 한다)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보조사업을 관리하는 중앙관서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 추천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
2. 보조사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12명 이내의 민간위원

④ 제3항제2호에 따른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신설 2016. 4. 28.>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6. 4. 28.>

[본조신설 2015. 7. 24.]

제7조(보조금 교부신청서) ① 법 제16조에 따른 보조금 교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적어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와 교부받으려는 보조금의 금액
4. 자기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
5. 보조사업의 착수 예정일과 완료 예정일
6. 그 밖에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보조금 교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의 기재사항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신청자가 경영하는 주된 사업의 개요
2.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3. 보조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4. 교부받으려는 보조금 금액의 산출기초
5.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사용방법
6.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중 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부담하는 금액 및 부담하는 방법
7. 보조사업의 효과
8. 보조사업을 수행함에 따라 발생할 수입금액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1. 10. 26.]

제7조의2 삭제 <2017. 5. 8.>

제8조(보조금의 통합기준 등)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단위사업 내의 여러 개의 경비 명세를 합하여 교부 결정을 하여야 하는 금액의 기준은 개별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는 금액이 연간 500만원 미만인 경우로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사업목적이 유사한 보조사업의 예산을 통합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각 보조사업 간 집행금액의 변경 가능성, 보조사업 예산을 통합 집행하는 경우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조사업 간 집행금액의 변경 가능 범위, 구체적인 집행 방법 및 절차 등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1. 10. 26.]

제9조(사정 변경에 의한 교부 결정의 취소) 법 제2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보조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토지 또는 주요시설 등을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사용하거나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중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비는 제외한다)를 그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1. 10. 26.]

제10조(교부 결정의 취소에 따라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비로 한정한다.

1. 보조사업에 관련된 기계·기구 또는 임시건물의 철거와 그 밖의 남은 업무 처리에 필요한 경비
2. 보조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체결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 지급하여야 할 배상금

[전문개정 2011. 10. 26.]

제10조의2(보조사업 관련 자료의 보관) ①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자료의 보관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② 법 제2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보관하여야 하는 자료는 「감사원법」 제25조에 따른 계산서, 증거서류 및 계산서 또는 증거서류의 내용을 설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 한다.

[본조신설 2011. 10. 26.]

제10조의3(보조사업 수행의 일시 정지)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키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한을 정하여 보조사업자에게 해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과 조건에 적합한 조치를 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조치를 하지 아니하면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해당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한다는 뜻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전문개정 2011. 10. 26.]
[제11조에서 이동 <2017. 5. 8.>]

제10조의4(보조금관리정보) 법 제26조의2제3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보조금을 교부, 집행 및 정산하는 사업의 단위에 관한 사항
2. 보조사업의 유사·중복 여부의 검증 및 대국민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의 단위별 보조사업의 정보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7. 5. 8.]

제10조의5(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 ① 법 제26조의3제1항제6호가목 및 같은 항 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각각 별표 4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8. 3. 13.>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26조의3제2항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계 기관의 장에게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한 경우 해당 자료 또는 정보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보조금통합관리망과 같은 항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 관련 시스템을 연계할 수 있다. <신설 2018. 3. 13.>

[본조신설 2017. 5. 8.]

제10조의6(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의 제공 요청 등) ①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6조의4제1항에 따라 금융기관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1.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보조사업자, 간접보조사업자 또는 보조금수령자(이하 "보조사업자등"이라 한다)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대표자의 성명 및 법인등록번호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제공을 요청하는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의 범위, 조회 기준일 및 조회 기간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금융기관등의 장은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보조사업자등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2.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금융기관등의 명칭
3. 제공 대상 금융상품명과 계좌번호
4.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의 내용

③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해당 금

융기관등이 가입한 협회, 연합회 또는 중앙회 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법 제26조의4제1항에 따른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 5. 8.]

제10조의7(5년 초과 보유대상 자료 또는 정보) 법 제26조의5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 보조금 중복·부정 수급 여부 확인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2. 법 제30조에 따른 보조금 교부 결정의 취소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3. 법 제31조의2에 따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대상 배제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 제한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4. 법 제33조에 따른 보조금의 환수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5. 법 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6. 법 제35조에 따른 중요재산의 처분 제한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7. 법 제36조의2에 따른 보조금 부정수급자 명단 공표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본조신설 2017. 5. 8.]

제10조의8(보조금의 예탁 및 지급) ① 법 제26조의7제5항 전단에서 "한국재정정보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한국재정정보원법」에 따른 한국재정정보원(이하 "한국재정정보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26조의7제5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앙관서의 장 또는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게 각각 교부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기관(이하 "예탁기관"이라 한다)이 지정한 계좌에 예탁(預託)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예탁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른다.

1.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조금을 교부하는 경우

2. 보조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간접보조금을 교부하는 경우

③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제2항 본문에 따라 예탁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행과 관련된 증빙자료를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하여 예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63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전자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2. 보조금의 집행을 목적으로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자로부터 발급받는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보조금 전용카드의 거래승인내역
3. 그 밖에 보조금의 집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④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예탁기관은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자료를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하여 확인한 경우에는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요청한 보조사업자등에게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⑤ 예탁기관은 제2항에 따라 예탁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집행잔액, 이자수입 및 보조사업의 수익금을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를 대신하여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반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 5. 8.]

제11조(보조금통합관리망 운영기관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26조의9제1항에 따른 보조금통합관리망 운영기관 협의회(이하 "운영기관 협의회"라 한다)는 의장과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 3. 13.>

1. 보조금통합관리망의 운영·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기획재정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2. 보조금통합관리망을 이용하거나 법 제26조의3제2항에 따라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국가재정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독립기관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중앙관서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국장급 공무원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3. 법 제26조의3제2항에 따라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하거나 법 제26조의

8제1항 각 호의 시스템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장
4. 한국재정정보원 원장
5. 보조금 또는 정보시스템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10명 내외의 사람
② 운영기관 협의회의 의장은 보조금통합관리망의 운영·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기획재정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제1항제5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위원을 지명한 자는 해당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제5호에 따른 위원이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⑥ 운영기관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26조의2제3항의 보조금관리정보 및 법 제26조의3제1항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보호에 관한 사항
2. 법 제26조의8제1항 각 호의 시스템과 보조금통합관리망의 연계에 관한 사항
3. 법 제26조의9제2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수립한 운영계획
4. 보조금통합관리망의 유지·개선 등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5. 그 밖에 운영기관 협의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⑦ 운영기관 협의회의 회의는 의장, 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위원과 의장이 회의 때마다 지정하는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⑧ 운영기관 협의회의 회의는 제7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

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운영기관 협의회에서 심의·의결할 안건을 미리 검토하고, 운영기관 협의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기관 협의회에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⑩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기관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7. 5. 8.]
[종전 제11조는 제10조의3으로 이동 <2017. 5. 8.>]

제11조의2(보조사업자 등의 정보공시 대상 및 방법 등) ① 법 제26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이란 같은 회계연도 중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총액이 1천만원 이상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말한다. 다만,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시대상 규모를 달리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7. 5. 8.>
② 제1항에 따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는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법 제26조의10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6조의10제1항제5호에 따른 감사보고서 또는 감사 관련 보고서는 그 제출일부터 1개월 이내에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5. 8.>
③ 법 제26조의10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 5. 8.>
1. 법 제27조제2항 후단에 해당하는 경우 그에 따른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결과
2.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재무제표 또는 결산서
3. 그 밖에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④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26조의10제2항에 따라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시정명령의 내용 및 기간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5. 8.>

⑤ 중앙관서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법 제26조의10제2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한 해당 회계연도에 교부하기로 한 보조금의 100분의 50 이내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다. <개정 2017. 5. 8.>

[본조신설 2016. 4. 28.]

제12조(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실적 보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지방자치단체의 장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경우에는 3개월)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는 경우로서 해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과 다음 회계연도 이후의 보조사업 수행계획이 다를 경우에는 그 계획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10. 26.]

제12조의2(정산보고서의 검증) ① 법 제27조제2항 전단에 따른 정산보고서에는 해당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결정에 따른 사용내역 및 반환액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② 법 제27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해당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 3억원을 말한다. 다만, 해당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에 해당하는 경우 등으로서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말한다.

③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이하 "감사인"이라 한다)은 법 제27조제2항 후단에 따라 정산보고서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해당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당초 교부 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하였는지를 확인하여 검증 관련 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30.>

④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제출하는 정산보고서 및 감사인이

작성하는 검증 관련 보고서의 형식, 작성방법, 검증항목 및 제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6. 4. 28.]

제12조의3(특정사업자의 감사인 선정 등) ① 법 제27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특정사업자는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정사업자는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중앙관서의 장에게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선임된 감사인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30.>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사인 선정 절차 및 감사보고서의 구체적인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6. 4. 28.]

제13조(보조금의 반환 등) ① 법 제3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한 이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자를 말한다.

1. 지급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집행된 보조금 금액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보조사업이 지연된 기간에 발생한 이자
3. 보조금 교부 후 법령 개정 등으로 인하여 그 집행방법 등을 개선하여야 하는 경우 그 개선기간 중에 발생한 이자
4. 지방자치단체의 교부 신청과 무관하게 중앙관서의 장이 주기적으로 교부하는 보조금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
5.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보조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불가피한 것으로 인정하는 사유로 발생한 이자

②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보조금 반환 기한을 연장받으려는 보조사업자는 중앙관서의 장에게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보조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연장 신청을 할 때에는 신청 내용을 적은 서류에 해당 보조사업에 관련된 간접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치한 사항, 그 보조금을 반환하기 곤란한 이유와 그 밖에 필요한 참고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10. 26.]

제13조의2(보조금 초과액의 사용요건 등) ① 법 제31조제4항 전단에서 "자체 노력으로 예산을 절감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새로운 기술 또는 공법을 적용하여 사업비를 절감한 경우
2. 원래 예정된 공정 및 집행방법을 개선하여 사업비를 절감한 경우
3. 일상 업무 추진방법을 개선하여 경상적 성격의 경비를 절감한 경우
4. 보조금을 절약 집행하여 집행 잔액이 소액인 경우 등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제4항 전단에 따른 자체 노력으로 예산을 절감한 경우로 보지 아니한다.

1. 환율, 금리, 공공요금의 변경 등 외부요인에 의하여 자연적으로 지출이 감소된 경우
2. 원래 사업계획의 취소, 변경에 따라 지출이 감소된 경우
3. 예측한 수요와 실제 수요의 차이로 인하여 지출이 감소된 경우
4. 예측하지 못한 상황변경 등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③ 법 제31조제4항 전단에서 "해당 보조사업의 목적과 유사한 사업"이란 같은 중앙관서의 장이 교부한 보조사업 중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같은 부문에 속하는 사업을 말한다.

④ 법 제31조제4항 전단에서 "신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신규사업
2. 별표 2에 따른 보조금 지급 제외사업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반환하지 아니하고 사용하는 초과액(이하 이 조에서 "초과액"이라 한다)의 사용대상, 사용금액(사업추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경상적 성격의 경비는 제외한다), 사용시기

등이 포함된 사용계획을 세워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초과액은 원칙적으로 초과액이 발생한 해당 연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연도에 사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사용계획에 구체적인 사용시기를 명시하여야 한다.

⑦ 법 제31조제4항 후단에 따른 초과액의 사용명세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초과액의 발생사유 및 산출근거
2. 초과액을 사용한 보조사업의 목적, 사업명세 및 집행액
3. 그 밖에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1. 10. 26.]

제13조의3(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의 방법 및 절차) ①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31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조사업자등을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 또는 지급 제한을 결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즉시 보조금통합관리망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7. 5. 8.>

1. 보조사업자등의 성명·상호,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관계 법령상의 면허 또는 등록번호(보조사업자등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와 법인명·법인등록번호를 말한다)
2.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을 배제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 또는 지급을 제한하는 구체적인 사유
3. 그 밖에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배제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 또는 지급 제한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등을 소관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 또는 지급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이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 또는 지급이 제한된 보조사업자등이 상호·대표자 변경 등의 방법으로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할 때 보조사업자등의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관계 법령상의 면허 또는 등록번호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배제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 또는 지급 제한의 통보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6. 4. 28.]

제14조(보조금 반환명령 사실 통보)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수령자에게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서면으로 그 사실을 해당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반환명령을 받은 보조금수령자의 성명·상호, 나이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나이·주소 및 법인의 명칭·주소를 말한다)
2. 반환명령의 구체적 사유
3. 반환명령을 받은 보조금수령자가 반환하여야 하는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금액
4. 그 밖에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반환의 집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6. 4. 28.]

제14조의2(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징수의 기준 등) ① 법 제3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제재부가금(이하 "제재부가금"이라 한다)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7. 5. 8.>

② 법 제3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벌금·과료, 몰수·추징,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보조사업자등이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부정한 수급 등을 이유로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벌금·과료, 몰수·추징, 과징금 또는 과태료(이하 이 조에서 "과태료등"이라 한다)를 부과받는 경우를 말한다.

③ 중앙관서의 장은 과태료등과 제재부가금의 합계액이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의 5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법 제33조의2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재부가금의 부과·징수에 드는 비용이 부과·징수하려는 제재부가금보다 큰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⑤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자등에 대하여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제재부가금의 금액 등을 밝혀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보조사업자등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제재부가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전시 또는 사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제재부가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제재부가금을 낸 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제재부가금을 받은 사실을 지체 없이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 법 제33조의2제4항에 따른 가산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납부하는 경우: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주일 이내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납부하는 경우: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제1호 본문에 따른 가산금에 더한 금액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징수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6. 4. 28.]

제15조(처분을 제한하는 재산 등) ① 법 제3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이하 이 조에서 "중요재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2. 선박, 부표(浮標), 부잔교(浮棧橋) 및 부선거(浮船渠)와 그 종물
3. 항공기
4. 그 밖에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②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두고 중요재산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해당 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해당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중앙관서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중요재산의 현황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항상 공시하여야 한다.

④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게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반환할 금액과 그 산출내역을 명확하게 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신설 2016. 4. 28.>

⑤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35조제4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산정할 때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보고한 중요재산의 현재액이 시장상황 등을 고려한 현재가치에 비하여 현저히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으로 하여금 해당 중요재산의 현재가치를 평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요재산의 현재가치 평가에 소요된 비용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6. 4. 28.>

[전문개정 2011. 10. 26.]

제16조(재산 처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 법 제3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조사업자가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조건에 따라 보조금의 전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가에 반환한 경우

2. 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해당 재산의 내용연수(耐用年數)를 고려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기간이 지난 경우
3.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인 경우. 다만, 제2호에 따른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재산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한 경우

[전문개정 2011. 10. 26.]

제17조(사무의 위임)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 중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무를 소속 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 신청의 접수
2.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결정
3. 법 제21조제1항 및 제30조제1항·제2항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4.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의 접수
5. 법 제28조에 따른 보조사업의 실적 심사 및 보조금의 금액 확정
6. 법 제31조에 따른 보조금의 반환에 관한 처분
7. 법 제36조에 따른 보고의 접수 및 검사 또는 질문

[전문개정 2011. 10. 26.]

제17조의2(명단 등의 공표방법) ① 법 제3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표 대상 보조사업자등의 성명·상호, 나이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나이·주소 및 법인의 명칭·주소를 말한다)
2. 공표 대상 보조사업자등의 위반행위 내용
3. 보조사업자등의 위반행위에 따른 보조금 반환 및 제재부가금 부과내역
4. 그 밖에 법 제36조의2제2항에 따른 보조금부정수급자명단 공표심의위원회(이하 "공표심의위원회"라 한다)에서 공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중앙관서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년간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사업자등의 위반행위가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그

게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라 공표를 하려는 경우 공표심의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공표대상자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법 제36조의2제3항에서 "공표대상자의 사망으로 공표의 실효성이 없거나 공표가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표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2. 공표 대상자가 「민법」 제27조에 따라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3. 그 밖에 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단을 공표할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6. 4. 28.]

제17조의3(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공표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해당 중앙관서의 장의 차관(차관이 없는 중앙관서는 해당 중앙관서의 부기관장을 말한다)이 된다.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 등을 고려하여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해당 중앙관서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3명 이내
2. 보조사업에 대한 전문적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로서 5명 이내

④ 제3항제2호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⑤ 공표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공표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에 관하여는 제6조의3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해당 중앙관서의 장"으로 본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공표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6. 4. 28.]

제18조(신고포상금의 지급) ①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고발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인한 후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고인 또는 고발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신고인 또는 고발인에 대한 통보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후에 해야 한다. <개정 2016. 4. 28., 2020. 1. 29.>

②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 전단에 따라 통보를 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인 또는 고발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해야 하며, 그 지급기준은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30퍼센트로 한다. 다만, 신고인 또는 고발인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본문에 따른 포상금(이하 이 항에서 "당초 신고포상금"이라 한다)과 달리 포상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표에 따른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1. 29.>

구분	지급기준
1. 당초 신고포상금보다 감액하여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20퍼센트 이상 또는 30퍼센트 미만 지급
2. 당초 신고포상금(500만원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을 초과하여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중앙관서의 장은 최소한 지급할 필요가 있는 포상금의 금액(이하 "최소지급액"이라 한다)을 정하고, 당초 신고포상금이 최소지급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해당 최소지급액 지급. 이 경우 최소지급액은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

③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고발이 있은 후에 동일한 내용의 신고 또는 고발을 한 사람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 또는 고발을 한 경우에는 지정된 대표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지급 기준과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1. 10. 26.]

제1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중앙관서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 5. 8.>

1. 보조금통합관리망의 구축·운영·관리 및 이를 이용한 보조금관리에 관한 사무
2. 법 제31조에 따른 보조금의 반환에 관한 사무
3. 법 제31조의2에 따른 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관한 사무
4. 법 제33조에 따른 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환수에 관한 사무
5. 법 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
6. 법 제33조의3에 따른 강제징수에 관한 사무
7. 법 제35조에 따른 재산 처분의 제한에 관한 사무
8. 법 제36조의2에 따른 명단 등의 공표에 관한 사무
9. 법 제39조의2에 따른 신고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6. 4. 28.]

부칙 <제30360호, 2020. 1.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고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제18조제1항 전단에 따라 포상금 지급 결정을 하고 이를 통보한 경우에는 제1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약칭: 국가균형발전법)

[시행 2020. 4. 5] [법률 제16906호, 2020. 2. 4,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지역경제총괄과) 044-203-4419
기획재정부(지역예산과) 044-215-7551

제1장 총칙 <개정 2009. 4. 22.>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을 통하여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과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 7., 2018. 3. 20.>

[전문개정 2009. 4. 22.]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5. 19., 2014. 1. 7., 2015. 7. 24., 2017. 3. 21., 2018. 3. 20.>

1. "국가균형발전"이란 지역 간 발전의 기회균등을 촉진하고 지역의 자립적 발전역량을 증진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여 전국이 개성있게 골고루 잘 사는 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말한다.

1의2. "지역혁신"이란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개발과 과학기술·산업생산·기업지원·문화·금융 등의 분야에서 지역별 여건과 특성에 따라 지역의 발전역량을 창출·활용·확산시키는 것을 말한다.

2. "기초생활권"이란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일자리 및 교육·문화·복지·주거·안전·환경 등의 생활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시(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광역시의 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인근 시·군·구와 협의하여 설정한 권역을 말한다.

3. "광역협력권"이란 지역의 경제발전과 성장잠재력 확충에 필요한 산업 및 교통 등의 협력사업 추진을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및 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가 상호 협의하여 설정한 권역을 말한다.

4. "지역특화산업"이란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활용하여 추진하는 시·도의 산업으로서 제11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산업을 말한다.
5. "광역협력권산업"이란 국가균형발전 및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도가 높은 광역협력권의 산업으로서 제11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산업을 말한다.
6. "성장촉진지역"이란 생활환경이 열악하고 개발수준이 현저하게 저조하여 해당 지역의 경제적·사회적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도로, 상수도 등의 지역사회기반시설의 구축 등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소득, 인구, 재정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7. "특수상황지역"이란 남북의 분단 상황 또는 지리적·사회적으로 불리한 환경에 놓이게 되어 일정기간 동안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의한 행정지원 등 특수한 지원 조치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
   나. 「도서개발 촉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개발대상도서. 다만, 성장촉진지역에 해당하는 도서는 제외한다.
   다. 그 밖에 가목과 나목에 따른 지역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8. "농산어촌"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어촌과 「산림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산촌을 말한다.
8의2.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이란 지역의 주된 산업이 위기에 처하여 지역경제여건이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어 일정기간 동안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제17조에 따라 지정되는 지역을 말한다.
9. "공공기관"이란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10. "국가혁신융복합단지"란 물적·인적 인프라가 갖추어진 기존의 구역·지구·단지·특구를 활용하여 새로운 경제적·산업적 상승효과의 발생을 촉진하고,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성장거점으로서 제18조의2에 따라 지정·고시되는 지역을 말한다.
11. "수도권"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 4. 22.]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지역주도의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7., 2018. 3. 20.>

[전문개정 2009. 4. 22.]

제2장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등 <개정 2018. 3. 20.>

제4조(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의 수립) ①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5조제1항에 따른 부문별 발전계획안과 제7조제1항에 따른 시·도 발전계획을 기초로 하여 5년을 단위로 하는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이하 "국가균형발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개정 2014. 1. 7., 2018. 3. 20.>

② 국가균형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 1. 7., 2018. 3. 20.>

1. 국가균형발전의 목표에 관한 사항
2. 지역혁신체계의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주민 생활기반 확충과 지역 발전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4. 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지역의 교육여건 개선과 인재 양성에 관한 사항
6. 지역의 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사항
7. 국가균형발전 거점 육성과 교통·물류망 확충에 관한 사항
8. 지역의 문화·관광 육성 및 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
9. 지역의 복지 및 보건의료 확충에 관한 사항
10. 지역금융 활성화에 관한 사항
11. 성장촉진지역, 특수상황지역, 농산어촌 등의 개발촉진에 관한 사항 및 농산어촌과 도시 간 격차 완화에 관한 사항
12. 공공기관 등의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에 관한 사항

13. 국가혁신융복합단지의 지정·육성에 관한 사항
14. 지역발전투자협약의 체결 등에 관한 사항
15. 투자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16. 그 밖에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국가균형발전계획은 「국가재정법」 제7조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 「국토기본법」 제6조에 따른 국토계획과 연계되어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④ 국가균형발전계획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립된 국가균형발전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8. 3. 20.>

⑤ 국가균형발전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3. 20.>

[전문개정 2009. 4. 22.]
[제목개정 2018. 3. 20.]

제5조(부문별 발전계획안 및 시행계획의 수립)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 5년을 단위로 하는 부문별 발전계획안을 수립한다. <개정 2014. 1. 7.>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부문별 발전계획안을 수립할 때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시·도 발전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7.>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균형발전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부문별 국가균형발전시행계획(이하 "부문별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문별 발전계획안, 전년도의 부문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해당 연도의 부문별 시행계획을 제22조에 따른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국가균형발전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⑤ 부문별 발전계획안 및 부문별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4. 22.]

제5조의2 삭제 <2014. 1. 7.>

제6조 삭제 <2014. 1. 7.>

제7조(시·도 발전계획의 수립) ①시·도지사는 해당 시·도의 특성 있는 발전과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을 단위로 하는 시·도 발전계획(이하 "시·도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개정 2014. 1. 7.>

② 시·도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4. 1. 7., 2017. 10. 31., 2018. 3. 20.>

1. 시·도별 발전목표에 관한 사항
1의2. 직전 시·도 계획의 추진 실적 및 성과 등 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
2. 시·도별 현황과 여건분석에 관한 사항
3. 지역혁신체계의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국가혁신융복합단지의 지정·육성, 지역교육여건 개선 및 인재 양성, 과학기술 진흥, 국가균형발전 거점 육성과 교통·물류망 확충에 관한 사항
4. 문화·관광 육성 및 환경 보전, 복지·보건의료의 확충에 관한 사항
5. 시·도내 지역 간 불균형 해소에 관한 사항
6. 시·도 간 연계·협력 발전에 관한 사항
7. 지역금융 활성화에 관한 사항
8. 지역발전투자협약의 체결에 관한 사항
9. 투자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시·도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도지사는 시·도 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시·도 발전 시행계획(이하 "시·도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 7.>

④ 시·도지사는 전년도 시·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해당 연도 시·도 시행계획을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 7., 2018. 3. 20.>

⑤ 시·도 계획과 시·도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 1. 7.>

[전문개정 2009. 4. 22.]

제7조의2 삭제 <2018. 3. 20.>

제8조(시행계획의 협의·조정)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부문별 시행계획 또는 다른 시·도의 시·도 시행계획의 시행이 그 중앙행정기관 또는 시·도의 시행계획의 시행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 협의·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관련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14. 1. 7., 2018. 3. 20.>

[전문개정 2009. 4. 22.]

제9조(시행계획의 평가 등) ①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매년 부문별 시행계획, 시·도 시행계획 및 제18조의2에 따른 국가혁신융복합단지의 추진 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7., 2018. 3. 20.>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균형발전사업평가자문단을 둘 수 있으며, 평가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평가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 3. 20.>

④ 제3항에 따른 국가균형발전사업평가자문단의 설치와 전문평가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3. 20.>

⑤ 삭제 <2014. 1. 7.>

[전문개정 2009. 4. 22.]
[제목개정 2018. 3. 20.]

제3장 국가균형발전시책의 추진 <개정 2018. 3. 20.>

제9조의2(지역혁신체계의 구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적합한 지역혁신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지역혁신체계의 유형 개발에 관한 사항
2. 산·학·연 협력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지역혁신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4. 기술 및 기업경영에 대한 지원기관의 확충에 관한 사항

5. 대학·기업·연구소·비영리단체·지방자치단체 등의 교류·협력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지역혁신 관련 사업의 조정 및 연계운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지역혁신체계의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8. 3. 20.]

제10조(주민 생활기반 확충과 지역 발전역량 강화)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한 주민 생활기반 확충과 지역 발전역량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7., 2018. 3. 20.>

1. 주민 생활기반 확충과 지역공동체 및 지역 간 연계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시·도 및 광역협력권의 경쟁력 향상에 관한 사항
3. 수도권발전에 따른 영향분석을 고려한 지방과 수도권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시책을 추진할 때 지역산업 육성, 인재양성, 과학기술 진흥, 교통·물류시설 확충, 문화·관광 육성, 환경 보전, 복지·보건의료의 확충 등 관련 부문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여 체계적으로 연계하고, 관련 부문에 대한 재정 지원 및 규제완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7.>

[전문개정 2009. 4. 22.]
[제목개정 2014. 1. 7.]

제11조(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① 시·도지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할 구역의 시·군·구의 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산업을 해당 시·도의 지역특화산업과 해당 광역협력권의 광역협력권산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1. 7., 2018. 3. 20.>

1. 국가의 성장잠재력과 경제성장에 기여도가 높은 산업
2. 지역일자리 창출 및 경쟁력 강화에 중심적 역할을 하는 산업
3. 지역의 발전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산업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특화산업과 광역협력권산업을 육성하기 위

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7., 2018. 3. 20.>

1. 지역특화산업과 광역협력권산업의 구조 고도화 및 투자유치의 촉진에 관한 사항
2. 지역특화산업과 광역협력권산업의 집적(集積)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지역특화산업과 광역협력권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확충에 관한 사항
4. 지역특화산업과 광역협력권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산업입지기반시설 등의 확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특화산업과 광역협력권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7., 2018. 3. 20.>

1. 지역특성에 맞는 중소기업의 창업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2. 지역의 정보화 촉진 및 정보통신 진흥에 관한 사항
3.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국내외 기업투자 유치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특성에 따른 산업의 지원과 관련 기관 간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기업의 육성 및 지역투자 활성화 등 지역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지역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을 위한 시책의 추진 및 추진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4. 22.]
[제목개정 2014. 1. 7.]

제11조의2(상생형지역일자리의 선정·지원 등) ① 국가는 지역의 투자를 촉진하고 지역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업, 근로자, 주민 등 다양한 경제주체 간 근로여건, 투자계획, 복리후생 또는 생산성 향상 등에 대한 합의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하 "상생형지역일자리"라 한다)을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행정구역에서 상생형지역일자리의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상생형지역일자리의 선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상생형지역일자리의 선정 및 선정취소를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산업통

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상생형지역일자리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상생형지역일자리를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관할 행정구역의 지역경제 및 일자리에 대한 파급효과
2. 참여 경제주체 간 합의내용 및 역할분담의 합리성
3. 해당 상생형지역일자리의 지속가능성
4.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선정된 상생형지역일자리에 대하여 소관 업무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⑥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을 말한다)은 제4항에 따라 선정된 상생형지역일자리에 대한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상생형지역일자리에 참여하는 기관·법인·단체에 출자하거나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출자·출연을 받은 기관·법인·단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상생형지역일자리에 참여하는 기관·법인·단체에 대하여 수의계약으로 국유·공유재산을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유재산의 사용료 및 대부료 산정기준은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제33조(같은 법 제47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공유재산의 사용료 및 대부료 산정기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제1항·제23조·제32조·제33조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행정구역에서 상생형지역일자리가 선정된 경우 지원사업의 추진실적·지원효과 및 차년도 지원계획 등을 매년 산업통

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상생형지역일자리에 대한 지원 필요성과 효과를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생형지역일자리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항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⑩ 위원회는 위원 구성 및 심의·의결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⑪ 위원회의 위원 명단과 회의록은 공개하여야 한다.

⑫ 그 밖에 상생형지역일자리의 신청·선정·취소 절차와 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제11항에 따른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2. 4.]

제12조(지역 교육여건 개선과 인재 양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교육여건 개선과 국가균형발전에 필요한 우수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7., 2018. 3. 20.>

1. 지방대학(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있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과 산업체 간 산학협동을 통한 고용촉진에 관한 사항
2.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있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력을 인정받는 학교의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에 대한 지방대학 입학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방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에 대한 지방대학의 대학원 입학 우대 및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의 고용우대를 포함한 채용장려에 관한 사항
4. 지방대학 우수졸업인력의 지역정착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5. 지방대학 특성화 및 지방대학의 대학원 교육·연구 역량 강화와 산학연 협력 강화에 관한 사항
6. 지역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 교육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7. 지방대학 역량 강화와 교육 개선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지역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 인적자원개발에 필요한 사항

② 삭제 <2018. 3. 20.>

[전문개정 2009. 4. 22.]
[제목개정 2014. 1. 7., 2018. 3. 20.]

제13조(지역과학기술의 진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균형발전에 필요한 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지역의 과학기술연구·교육기관의 육성에 관한 사항
2.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연구개발의 촉진에 관한 사항
3. 지역의 연구개발인력의 확충 등 과학기술역량의 향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의 과학기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8. 3. 20.]

제14조(국가균형발전 거점 육성과 교통·물류망 확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 간 협력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국가균형발전 거점 육성과 교통·물류망 확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6., 2018. 3. 20.>

1.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정중심복합도시"라 한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이하 "혁신도시"라 한다),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기업도시(이하 "기업도시"라 한다) 등 발전 거점 도시의 육성과 배후 산업과 지역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이하 "경제자유구역"이라 한다)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국가균형발전 거점 간 연계 강화를 위한 도로 및 철도 등 지역 교통·물류망의 확충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09. 4. 22.]
[제목개정 2018. 3. 20.]

제15조(지역문화·관광의 육성 및 환경 보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문화·관광 육성 및 환경 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7., 2018. 3. 20.>

1. 지역의 문화 및 관광자원의 개발·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2. 지역의 문화 및 관광과 관련된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3. 지역의 문화 및 관광산업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에 관한 사항
5. 지역고유의 정신문화 및 지역가치 발굴·선양에 관한 사항
6. 지역 생태복원, 자연환경의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지역의 문화·관광 육성 및 환경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09. 4. 22.]
[제목개정 2014. 1. 7.]

제15조의2(지역의 복지 및 보건의료의 확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복지 및 보건의료의 확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지역 특성을 반영한 복지전달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2. 보건의료 취약지역에 대한 공공의료 전달체계 및 응급의료체계 구축과 그 품질 향상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 건강증진·건강관리서비스 및 사회서비스 확대에 관한 사항
4. 지역사회 내 의료인력의 육성에 관한 사항
5. 지역보건의료기관의 확충 및 정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역의 복지 및 보건의료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4. 1. 7.]

제16조(성장촉진지역 등의 개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장촉진지역, 특수상황지역, 농산어촌 등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특성에 맞는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1. 교통망 등 지역사회기반시설의 확충에 관한 사항
2. 주민의 소득창출기반의 확충에 관한 사항
3. 특성 있는 향토자원의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도시환경의 개선과 교육·의료·복지의 증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성장촉진지역, 특수상황지역, 농산어촌 등의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09. 4. 22.]

제17조(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① 시·도지사는 관할 행정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받으려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지정 대상 행정구역 및 지원 내용을 기재하여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문기관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결과에 따라 지정 여부, 지원 내용 및 지정 기간을 결정하여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결정한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한 지정 신청, 지정 절차 및 지정 기간, 지원의 종류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 3. 21.]

제17조의2(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한 지원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7조제2항에 따라 결정된 사항을 소관별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지원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한 내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 8.>

③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의 효과 및 실적 등에 관한 보고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 8.>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내역을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19. 1. 8.>

[본조신설 2017. 3. 21.]

제17조의3(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해제)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

17조제2항에 따른 지원기간 중이더라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경제상황이 호전되어 지원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지정 해제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 3. 21.]

제17조의4(국고보조금의 인상지원) 국가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국가의 보조금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차등보조율과 다른 법률에 따른 보조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율에 따라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1. 8.]

제18조(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 ① 정부는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이전대상공공기관"이라 한다)을 단계적으로 지방으로 이전(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의 이전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기 위한 공공기관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이하 "혁신도시시책"이라 한다)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정부는 혁신도시시책을 추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1. 지방자치단체의 유치계획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이전대상공공기관별 지방이전계획에 관한 사항
3. 혁신도시 활성화 및 인근 지역과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이전대상공공기관의 장은 혁신도시시책에 따라 공공기관별 지방이전계획의 수립 등 공공기관의 이전에 필요한 조치 및 혁신도시 활성화에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하는 공공기관 및 그 종사자에 대하여 재정적·행정적 지원 및 생활환경의 개선

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4. 22.]
[제목개정 2018. 3. 20.]

제18조의2(국가혁신융복합단지의 지정) ① 시·도지사는 관할 행정구역의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경제자유구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지구·단지·특구의 일부를 국가혁신융복합단지로 지정받으려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국가혁신융복합단지를 지정한다. 이 경우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기업의 유치·집적 가능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지정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지정 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지정을 해제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지정 신청, 지정, 지정 해제·변경의 절차·방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 3. 20.]

제18조의3(국가혁신융복합단지의 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혁신융복합단지에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국내외 기업의 투자촉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2. 대학·연구소·기업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
3.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제 개선 및 제도적 여건 조성에 관한 사항
4. 공공기관을 활용한 지역의 산업 생태계 조성 및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국가균형발전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시책 중 국가혁신융복합단지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시책을 소관으로 하는 중앙행정

기관의 장에게 해당 시책에 대한 추진계획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③ 국가혁신융복합단지에 입주한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승인·허가 신청 사무에 대한 지원을 제28조제2항에 따른 시·도 지역혁신지원단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 지역혁신지원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방식에 따라 해당 사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
2.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허가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④ 국가혁신융복합단지에 입주한 사업자로부터 제3항 각 호의 승인·허가 신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 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승인·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국가혁신융복합단지에 입주한 사업자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3. 20.]

제19조(기업 및 대학의 지방이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도권 중 시·군·구별로 인구과밀·산업입지·산업집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있는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재정적·행정적 사항 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도권(성장촉진지역과 특수상황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대학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재정적·행정적 사항 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및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4. 22.]

제20조(지역발전투자협약의 체결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이나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내용 및 투자 분담 등이 포함된 지역발전투자협약(이하 "지역발전투자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으며, 지역발전투자협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제22조에 따른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발전투자협약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30조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우선 지원하여야 하며, 매년 필요한 예산의 편성 등 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③ 지역발전투자협약의 사업범위 및 체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3. 20.>

[전문개정 2009. 4. 22.]

제21조(국가균형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 ① 정부는 전년도 국가균형발전 주요 시책의 추진현황과 성과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 1. 7., 2016. 12. 2., 2018. 3. 20.>

1. 국가균형발전계획의 수립과 관리
2. 국가균형발전에 관하여 추진된 시책과 앞으로 추진할 시책
3. 지역혁신체계의 구축 및 활성화
4. 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5. 지역 교육여건 개선과 인재 양성
6. 지역과학기술의 진흥
7. 국가균형발전 거점 육성과 교통·물류망 확충
8. 지역 문화·관광의 육성 및 환경 보전
9. 지역의 복지 및 보건의료 확충
10. 지역금융 활성화
11. 성장촉진지역, 특수상황지역, 농산어촌 등의 개발
12. 공공기관 등의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

13. 국가혁신융복합단지의 지정·육성
14. 지역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행하는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국가균형발전사업 운영
15. 그 밖에 국가균형발전에 관한 중요 사항

[전문개정 2009. 4. 22.]
[제목개정 2018. 3. 20.]

제21조의2(지역통계 기반 구축 및 개발·관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균형발전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지역통계 기반 구축 및 개발·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지역통계 작성·관리시스템 구축 및 균형발전에 관한 지표개발
2. 지역통계 작성을 위한 국내외 동향분석
3. 지역통계 조사를 위한 실태조사 사업
4. 지역통계 활용, 정책소통 등을 위한 정보화시스템 구축
5. 지역통계 분석의 질적 제고를 위한 인력양성 및 인적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지역통계 작성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및 국가균형발전에 관련된 기관·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역통계는 「통계법」을 준용하여 작성하되, 조사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 3. 20.]

제21조의3(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국제적 교류협력 촉진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국제적 교류협력을 촉진하고 관련 정책의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 간 경제적 교류협력 활동 지원
2. 국가균형발전정책 관련 공동연구 및 학술행사 개최
3. 국가균형발전정책 관련 정보 및 자료의 공유
4. 국가균형발전정책 및 우수사례의 전수
5. 국가균형발전정책 유관기관 간 업무 협약 및 인적 교류

[본조신설 2018. 3. 20.]

제4장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 <개정 2018. 3. 20.>

제22조(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설치) ① 국가균형발전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관련 중요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8. 3. 20.>

②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4. 1. 7., 2018. 3. 20.>

1. 국가균형발전의 기본방향과 관련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2. 국가균형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3. 부문별 발전계획안 및 부문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4. 시·도 계획, 시·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5. 국가균형발전시책 및 사업의 조사·분석·평가·조정에 관한 사항
6. 지역발전투자협약의 체결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한 사항
8. 공공기관 등의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에 관한 사항
9. 국가혁신융복합단지의 지정·육성에 관한 사항
10. 지방과 수도권의 상생 발전에 관한 사항
11.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지표의 개발·관리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국가균형발전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제시하고, 추진상황을 점검할 수 있다. <신설 2014. 1. 7., 2018. 3. 20.>

[전문개정 2009. 4. 22.]
[제목개정 2018. 3. 20.]

제23조(조직) ①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4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 1. 7., 2017. 7. 26., 2018. 3. 20.>

② 당연직위원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

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지방자치법」 제165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협의체의 대표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 7., 2014. 11. 19., 2017. 7. 26., 2018. 3. 20.>

③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8. 3. 20.>

1. 「지방자치법」 제165조에 따른 협의체의 대표자가 추천한 자
2. 국가균형발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한다.

⑤ 위촉위원은 20명 이내로 하며, 위촉위원의 과반수는 위촉일 현재 1년 이상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주소를 둔 자이어야 한다.

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제26조에 따른 국가균형발전기획단의 단장이 된다. <개정 2018. 3. 20.>

⑧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3. 20.>

[전문개정 2009. 4. 22.]

제24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①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 3. 20.>

② 시·도지사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중요 정책에 관한 의견을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제시된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전문개정 2009. 4. 22.]
[제목개정 2018. 3. 20.]

제25조(임직원의 파견요청 등) ①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 및 관계기관·법인·단체 등에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 3. 20.>

②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개정 2012. 12. 11., 2018. 3. 20.>

[전문개정 2009. 4. 22.]

제26조(국가균형발전기획단) ①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소속으로 국가균형발전기획단을 둔다. <개정 2018. 3. 20.>

② 국가균형발전기획단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3. 20.>

[전문개정 2009. 4. 22.]
[제목개정 2018. 3. 20.]

제27조(국가균형발전지원단 등) ① 국가균형발전기획단의 업무를 지원하고, 시·도지사가 시·도 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국가균형발전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국가균형발전지원단이 설치되지 아니한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에 국가균형발전지원팀을 둘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 7., 2018. 3. 20.>

② 지원단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과의 협의를 거쳐 제21조에 따른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③ 지원단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4. 22.]
[제목개정 2018. 3. 20.]

제28조(시·도 지역혁신협의회 등) ①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시·도 지역혁신협의회(이하 "시·도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시·도협의회는 심의결과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시·도 계획 및 시·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관할 시·도 지역 산업·기업의 육성 등에 대한 중장기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3. 관할 시·도가 추진하는 국가균형발전시책의 시행에 관한 사항
4. 관할 시·도에서 제11조에 따라 추진하는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시책

운영체계에 대한 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관할 국가혁신융복합단지의 지정과 육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도협의회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시·도지사는 관할 시·도의 국가균형발전시책 및 제1항 각 호에 따른 시·도협의회의 심의를 지원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시·도 지역혁신지원단을 둔다.

③ 제1항 및 제2항 이외에 시·도협의회와 시·도 지역혁신지원단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 3. 20.]

제29조(시·군·구 지역혁신협의회)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시·군·구가 추진하는 국가균형발전시책의 시행 및 지역혁신 등과 관련된 중요 사항의 협의·조정 등을 위하여 시·군·구 지역혁신협의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4. 1. 7., 2018. 3. 20.>

② 제1항에 따른 시·군·구 지역혁신협의회의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 7., 2018. 3. 20.>

[전문개정 2009. 4. 22.]
[제목개정 2018. 3. 20.]

제5장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개정 2018. 3. 20.>

제30조(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설치) 국가균형발전계획과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전문개정 2018. 3. 20.]

제31조(회계의 관리·운용) ① 회계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관리·운용한다.

② 회계의 예산은 중앙행정기관의 조직별로 구분할 수 있다.

③ 세출예산의 배정·자금운영·결산, 그 밖에 회계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 3. 20.>

[전문개정 2009. 4. 22.]

제32조(계정의 구분) 회계는 지역자율계정, 지역지원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및 세종특별자치시계정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4. 1. 7., 2014. 1. 28., 2018. 3. 20.>

[전문개정 2009. 4. 22.]

제33조(소속 재산) ① 다음 각 호의 토지는 회계의 지역지원계정 소속의 재산으로 한다. <개정 2014. 1. 7., 2018. 3. 20.>

1.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부담금으로 물납(物納)받은 토지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2조 및 제123조에 따라 국가가 매수한 토지

3.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회계의 재산으로 귀속되는 토지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회계의 재산을 관리·운용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회계의 재산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사용대차(使用貸借)를 포함한다]하거나 교환·양여·매각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4. 22.]

제34조(지역자율계정의 세입과 세출) ① 회계의 지역자율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 7., 2014. 1. 28., 2014. 3. 11., 2018. 3. 20.>

1. 「주세법」에 따른 주세의 100분의 40

2.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6조에 따라 회계에 귀속되는 과밀부담금

3.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회계에 귀속되는 개발부담금

4.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제4조제2항제4호, 제4조의2제2항제3호 및 제5조제2항제5호에 따라 회계로 전입되는 전입금

5.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豫受金)

6.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7. 회계의 지역지원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및 세종특별자치시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8. 제2항제7호에 따른 융자금의 원리금

9. 제36조에 따른 전입금

10. 제37조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

11. 제45조에 따른 전년도 결산상 잉여금
12.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회계로 귀속되는 수입금

② 회계의 지역자율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7. 23., 2011. 5. 19., 2012. 5. 23., 2014. 1. 7., 2014. 1. 28., 2014. 6. 3., 2018. 3. 20.>

1. 지방자치단체의 다음 각 목의 사업에 대한 보조
   가. 성장촉진지역, 특수상황지역, 농산어촌 및 도시활력증진지역 등의 개발사업으로서 다음 각각의 사항을 통합하여 실시하는 기초생활권 생활기반의 확충과 관련한 사업
      (1) 「도서개발 촉진법」에 따른 도서 개발에 관한 사항
      (2) 「지방소도읍육성 지원법」에 따른 지방소도읍 육성에 관한 사항
      (3)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접경지역 개발에 관한 사항
      (4)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생활환경 정비, 전원마을 조성,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에 관한 사항
      (5)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농어촌 개발에 관한 사항
      (6) 「어촌·어항법」에 따른 어촌 개발에 관한 사항
      (7)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도시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9) 「산림기본법」과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촌 개발에 관한 사항
      (10) 「수도법」에 따른 지방상수도 개발에 관한 사항
      (11)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에 따른 어촌특화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나. 지역사회기반시설의 확충 및 개선 관련 사업
   다. 지역의 문화·예술·체육 및 관광자원의 개발 및 확충 관련 사업
   라. 지역의 물류·유통기반 확충 등 산업기반 조성 등에 관한 사업
   마. 지역의 특성 있는 향토자원의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사업
   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사업

2.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조사·연구사업에 필요한 경비
3.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4. 제37조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5. 계정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
6. 회계의 지역지원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및 세종특별자치시계정으로의 전출금
7. 그 밖에 국가균형발전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의 자금의 융자 등 필요한 경비의 지원

③ 제2항제7호에 따른 융자의 대상·조건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4. 22.]
[제목개정 2018. 3. 20.]

제35조(지역지원계정의 세입과 세출) ① 회계의 지역지원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 7., 2014. 1. 28., 2018. 3. 20.>

1. 「주세법」에 따른 주세의 100분의 60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회계에 귀속되는 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
3.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6제1항에 따라 회계에 귀속되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4. 「자동차교통관리 개선 특별회계법」 제4조제1항제8호의2에 따라 회계로 전입되는 전입금
5.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6.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7. 회계의 지역자율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및 세종특별자치시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8. 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6호에 따른 융자금의 원리금
9. 제37조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
10. 제45조에 따른 전년도 결산상 잉여금
11. 제33조제1항에 따른 회계의 소속 재산의 임대료 및 매각대금

12.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회계로 귀속되는 수입금

② 회계의 지역지원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 7., 2014. 1. 28., 2018. 3. 20.>

1. 광역협력권 활성화 및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통·물류망 확충 관련 사업에 대한 출연(出捐)·보조 또는 융자
2. 지역특화산업 및 광역협력권산업의 육성과 투자 및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련된 사업에 대한 출연·보조 또는 융자
3. 지방대학의 경쟁력 향상 및 지역인적자원의 개발 관련 사업에 대한 출연·보조 또는 융자
4. 지역의 과학기술 진흥 및 특성화 관련 사업에 대한 출연·보조 또는 융자
5. 공공기관·기업 및 대학 등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지방이전에 관한 사업에 대한 융자 등 필요한 경비의 지원
6. 지역의 문화·관광자원 육성, 지역고유정신문화 및 지역가치 발굴·선양, 환경 보전 사업 등에 대한 출연·보조 또는 융자
7. 지역의 주요 성장거점에 대한 출연·보조 또는 융자
8. 관련 법령에 따라 지방으로 이관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이관사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
9.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경비
10. 광역협력권 활성화와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사·연구사업에 필요한 경비
11.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12. 제33조제1항에 따른 소속 재산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
13. 제37조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14. 계정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
15. 회계의 지역자율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및 세종특별자치시계정으로의 전출금
16. 그 밖에 국가균형발전에 관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등 필요한 경비의 지원

③ 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6호에 따른 융자의 대상·조건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국가는 제2항제8호와 관련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지방으로 이관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이관사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4. 22.]
[제목개정 2018. 3. 20.]

제35조의2(제주특별자치도계정의 세입과 세출) ① 회계의 제주특별자치도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 7., 2014. 1. 28., 2018. 3. 20.>

1.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회계의 지역자율계정, 지역지원계정 및 세종특별자치시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3. 제37조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
4. 제45조에 따른 전년도 결산상 잉여금
5.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회계로 귀속되는 수입금

② 회계의 제주특별자치도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 7., 2014. 1. 28., 2018. 3. 20.>

1.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출연·보조 또는 융자 등
   가. 제34조제2항제1호(바목은 제외한다) 및 제7호에 따른 보조 및 지원
   나. 제35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9호, 제10호 및 제16호에 따른 출연·보조·융자 및 지원 등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사업
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이관되는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와 자치경찰로 이체(移替)되는 경찰인력에 대한 인건비 상당액 및 그 운영비 일부
3. 제37조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4. 회계의 지역자율계정, 지역지원계정 및 세종특별자치시계정으로의 전출금

5. 그 밖에 계정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경비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융자의 대상·조건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4. 22.]

제35조의3(세종특별자치시계정의 세입과 세출) ① 회계의 세종특별자치시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3. 20.>

1.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회계의 지역자율계정, 지역지원계정 및 제주특별자치도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3. 제37조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
4. 제45조에 따른 전년도 결산상 잉여금
5.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회계로 귀속되는 수입금

② 회계의 세종특별자치시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3. 20.>

1.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출연·보조 또는 융자 등
   가. 제34조제2항제1호(바목은 제외한다) 및 제7호에 따른 보조 및 지원
   나. 제35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9호, 제10호 및 제16호에 따른 출연·보조·융자 및 지원 등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사업
2. 제37조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3. 회계의 지역자율계정, 지역지원계정 및 제주특별자치도계정으로의 전출금
4. 그 밖에 계정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경비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융자의 대상·조건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 1. 28.]

제36조(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 ① 정부는 매 회계연도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따른 교통·에너지·환경세의 10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반회계로부터 이 회계에 전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은 지역자율계정의 세입으로 한다. <개정 2014. 1. 7., 2018. 3. 20.>

③ 정부는 회계의 수입으로 회계에 속하는 경비의 전부를 마련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부족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4. 22.]

제36조(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 회계의 수입으로써 회계에 속하는 경비의 전부를 마련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부족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 30.]

[시행일 : 2022.1.1.] 제36조

제37조(일시차입금) ① 회계는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회계의 부담으로 일시차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4. 22.]

제38조(예산편성절차상의 특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재정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예산안편성지침을 작성할 때에는 회계 예산의 특수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4조제2항·제35조제2항 및 제35조의2제2항에 따른 사업에 대한 다음 연도의 예산신청서를 작성하여 매년 4월 30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1., 2018. 3. 20.>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신청서 및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의견을 기초로 작성한 다음 연도의 예산요구서를 매년 5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1., 2018. 3. 20.>

④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국가균형발전시책의 투자방향에 관한 의견과 제9조에 따른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회계의 예산편성에 관한 의견을 매년

5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4. 1. 1., 2014. 1. 7., 2018. 3. 20.>

⑤ 기획재정부장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의견을 감안하여 예산을 편성 및 조정·배분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⑥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회계의 운용을 심의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분야의 전문가, 이해관계인 등 국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전문개정 2009. 4. 22.]

제39조(세출예산의 차등 지원) ① 정부는 회계의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 및 제9조에 따른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원규모·보조비율 등에 차등을 둘 수 있다.

② 정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예산편성 시 우선 반영하고, 사업별로 지원규모·보조비율 등에 차등을 둘 수 있다.

1.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효과가 미치는 사업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
2. 제34조제2항의 사업 중 둘 이상의 시설을 복합화하여 건설하는 사업
3. 제34조제2항의 사업 중 성장촉진지역에 대한 지원 사업
4. 그 밖에 지역의 경쟁력과 투자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기업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의 성과를 평가하여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4. 22.]

제40조(포괄보조금의 지원) ① 정부는 제34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율계정의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시·도 및 시·군·구별로 세출예산의 용도를 포괄적으로 정한 보조금(이하 "포괄보조금"이라 한다)으로 편성하여 지원한다. <개정 2014. 1. 7., 2018. 3. 20.>

② 제1항에 따라 정부가 포괄보조금으로 편성한 사업에 대하여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이 예산을 교부할 때에는 해당 사업 내에 수개의 세부내역을 구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 4. 22.]

제41조(예산의 중복신청 등의 금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제38조제2항에 따라 예산을 요구하거나 신청한 사업 또는 그와 유사한 사업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중복하여 예산을 요구하거나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가시책을 수행하기 위한 부득이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 4. 22.]

제42조(예산의 전용)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재정법」 제46조에도 불구하고 예산집행상 필요한 경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의 소관 부처별 세출예산의 총액 범위에서 각 과목 상호간에 전용(轉用)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전용한 경우에는 과목별 금액 및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명세서를 기획재정부장관과 감사원에 보내야 한다.

[전문개정 2009. 4. 22.]

제43조(예산의 이월) ① 회계는 세출예산 중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국가재정법」 제4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의 소관 부처별 또는 지방자치단체별 세출예산의 총액 범위에서 다음 연도에 이월(移越)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그 회계연도부터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세출예산을 이월하는 때에는 해당 연도 12월 31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이월 사용하고, 이월명세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연도 1월 15일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내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과 감사원에 보내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세입징수 상황,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 집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미리 제1항에 따른 세출예산의 이월 사용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4. 22.]

제44조(보조금에 대한 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① 제34조제2항·제35조제2항 및 제35조의2제2항의 사업에 대한 보조금에 대하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1조·제26조 및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 제31조, 제31조의2, 제32조 및 제33조의3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사용한 때,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또는 제43조에 따라 다음 연도로 이월한 세출예산을 다음 다음 회계연도까지 지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1조, 제31조의2, 제32조 및 제33조의3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1. 7. 25., 2016. 1. 28.>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0조에 따른 포괄보조금으로 편성된 사업이 끝난 후 남은 집행잔액을 포괄보조금으로 편성된 사업에 사용하고, 과목별 금액 및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명세서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4. 1. 7.>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0조에 따른 포괄보조금 외의 보조금으로 편성된 사업이 끝난 후 남은 집행잔액을 해당 보조사업의 목적과 유사한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과목별 금액 및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명세서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신설 2014. 1. 7.>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35조제2항에 따른 지역지원계정의 세출예산, 제35조의2제2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계정의 세출예산 및 제35조의3제2항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계정의 세출예산 상호간의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이 끝난 후 집행잔액을 사용할 수 없다. <신설 2014. 1. 7., 2014. 1. 28., 2018. 3. 20.>

[전문개정 2009. 4. 22.]

제45조(잉여금의 처리)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移入)한다.

[전문개정 2009. 4. 22.]

제46조(권한의 위탁)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3조제3항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4. 22.]

제47조(회계사무의 위탁)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4조제2항제7호, 제35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6호에 따른 사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은행법」에 따른 은행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 5. 17.>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바에 따라 취급수수료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법인의 임직원 중에서 해당 사무를 수행할 회계관계직원을 임명할 수 있다.

④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은 제3항에 따라 임명된 회계관계직원에 대하여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 4. 22.]

제48조(지역개발사업 등의 소요재원 변경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확충) 국가는 회계의 세출예산으로 지원하는 제34조제2항·제35조제2항 및 제35조의2제2항에 따른 사업을 지방자치단체가 소요경비의 전액을 부담하는 사업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회계에서 지원하는 경비에 상당하는 「주세법」에 따른 주세를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확충에 활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4. 22.]

부칙 <제16906호, 2020. 2. 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으로부터 종전에 출자·출연을 받은 기관·법인·단체가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상생형지역일자리에 참여하는 경우 제11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출자·출연을 받은 것으로 본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0. 4. 5] [대통령령 제30540호, 2020. 3. 24,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지역경제총괄과) 044-203-4419
기획재정부(지역예산과) 044-215-7551, 7554

제1장 총칙 <개정 2009. 5. 29.>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5. 29.]

제2조 삭제 <2014. 3. 11.>

제2조의2(성장촉진지역의 지정 등) 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광역시의 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중 시·군을 대상으로 연평균 인구변화율, 소득수준, 재정 상황 및 지역 접근성 등을 법 제22조에 따른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국가균형발전위원회"라 한다)가 5년마다 종합평가한 결과 지역사회기반시설의 구축 등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중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으로 지정·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4. 3. 11., 2014. 11. 19., 2016. 1. 22., 2017. 7. 26., 2018. 9. 18.>

② 행정안전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성장촉진지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3. 11., 2014. 11. 19., 2017. 7. 26.>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협의를 위하여 의견을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속한 시·군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4. 3. 11.>

④ 제1항에 따라 성장촉진지역으로 지정된 시·군의 장은 도로 및 상수도 등 경제적·사회적 성장촉진에 필요한 사회기반시설을 구축하려는 경우에는 이에 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5. 29.]
[제2조에서 이동 <2009. 5. 29.>]

제3조(그 밖의 공공기관) 법 제2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9. 7. 27., 2014. 3. 11.>

1.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기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
3. 「국유재산법」에 따른 정부출자기업체
4. 법률에 따른 정부출자대상 법인으로서 정부로부터 출자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법인
5.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대상 법인으로서 정부로부터 출연(出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법인
6.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으로서 주무부장관의 인가·허가를 받을 필요 없이 해당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법인

[전문개정 2009. 5. 29.]

제2장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등 <개정 2018. 9. 18.>

제4조(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의 수립절차 등) ①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법 제4조에 따른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이하 "국가균형발전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부문별 발전계획안(이하 "부문별 발전계획안"이라 한다) 및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시·도 발전계획(이하 "시·도 계획"이라 한다)을 기초로 국가균형발전의 목표, 추진 전략 등이 포함된 국가균형발전계획안을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11., 2018. 9. 18.>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작성한 국가균형발전계획안을 반영하여 국가균형발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8. 9. 18.>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국가균형발전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3. 11., 2018. 9. 18.>

[전문개정 2009. 5. 29.]
[제목개정 2018. 9. 18.]

제5조(부문별 발전계획안의 수립지침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부문별 발전계획안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부문별 발전계획안의 수립지침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9. 18.>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립지침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5. 29.]

제6조(부문별 국가균형발전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부문별 국가균형발전시행계획(이하 "부문별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부문별 시행계획의 수립지침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9. 18.>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립지침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매년 11월 30일까지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연도의 부문별 시행계획과 전년도의 부문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매년 2월 15일까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9. 18.>

[전문개정 2009. 5. 29.]
[제목개정 2018. 9. 18.]

제6조의2 삭제 <2014. 3. 11.>

제7조(시·도 계획의 수립지침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시·도 계획의 효율적 수립을 위하여 시·도지사와 협의한 후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시·도 계획의 수립지침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3. 11., 2018. 9. 18.>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립지침을 시·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3. 11.>

[전문개정 2009. 5. 29.]
[제목개정 2014. 3. 11.]

제8조(시·도 발전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시·도 발전 시행계획(이하 "시·도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효율적 수립을 위하여 관계 시·도지사와 협의한 후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도 시행계획의 수립지침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11., 2018. 9. 18.>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립지침을 시·도지사에게 매년 11월 30일까지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3. 11.>

③ 시·도지사는 해당 연도의 시·도 시행계획과 전년도의 시·도 시행계획 추진 실적을 매년 2월 15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11., 2018. 9. 18.>

[전문개정 2009. 5. 29.]
[제목개정 2014. 3. 11.]

제9조 삭제 <2018. 9. 18.>

제10조 삭제 <2009. 5. 29.>

제11조(시행계획의 협의·조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법 제8조에 따른 협의·조정을 요청받은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의·조정을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협의·조정을 끝내야 한다. <개정 2014. 3. 11.>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8조에 따른 협의·조정을 하는 경우 예산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11.>

[전문개정 2009. 5. 29.]

제12조(부문별 시행계획 등의 자체평가) ①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부문별 시행계획, 시·도 시행계획 및 국가혁신융복합단지(이하 "부문별 시행계획등"이라 한다)의 추

진 실적에 대한 평가계획을 세우고, 매년 1월 15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11., 2018. 9. 18.>

1. 대상 사업
2. 제출 자료
3. 평가지표
4. 그 밖에 효율적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년도 부문별 시행계획 및 국가혁신융복합단지의 추진 실적에 대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매년 2월 말일까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11., 2018. 9. 18.>

③ 시·도지사는 전년도 시·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에 대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매년 2월 말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11., 2018. 9. 18.>

[전문개정 2009. 5. 29.]

제13조(부문별 시행계획등의 종합평가) ①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자체평가 결과를 토대로 부문별 시행계획등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매년 5월 31일까지 종합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9. 18.>

②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종합평가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11., 2018. 9. 18.>

③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종합평가 결과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를 매년 4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미리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18. 9. 18.>

④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종합평가 결과에 따라 부진한 사업과 시·도별 국가균형발전시책 추진 성과에 대해서는 별도로 심층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 3. 11., 2018. 9. 18.>

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종합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균형발전사업에 대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11., 2018. 9. 18.>

⑥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종합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에 대하여 평가와 관련한 자료의 제출과 제5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입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로 해야 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 3. 11., 2018. 9. 18.>

[전문개정 2009. 5. 29.]
[제목개정 2018. 9. 18.]

제14조(평가기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평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9. 18.>

1. 사업 기획의 타당성
2. 사업 집행의 효율성
3. 사업목표의 달성도 및 사업의 성과
4. 그 밖에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9. 5. 29.]

제14조의2(평가자문단의 설치 등) ①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국가균형발전사업평가자문단(이하 "평가자문단"이라 한다)은 매년 평가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그 결과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9. 18.>

② 평가자문단은 국가균형발전사업 평가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평가위원으로 구성하되, 평가위원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이하 이 조부터 제30조까지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개정 2014. 3. 11., 2018. 9. 18.>

③ 평가자문단장은 평가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선임한다.

④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국가균형발전사업 평가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 중에서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전문평가기관(이하 "전문평가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한다. <개정 2018. 9. 18.>

⑤ 전문평가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4. 3. 11., 2018. 9. 18.>

1. 평가자문단의 평가 수행 지원
2. 제13조제5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관리 및 운영
3.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의 자체평가 지원

4. 그 밖에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평가와 관련하여 위탁하는 사항

⑥ 정부는 매년 평가자문단과 전문평가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수립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 5. 29.]

제3장 국가균형발전시책의 추진 <개정 2018. 9. 18.>

제15조(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역특화산업, 광역협력권산업 및 지역산업의 육성(이하 이 조에서 "지역특화산업등의 육성"이라 한다)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원대상 사업을 선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3. 11., 2017. 7. 26., 2018. 9. 18.>

② 지원대상 사업의 선정, 지원의 방법 및 기간, 사업추진 실적의 점검 등 그 밖에 지역특화산업등의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2014. 3. 11., 2017. 7. 26.>

[본조신설 2009. 5. 29.]

[종전 제15조는 제16조로 이동 <2009. 5. 29.>]

제15조의2(상생형지역일자리의 선정) ①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상생형지역일자리(이하 "상생형지역일자리"라 한다)의 선정을 신청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사업계획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하려는 자가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시·도지사와 미리 협의해야 한다.

1. 신청 대상 행정구역 및 사업 참여 경제주체
2. 사업의 내용 및 추진계획
3. 상생형지역일자리 추진에 따른 지역경제 및 일자리에 대한 단기·중장기 기대효과
4. 상생형지역일자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사항
5.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11조의2제4항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상생형지역일자리로 선정 신청된 사업에 대하여 현장실사 또는 자료수집을 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현장실사 및 자료수집 결과를 토대로 해당 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법 제11조의2제3항에 따른 상생형지역일자리심의위원회에 제공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현장실사·자료수집 및 사업 타당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1조의2제4항에 따라 상생형지역일자리를 선정한 경우에는 선정 사실 및 지원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관보에 공고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 3. 24.]

[종전 제15조의2는 제15조의11로 이동 <2020. 3. 24.>]

제15조의3(상생형지역일자리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11조의2제3항에 따른 상생형지역일자리심의위원회(이하 이 조부터 제15조의9까지의 규정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기획재정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고용노동부차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국토교통부차관, 중소벤처기업부차관
2.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
3. 경제, 산업, 노동 또는 지역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항제3호에 따라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추천하는 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다.

⑤ 제3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11조의2제11항에 따라 제3항 각 호의 위원의

명단을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 3. 24.]

[종전 제15조의3은 제15조의12로 이동 <2020. 3. 24.>]

제15조의4(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 3. 24.]

[종전 제15조의4는 제15조의13으로 이동 <2020. 3. 24.>]

제15조의5(위원의 해촉)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5조의3제3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5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20. 3. 24.]

[종전 제15조의5는 제15조의14로 이동 <2020. 3. 24.>]

제15조의6(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고, 위원회의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날까지 알릴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상생형지역일자리의 이해관계인 등 관련 당사자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역 산업 또는 지역 일자리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명한다.

⑧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안건을 미리 검토하고,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⑨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제6항에 따라 위원회 등에 출석한 사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⑩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경우 회의의 일시, 장소,

발언 요지 및 결정사항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법 제11조의2제11항에 따라 회의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0. 3. 24.]

[종전 제15조의6은 제15조의15로 이동 <2020. 3. 24.>]

제15조의7(국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 산정기준) 법 제11조의2제7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료 및 대부료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제2항(같은 영 제5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산출한 재산가액에 1천분의 10 이상의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0. 3. 24.]

[종전 제15조의7은 제15조의16으로 이동 <2020. 3. 24.>]

제15조의8(지원사업 추진실적의 제출 등) 제15조의2제5항에 따라 선정 통보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1조의2제8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보고서를 해당 상생형지역일자리가 선정된 날을 기준으로 1년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장·군수·구청장인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거쳐 제출해야 한다.

1. 상생형지역일자리의 사업 추진 현황 및 계획
2. 법 제11조의2제5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추진실적 및 지원효과
3.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상생형지역일자리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추진한 지원사업의 추진실적 및 지원효과
4.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추진실적 및 지원효과가 미진한 경우 그 사유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상생형지역일자리에 대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차년도 지원사업 추진계획
6.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상생형지역일자리에 대한 지원효과 파악 및 관련 정책 수립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0. 3. 24.]

제15조의9(상생형지역일자리의 선정 취소)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1조의2제9항에 따라 상생형지역일자리의 선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1조의2제9항에 따라 상생형지역일자리 선정 취소에 관하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는 경우에는 선정 취소의 사유와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1조의2제9항에 따라 상생형지역일자리의 선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취소 사실과 그 사유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관보에 공고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 3. 24.]

제15조의10(상생형지역일자리 선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 제15조의2 및 제15조의7부터 제15조의9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생형지역일자리의 선정·관리 및 취소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0. 3. 24.]

제15조의11(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신청을 하려는 시·도지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대상 행정구역
2. 해당 지역의 경제상황 호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내용
3. 해당 지역의 산업구조 및 종사자 수 등 제2항에 따른 기준의 검토와 관련된 자료
4. 그 밖에 해당 지역의 경제여건 악화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② 법 제17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말한다.

1. 지역의 전체 산업 종사자 중 주된 산업 종사자의 비율
2. 주된 산업의 생산량 감소율
3. 지역의 휴·폐업 업체 수 증가율

4. 지역의 전력사용량 감소율
5. 지역 내 부동산 가격의 변화
6. 그 밖에 지역의 주된 산업에 대한 지역경제 의존도와 지역경제여건의 악화 정도를 검토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경쟁력 강화와 관련된 정책의 수립, 추진 및 조정을 위하여 개최되는 회의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법 제17조제2항 후단에 따른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업연구원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 신청된 지역에 대한 실사 및 자료 수집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⑤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신청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7. 6. 20.]
[제15조의2에서 이동 <2020. 3. 24.>]

제15조의12(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기간) ①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기간은 최대 2년의 범위에서 정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이 지정 기간 만료시점에 제15조의11제2항에 따른 지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5조의11제3항에 따른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0. 3. 24.>

[본조신설 2017. 6. 20.]
[제15조의3에서 이동 <2020. 3. 24.>]

제15조의13(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한 지원의 종류 및 내용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9.>

1. 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의 보조, 융자, 출연 등 금융 및 재정 지원

2. 기업 및 소상공인의 연구개발 활동 지원 및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지원
3. 기업 및 소상공인의 국내 판매 및 수출 지원과 경영·기술·회계 관련 자문 지원
4. 재직 근로자의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 실직자 및 퇴직자의 재취업을 위한 교육 등 고용안정을 위한 지원
5. 새로운 산업의 육성을 위한 산업기반시설의 확충 및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6. 그 밖에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원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역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지원내역을 분기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제출 외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원내역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해당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9. 7. 9.>

[본조신설 2017. 6. 20.]
[제목개정 2019. 7. 9.]
[제15조의4에서 이동 <2020. 3. 24.>]

제15조의14(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관한 보고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은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보고서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일을 기준으로 1년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9., 2020. 3. 24.>

1. 제15조의11제2항의 기준에 따른 해당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경제상황 분석
2. 해당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한 제15조의13에 따른 지원의 효과 및 실적
3. 해당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의 효과 및 실적

4. 해당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경제적 상황을 개선하고 그 지역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의 종류 및 내용

[본조신설 2017. 6. 20.]
[제15조의5에서 이동 <2020. 3. 24.>]

제15조의15(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해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7조의3에 따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 해당 지역에 관한 제15조의14에 따른 보고서를 검토하여 지원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제15조의11제3항에 따른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0. 3. 24.>

[본조신설 2017. 6. 20.]
[제15조의6에서 이동 <2020. 3. 24.>]

제15조의16(국고보조금의 인상지원) 법 제17조의4에 따라 보조금을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는 사업과 보조율 등 구체적인 사항은 개별 사업의 목적과 취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한 지원과의 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9. 7. 9.]
[제15조의7에서 이동 <2020. 3. 24.>]

제16조(공공기관의 지방이전) ① 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공공기관 중 다음 각 호의 기관을 제외한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8. 9. 18.>

1. 중앙행정기관
2. 수도권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기관
3. 성장촉진지역, 특수상황지역 및 수도권 안의 폐기물 매립지에 있는 기관
4. 수도권에 있는 공연시설, 전시시설, 도서시설, 지역문화복지시설, 의료시설 등으로서 수도권 주민의 문화생활과 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시설을 직접 관리하는 기관
5. 수도권에 있는 문화유적지, 묘지, 매립지, 남북출입장소, 방송시설, 철도역, 공항 및 그 관련 시설 등을 관리하는 기관
6. 구성원 간의 상호부조, 복리 증진, 권익 향상 또는 업무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

7. 그 밖에 기관의 성격 및 업무 등을 고려하여 수도권에 두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하는 기관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8조에 따른 공공기관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및 그 종사자에 대하여 행하는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 기준 및 절차 등을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8. 9. 18.>

[전문개정 2009. 5. 29.]
[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16조는 제17조로 이동 <2009. 5. 29.>]

제16조의2(국가혁신융복합단지의 지정) ① 법 제18조의2제1항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경제자유구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지구·단지·특구"란 별표 1의 지역을 말한다.

② 시·도지사는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국가혁신융복합단지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제3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도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육성계획(이하 "융복합단지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융복합단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가혁신융복합단지의 조성 목적에 관한 사항
2. 국가혁신융복합단지의 위치 및 면적 등 입지 선정에 관한 사항
3. 국가혁신융복합단지에서 집중 육성하려는 산업에 관한 사항
4. 국내외 기업 및 연구개발기관 등의 유치방안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혁신융복합단지의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8조의2제2항 전단에 따라 국가혁신융복합단지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이를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법 제18조의2제2항 후단에서 "기업의 유치·집적 가능성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신청 지역의 전체 면적
2. 신청 지역 간 지리적 거리
3. 국내외 기업, 연구개발기관 및 우수인력 유치를 위한 정주(定住)여건
4. 지역산업 육성에 필요한 기업 및 연구개발기관 등의 집적·연계 가능성
5. 시·도 지원계획의 타당성
6. 그 밖에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지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⑦ 제6항 각 호에 따른 고려사항의 세부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8. 9. 18.]

제16조의3(국가혁신융복합단지의 지정 해제)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라 국가혁신융복합단지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친 후,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관할 행정구역의 국가혁신융복합단지의 지정 해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지정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친 후,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혁신융복합단지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9. 18.]

제16조의4(국가혁신융복합단지의 지정 변경) ① 시·도지사는 관할 행정구역의 국가혁신융복합단지의 지정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지정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융복합단지계획에 대한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혁신융복합단지의 지정 변경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친 후,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지정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국가혁신융복합단지의 지정 변경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1. 행정구역의 변경 등에 따라 국가혁신융복합단지의 대상구역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2. 법과 이 영의 개정 또는 다른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
3.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그 밖에 융복합단지계획의 기본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변경 근거가 명확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국가혁신융복합단지의 지정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9. 18.]

제16조의5(국가혁신융복합단지의 육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8조의3제1항 각 호의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원대상 사업을 선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법 제18조의3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시책 추진에 필요한 예산상 조치가 수반되지 못한 경우
2. 시책을 추진하는 것이 법령에 위배되거나 해당 시책의 목적에 현저히 반하는 경우

③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시·도 지역혁신지원단(이하 "혁신지원단"이라 한다)은 국가혁신융복합단지에 입주한 사업자가 법 제18조의3제3항 각 호에 따른 승인·허가(이하 "허가등"이라 한다) 신청 사무에 대하여 문서로 지원을 요청하면,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즉시 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접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혁신지원단은 제3항에 따라 접수된 지원요청의 처리를 완료한 때에는 요청자에게 문서로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요청의 경우에는 구술 또는 전화로 통지할 수 있다.

⑤ 법 제18조의3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별표 1의2의

처리기간을 말한다.

⑥ 허가등의 신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별표 1의2에 따른 처리기간 내에 허가등의 신청을 처리할 수 없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 차례만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허가등의 신청인에게 그 사유 및 처리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추가기간을 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⑦ 시·도지사는 관할 행정구역의 국가혁신융복합단지의 육성을 위하여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추진단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도록 설립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9. 18.]

제17조(기업의 지방이전) ① 법 제1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표를 종합평가하여 시·군·구를 대상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3년마다 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1. 인구밀도
2. 광업·제조업 생산품의 출하액
3. 그 밖에 광업·제조업 사업체 수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하여 토지 등의 분양가액 인하, 교육훈련보조금의 지급 등 지방이전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요건 및 절차 등 세부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5. 29.]
[제16조에서 이동, 종전 제17조는 제18조로 이동 <2009. 5. 29.>]

제18조(대학의 지방이전)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지방으로 이전하는 대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 기준·절차 등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9. 18.>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으로 이전하는 대학의 부지 확보 등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5. 29.]
[제17조에서 이동, 종전 제18조는 삭제

제18조의2 삭제 <2009. 5. 29.>

제18조의3 삭제 <2009. 5. 29.>

제19조(지역발전투자협약의 체결 등)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지역발전투자협약(이하 "지역발전투자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추진하려는 국가균형발전사업에 대하여 지역발전투자협약안(이하 이 조에서 "협약안"이라 한다)을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시·도 지역혁신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9. 18.>

②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협약안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즉시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9. 18.>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받은 협약안에 대한 의견을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예산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9. 18.>

④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의견을 종합하여 검토의견을 작성하고, 이를 기초로 지역발전투자협약 체결안(이하 "체결안"이라 한다)을 작성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정하여 체결안의 작성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 9. 18.>

⑤ 제4항에 따라 체결안의 작성을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안을 제출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 및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체결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체결안을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9. 18.>

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으로 제5항에 따른 체결안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한다. <신설 2018. 9. 18.>

⑦ 시·도지사는 지역발전투자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해당 시·도 관할구역의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8. 9. 18.>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역발전투자협약 체결 대상 사업을 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8. 9. 18.>

1. 국가균형발전계획과의 관계
2. 사업추진에 관계되는 중앙행정기관의 범위
3. 중장기적 예산지원의 필요성
4. 지역 주도 사업 추진의 필요성
5. 사업 실행가능성 및 사업성과의 가시성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발전투자협약의 체결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8. 9. 18.>

[전문개정 2009. 5. 29.]

제20조(국가균형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1조에 따른 국가균형발전의 주요 시책에 관한 보고서(이하 "연차보고서"라 한다)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9. 18.>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연차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국가균형발전계획 또는 주요 시책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9. 18.>

③ 법 제21조제2항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 이전공공기관을 말한다. <신설 2017. 6. 2., 2018. 2. 27., 2018. 9. 18.>

[전문개정 2009. 5. 29.]
[제목개정 2018. 9. 18.]

제20조의2(지역통계의 조사 대상 및 범위)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지역통계의 조사 대상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같다.

1. 인구변화 등 주민활력에 관한 사항
2. 산업기반 및 일자리 등 지역의 경제적 기회와 소득·재정 수준에 관한 사항
3. 주거·교통·교육·안전·보건·복지 등 지역의 정주여건에 관한 사항

4. 문화·여가·휴양·녹지 기반 등 지역의 환경에 관한 사항
5. 지역사회에 대한 신뢰도·참여도 등 공동체 활동에 관한 사항
6. 성장촉진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및 국가혁신융복합단지 등 균형발전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지정된 특수지역의 여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국가균형발전에 관한 지표개발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심의·의결을 거쳐 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8. 9. 18.]

제4장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 <개정 2018. 9. 18.>

제21조(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위촉위원의 해촉) 대통령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8. 9. 18.>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한 경우
2. 위원이 개인사정 등을 이유로 사임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위원이 6개월 이상 장기 출타 또는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5.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부적당하다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경우

[전문개정 2009. 5. 29.]
[제목개정 2018. 9. 18.]

제2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대표하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8. 9. 18.>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09. 5. 29.]

제23조(회의) ① 위원장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8. 9. 18.>

②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8. 9. 18.>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 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국무조정실장을 포함한다),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의 위원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자치법」 제165조에 따른 협의체의 대표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8. 9. 18.>

[전문개정 2009. 5. 29.]

제24조(전문위원회) ①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분야별로 사전에 연구·검토하기 위하여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8. 9. 18.>

②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국가균형발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8. 9. 18.>

③ 전문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④ 전문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두며, 법 제23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⑤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8. 9. 18.>

[전문개정 2009. 5. 29.]

제25조(자문위원) ①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200명 이내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8. 9. 18.>

② 자문위원은 국가균형발전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8. 9. 18.>

③ 자문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5. 29.]

제26조(여론의 수집)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공청회, 세미나 개최, 설문조사, 방송토론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집할 수 있다. <개정 2018. 9. 18.>

[전문개정 2009. 5. 29.]

제26조의2(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수집과 처리)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건의 사항 등 의견을 수집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이 처리하도록 협조할 수 있다. <개정 2018. 9. 18.>

[본조신설 2009. 5. 29.]

제27조(조사·연구의 의뢰) ①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 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8. 9. 18.>

② 제1항에 따라 조사·연구를 의뢰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5. 29.]

제28조(수당 등) 위원장,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위원, 자문위원, 그 밖의 직원과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9. 18.>

[전문개정 2009. 5. 29.]

제29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8. 9. 18.>

[전문개정 2009. 5. 29.]

제30조(국가균형발전기획단) ① 법 제26조에 따라 설치하는 국가균형발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8. 9. 18.>

1.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의 회의 준비에 관한 사무
2.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 작성에 관한 사무
3.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기능과 관련된 전문적인 조사·연구에 관한 사무
4. 그 밖에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의 각종 업무 지원에 관한 사무

② 기획단의 단장은 대통령비서실의 국가균형발전업무를 담당하는 비서관이 겸직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역정책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에서 파견된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해당 비서관과 함께 단장의 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3. 11., 2018. 9. 18.>

③ 기획단은 법 제21조의2에 따른 지역통계 기반 구축 및 개발·관리,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시·도 지역혁신협의회와의 교류·협력업무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지역혁신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8. 9. 18.>

④ 기획단은 연구과제 추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토연구원 및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에 따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으로 하여금 연구과제 등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 9. 18.>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획단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8. 9. 18.>

[전문개정 2009. 5. 29.]
[제목개정 2018. 9. 18.]

제31조(국가균형발전지원단 등)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에 설치하는 국가균형발전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 3. 23., 2014. 3. 11., 2018. 9. 18.>

1. 국가균형발전 관련 법령의 제정·개정 지원에 관한 업무
2. 시·도의 시·도 계획 수립·운영 등 지원업무
3. 국가균형발전 관련 국무회의 보고, 국회와의 업무 협조 등에 관한 업무
4. 국가균형발전 교육 및 통계 구축, 연차보고서 작성에 관한 업무
5.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예산 운영업무

5의2.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시·군·구 지역혁신협의회의 운영 등을 지원하는 업무

6. 그 밖에 국가균형발전기획단에 대한 지원업무

②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외의 중앙행정기관에 설치하는 국가균형발전지원단 또는 국가균형발전지원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18. 9. 18.>

1. 시·도의 시·도 계획 수립·운영 등 지원업무
2. 연차보고서 작성 지원에 관한 업무
3. 그 밖에 국가균형발전기획단에 대한 지원업무 및 소관 국가균형발전시책의 추진에 관한 업무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업연구원에 국가균형발전연구센터를 설치·운영하게 할 수 있으며, 산업통상자원부 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균형발전정책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8. 9. 18.>

④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국가균형발전지원단 및 국가균형발전지원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연계·활용하기 위하여 부처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8. 9. 18.>

[전문개정 2009. 5. 29.]
[제목개정 2018. 9. 18.]

제31조의2 삭제 <2009. 5. 29.>

제32조(시·도 지역혁신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시·도 지역혁신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시·도협의회"라 한다)는 시·도협의회의 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 9. 18.>

② 시·도협의회의 위원은 국가균형발전과 지역혁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도지사가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8. 9. 18.>

1.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한 사람
2. 시장·군수·구청장 및 지방의회 의장이 추천한 사람
3. 대학, 연구기관, 기업, 공공기관 및 비영리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해당 시·도 지방의회 의원
5. 해당 시·도 공무원
6. 그 밖에 지역의 자립적 발전추진에 필요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추고 있는 사람

③ 시·도협의회의 장은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신설 2018. 9. 18.>

④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 9. 18.>

⑤ 시·도협의회의 장은 시·도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신설 2018. 9. 18.>

⑥ 시·도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8. 9. 18.>

⑦ 법 제28조제1항제6호에 따라 시·도협의회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 <개정 2018. 9. 18.>

1. 법 제28조제1항제4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데 필요한 시·도 출연·보조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
2.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율계정 및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지역지원계정 세출 사업(제주특별자치도 및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각각 법 제35조의2제2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계정 및 법 제35조의3제2항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계정의 세출사업을 포함한다)에 대한 시·도의 예산신청에 관한 사항
3. 제12조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수행하는 시·도 시행계획 추진 실적의 자체평가에 관한 사항
4. 제19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작성·제출하려는 지역발전투자협약안에 관한 사항
5. 제41조제4항에 따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통보하는 시·도협의회의 의견에 관한 사항
6. 국가균형발전과 지역혁신에 필요한 제도개선 과제의 발굴 및 관련 기관에 대한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⑧ 시·도지사는 시·도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기능별 또는 분야별 분과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18. 9. 18.>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도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18. 9. 18.>

[전문개정 2014. 3. 11.]
[제목개정 2018. 9. 18.]

제32조의2(시·도 지역혁신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① 혁신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시·도협의회 또는 분과협의회의 회의 개최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
2. 시·도협의회 또는 분과협의회에 부의되는 사항의 사전 검토 및 안건의 작성에 관한 사무
3. 시·도협의회의 기능과 관련된 전문적인 조사·연구에 관한 사무
4. 시·도의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혁신과 관련된 기관 간의 역할 조정 및 연계·협력 촉진에 관한 사무
5. 시·도 관할 행정구역의 국가혁신융복합단지에 입주한 사업자에 대한 지원 사무
6. 그 밖에 시·도 국가균형발전시책의 지원과 시·도협의회의 업무 지원에 관한 사무

② 혁신지원단은 단장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하되, 단장은 시·도 소속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시·도지사가 임명한다.

③ 시·도지사는 혁신지원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관련 단체 등에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혁신지원단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혁신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 9. 18.]

제32조의3 삭제 <2014. 3. 11.>

제33조(시·군·구 지역혁신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시·군·구 지역혁신협의회(이하 "시·군·구협의회"라 한다)는 시·군·구 협의회의 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시·군·구협의회의 위원은 국가균형발전과 지역혁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1. 해당 지방의회 의장이 추천한 사람
2. 대학, 연구기관, 기업, 공공기관 및 비영리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해당 시·군·구 지방의회 의원
4. 해당 시·군·구 공무원
5. 그 밖에 지역의 자립적 발전 추진에 필요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추고 있는 사람

③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시·군·구협의회의 장은 시·군·구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시·군·구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군·구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 9. 18.]

제33조의2 삭제 <2009. 5. 29.>

제5장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개정 2018. 9. 18.>

제34조(결산보고서의 작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법 제30조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소관별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결산보고서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11., 2018. 9. 18.>

② 삭제 <2014. 3. 11.>

[전문개정 2009. 5. 29.]

제35조(소속 재산의 관리)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회계의 재산을 임대(사용대차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그 대상이 되는 재산의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임대하여야 한다.

②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회계의 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그 임대료는 그 재산을 관리·운용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회계의 재산을 처분하려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5월 31일까지 처분의 대상, 기준 등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회계의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용도별·지역별 토지 수급(需給) 현황과 전망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5. 29.]

제36조(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사업 중 제외사업) 법 제34조제2항제1호 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별표 2의 사업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 5. 29.]

제37조(지역개발 및 토지관리사업의 범위) 법 제34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8. 9. 18.>

1. 국가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시행하는 개발사업
2. 지방자치단체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시행하는 지역개발사업

[전문개정 2009. 5. 29.]

제38조(융자의 조건 등) ① 법 제34조제2항제7호에 따른 융자의 조건과 기간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② 법 제34조제2항제7호에 따른 융자의 신청절차, 원리금 상환, 그 밖의 운영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정한다.

③ 법 제35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6호, 제35조의2제2항제1호 및 제35조의3제2항제1호에 따른 융자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4. 3. 11.>

[전문개정 2009. 5. 29.]

제39조(예산의 신청)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율계정의 세출사업별 예산을 포괄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예산신청의 한도를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3. 11., 2018. 9. 18.>

②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예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주체와 대상
2. 사업의 목적과 내용
3. 사업에 소요되는 총경비와 회계에서 출연·보조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금액 및 산출 내역
4. 사업의 주체가 부담하는 금액
5. 사업의 착수 예정일과 완료 예정일
6. 사업의 효과 및 기대수익
7. 사업의 우선순위 및 중요도
8. 삭제 <2014. 3. 11.>
9. 그 밖에 예산신청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 시·도지사는 관할구역 시·군·구의 예산신청서를 종합하여 일괄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의 예산을 지원받아 사업을 집행하는 주체(이하 "사업시행주체"라 한다)를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5. 29.]

제40조(예산의 요구) ①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예산을 요구할 때에는 단위사업별로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시행주체를 구분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율계정의 세출예산 사업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청한 내용을 우선 반영하여 예산요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11., 2018. 9. 18.>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청한 사업의 내역 및 금액을 조정하여 예산을 요구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당초 예산신청 내역, 조정 내역 및 조정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청하지 아니한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추가로 계상하여 예산을 요구할 수 있다.

1. 국가 간 협약의 체결, 재해발생 등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예산 지원이 불가피해진 사업
2.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국가의 주요 시책 수행상 예산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09. 5. 29.]

제41조(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의견 통보) ①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국가균형발전시책의 투자방향에 관한 의견과 제13조제1항에 따른 종합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검토한 회계의 예산편성에 관한 의견을 매년 5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11., 2018. 9. 18.>

②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예산편성에 관한 의견을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로 해야 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 3. 11., 2018. 9. 18.>

③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예산편성에 관한 의견 중 연구개발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의 예산에 관한 의견을 매년 5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3. 11., 2017. 7. 26., 2018. 9. 18.>

④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법 제38조제6항에 따라 회계의 운용을 심의·의결하는 경우에는 시·도협의회의 위원, 시·군·구협의회의 위원 및 해당 분야의 전문가 등 이해관계인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통보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8. 9. 18.>

[전문개정 2009. 5. 29.]
[제목개정 2018. 9. 18.]

제42조(차등 지원의 기준)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지원규모 및 보조비율에 차등을 둘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8. 9. 18.>

1.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
2. 제13조제1항에 따른 종합평가 결과
3. 시·군·구의 발전 정도

4. 예산 집행의 실적, 예산편성지침의 준수 여부 등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운영의 성과

5. 그 밖에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도,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재원확보 현황, 해당 사업의 국가균형발전에의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9. 5. 29.]

제42조의2(지역경제 활성화 성과 평가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 성과를 평가할 때에는 각 지방자치단체별 법인세 또는 부가가치세 징수 실적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제39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정한 예산신청의 한도를 증액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평가의 세부적인 기준, 평가에 따른 재정지원의 규모 등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9. 5. 29.]

제43조(포괄보조금의 지원)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40조에 따라 포괄보조금으로 사업을 편성하려는 경우에는 사업 목적이 같은 여러 개의 유사사업을 하나의 단위사업으로 통합하고, 해당 사업의 용도를 포괄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포괄보조금으로 편성한 사업에 대하여 그 정책목표와 평가를 위한 성과지표를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3. 11., 2018. 9. 18.>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9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 예산신청의 한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할 포괄보조금 사업과 그 세부 내역을 자율적으로 정하되, 제2항에 따라 설정된 정책목표와 다른 목적으로 포괄보조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포괄보조금으로 신청한 사업에 대하여 그 신청 금액을 조정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청한 포괄보조금 사업의 내용이 제2항에 따른 정책목표와 서로 다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을 편성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포괄보조금으로 신청한 사업에 대한 신청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포괄보조금의 총액을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8. 4. 24.>

1. 포괄보조금으로 신청한 사업 예산의 집행실적

2.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

⑥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법 제9조에 따라 부문별 시행계획등을 평가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정책목표 및 성과지표 달성 여부 등을 측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11., 2018. 4. 24., 2018. 9. 18.>

⑦ 법 제35조의2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계정 및 법 제35조의3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계정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에 대한 세출예산을 편성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 3. 11., 2018. 4. 24.>

[전문개정 2009. 5. 29.]

제44조(예산의 중복신청 등의 금지 예외) 법 제41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제행사 개최, 재해 발생 등 국가시책의 수행상 예측하지 못한 대규모 재정소요가 발생한 경우

2.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국가의 주요 시책 수행상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에서 추가 지원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전문개정 2009. 5. 29.]

제45조(예산의 전용 범위) ①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소관별 세출예산의 총액 범위에서 각 과목 상호간에 전용(轉用)할 수 있는 범위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회계연도마다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이 경우 예산이 지원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포괄보조금 사업에 대한 지원금액을 서로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18. 4. 24.>

③ 법 제4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 4. 24.>

1.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예산을 추가로 요구하여 반영된 사업에 대한 전용요청의 경우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전용요청 사유가 불분명한 경우
3. 그 밖에 전용을 하면 당초 사업 목적 달성에 중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9. 5. 29.]

제46조(예산의 이월 범위 등)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移越)하여 사용할 수 있는 세출예산의 범위는 회계연도의 각 단위사업비 총액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회계연도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이 경우 예산이 지원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회계의 세출예산 이월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이월 내역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5. 29.]

제46조의2(보조금 사업 집행잔액의 다른 계정 보조금 사업에의 사용 금지) 법 제44조제4항에서 "제35조제2항에 따른 지역지원계정의 세출예산, 제35조의2제2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계정의 세출예산 및 제35조의3제2항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계정의 세출예산 상호간의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 9. 18.>

1.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지역지원계정의 세출예산에 보조금(법 제40조에 따른 포괄보조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편성된 사업의 집행잔액을 법 제35조의2제2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계정 또는 법 제35조의3제2항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계정의 보조금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법 제35조의2제2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계정의 세출예산에 보조금으로 편성된 사업의 집행잔액을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지역지원계정 또는 법 제35조의3제2항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계정의 보조금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3. 법 제35조의3제2항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계정의 세출예산에 보조금으로 편성된 사업의 집행잔액을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지역지원계정 또는 법 제35조의2제2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계정의 보조금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4. 3. 11.]

제47조(권한의 위탁) ① 법 제46조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회계의 재산의 임대·교환·양여·매각 등의 처분에 관한 권한을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에 위탁한다. <개정 2009. 9. 21.>

②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위탁재산의 관리 실적에 관한 사항을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 9. 21.>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탁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탁수수료와 감정수수료·신문공고료·등기수수료 등 위탁재산의 임대·교환·양여·매각 등의 처분을 하기 위하여 지출되는 비용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9. 9. 21.>

1. 위탁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의 위탁수수료: 사용료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요율
2. 위탁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의 위탁수수료: 매각대금 또는 매입대금의 1천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요율

④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재산의 임대·교환·양여·매각 등의 처분을 하기 위하여 따로 회계를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 9. 21.>

[전문개정 2009. 5. 29.]

제48조(회계사무의 위탁) ①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4조제2항제7호, 제35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6호에 따른 융자금의 수입·지출 및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한다. <개정 2009. 9. 21.>

1. 한국토지주택공사
2. 삭제 <2009. 9. 21.>
3.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4.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5.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②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은 융자사무를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융자사무의 관리 및 집행과 관련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09. 5. 29.]

부칙 <제30540호, 2020. 3. 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4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2제2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11제2항"으로 한다.

환경부 소관 보조금 사업 위임사무

[시행 2018. 2. 6.] [환경부고시 제2018-21호, 2018. 1. 31., 일부개정.]

환경부(혁신행정담당관) 044-201-6359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환경부 소관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및 수도권대기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임사업 및 사무) 환경부장관 소관 보조금 사업 중 별표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 등에 관한 다음 사무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1. 보조금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 신청의 접수
2. 보조금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결정
3. 보조금법 제21조제1항 및 제30조제1항·제2항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4. 보조금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 실적보고서의 접수
5. 보조금법 제28조에 따른 보조사업의 실적 심사 및 보조금의 금액 확정
6. 보조금법 제31조에 따른 보조금의 반환에 관한 처분
7. 보조금법 제36조에 따른 보고의 접수 및 검사 또는 질문

제3조(위임사무 업무처리지침) 환경부장관은 별표에 해당하는 보조금 사업을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사무를 위임함에 있어 사무의 통일성을 위하여 보조금 사업별로 업무처리지침을 제정·시행 할 수 있다.

부칙 <제2016-270호, 2016. 12. 29.>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하는 보조금 사업

회계	보조금 사업명	소관 국(관)
환경개선특별회계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물환경정책국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민자)	
	비점오염저감사업	
	공단폐수처리시설 설치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생물다양성관리계약지원	자연환경정책실(자연보전정책관)
	습지보전관리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 구축·운영사업	
	야생동물 밀렵·밀거래방지 사업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사업	
	낙동강하구 철새보호사업	
	서식지외보전기관 운영지원	
	국토생태네트워크 구축(생태축훼손지복원사업)	
	폐기물매립시설	자연환경정책실(자원순환정책관)
	음식물폐기물처리시설	
	폐기물소각시설	
	비위생매립지정비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	
	지자체 대기오염측정망 설치·운영	생활환경정책실(대기환경정책관)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증기간 경과장치 성능유지관리	
	저녹스버너 보급사업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사업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지원 사업	

회계	보조금 사업명	소관 국(관)
	하수관거정비	물환경정책국(상하수도정책관)
	개인하수처리시설설치지원	
	분뇨처리시설확충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	
	하수처리시설확충	
	하수도융자원리금상환	
	하수관거정비BTL임대료지급	
	하수처리수재이용사업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도시침수대응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농어촌폐기물처리시설	자연환경정책실(자원순환정책관)
	면단위하수처리장설치	물환경정책국(상하수도정책관)
지역발전특별회계	생태하천 복원사업	물환경정책국
	녹색환경지원센터 운영	자연환경정책실(환경경제정책관)
	상수도시설확충 및 관리(생활, 제주, 세종)	물환경정책국(상하수도정책관)
	하수도시설확충 및 관리(제주)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생활, 제주, 세종)	
	노후상수도정비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세종)	
	하수관거정비(세종)	
에너지 및 지원사업특별회계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 프로그램	생활환경정책실(기후변화정책관)